



2022. 12.

국회예산정책처 | 법안 비용추계 이해와 사례

2022 법안 비용추계 이해와 사례

Understanding Bill Cost Estimation and Case Studies 2022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2022

법안 비용추계 이해와 사례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2022 법안 비용추계 이해와 사례

총 괄 | 이정은 추계세제분석실장

기획·조정 | 심혜정 조세분석심의관

이유미 추계세제총괄과장 이동훈 경제비용추계과장 이진우 사회비용추계과장
오명희 행정비용추계과장 박연서 세제분석1과장 백경엽 세제분석2과장

작 성 | 제1부 이광근 태정림 신헌태 추계세제분석관

제2부 (지출) 윤주철 정재호 김계남 문지은 이주호 남희 지수현
우병혁 김효진 김우림 임슬기 이윤경 박선아 정현하
장삼열 이미연 여은구 이우영 추계세제분석관

제2부 (수입) 어수진 강민지 김효경 박지원 문석휘 박성은
최천규 박정환 이정훈 고은비 추계세제분석관

지 원 | 박은주 행정실무원 유다운 자료분석연구원

「2022 법안 비용추계 이해와 사례」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발간되었습니다.

문 의: 추계세제분석실 추계세제총괄과 | 02) 6788-3776 | etcd@nabo.go.kr

이 책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통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발간사

국회예산정책처는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수반되는 법안에 대한 소요 비용을 추계함으로써 국가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데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비용추계를 처음 시작한 2004년에는 비용추계 회답건 수가 59건에 불과하였습니다. 2015년에 국회예산정책처가 법안에 대한 비용추계 전담기관이 된 후 법안 비용추계 회답건수는 2015년 1,994건, 2021년에는 4,910건으로 증가하는 등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한편 국회예산정책처는 법안 비용추계의 양적인 증가에 대응하고 추계의 합리성과 법안과의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추계기법을 정교화하고 의무지출 모형을 개선하는 등 질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간되는 「2022 법안 비용추계 이해와 사례」는 총 2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1부에서는 법안 비용추계의 이해를 주제로 비용추계의 개념과 의의, 비용추계서 처리 절차, 최근 연혁 및 통계 등 법안 비용추계 제도의 전반을 소개함으로써 국회의원님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제2부에서는 제21대 국회에서 의원발의 빈도가 높았거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법안의 비용추계 사례를 수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유사 법안 시행 시 예상되는 소요비용 등을 미리 가늠해보고, 법안을 성안할 때 도움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기획하였습니다.

모쪼록 「2022 법안 비용추계 이해와 사례」가 국회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22년 12월
국회예산정책처장 조 의 섭

일러두기

1. 추계에 적용된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 명목 임금상승률, 공무원 및 민간 인건비 기관부담금 요율 등은 전망시점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2. 단수 차이로 인해 합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차례

제1부 법안 비용추계의 이해	1
1. 법안 비용추계의 개념 및 의의	2
2. 비용추계의 대상 및 방법	3
3. 비용추계서의 작성 및 처리	5
4. 의안 비용추계제도의 연혁 및 통계	8
제2부 법안 비용추계의 사례	15
제1장 지출법안	17
Ⅰ. 보건·복지·여성가족·노동 분야	19
1.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 대상자 확대 시나리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
2. 대한민국 국적 신생아에게 기본자산 지급: 「기본자산에 관한 법률안」	24
3. 한부모가족 복지 급여 확대: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9
4. 출산전후휴가 기간 확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39
5. 육아휴직 급여 기준임금 변경 및 소득대체율 확대: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45
Ⅱ. 교육·과학·문화 분야	51
1. 특별회계 설치: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안」	51
2. 연구용 원자로 인근 지역 거주자 대상 방사선 건강영향조사 실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55
3. 특수교육 지원인력 배치 시나리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60
Ⅲ. 산업·농업 분야	68
1. 소상공인의 대손상각채권 원금 감면 시나리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8
2. 소규모어가 및 어선원 직접지불제도 신설: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6

3. 취약계층 양육 반려동물 진료비용 지원 시나리오: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83
IV. 환경·국토·교통 분야	92
1. 악취배출시설 설치 지원: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92
2. 주거급여 수급기준 완화 미시자료 분석: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98
3. 특별교통수단 확보 및 이동지원센터 지원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104
V. 국방·보훈·보상·법제사법 분야	116
1. 함정에 대한 감항인증제도 도입(수수료 수입 수반): 「함정의 운항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안」	116
2.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 추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30
3. 위탁병원 진료비 감면대상 확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43
4. 재발방지평생교육기관 설치 등: 「마약류 등의 중독증 제거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평생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	148
VI. 안전·행정 분야	155
1. 미성년 유족연금 수급권 소멸연령 상향: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55
2.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정원 확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159
3.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의무 강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67
제2장 수입법안	173
I. 소득과세 분야	175
1.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상향 및 세율 인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75

2. 기본공제 확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81
3. 의료비 세액공제율 인상 및 대상 확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88
4. 비과세 기준 상향: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95
II. 법인과세 분야	200
1.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삭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
2.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조정: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5
3. 통합투자세액공제 공제율 상향: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9
III. 재산과세 분야	213
1.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기준 변경: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13
2. 증여재산공제 한도액 인상: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18
3. 토지세 신설 및 토지배당제 도입: 「토지세 및 토지배당에 관한 법률안」	223
IV. 소비과세 분야	226
1. 생맥주에 대한 주세 경감세율 연장: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26
2. 육아용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32
3. 소형 화물자동차 연료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환급: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40
V. 기타 분야	245
1.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 및 지방소비세율 조정: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45
2.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요건 완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53
3. 여객자동차터미널 직접 사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 신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63
참고자료: 비용추계 관련 법령	273

I

법안 비용추계의 이해

1. 법안 비용추계의 개념 및 의의
2. 비용추계의 대상 및 방법
3. 비용추계서의 작성 및 처리
4. 의안 비용추계제도의 연혁 및 통계

- 법안 비용추계¹⁾란 발의·제안 또는 제출되는 법률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지출'의 순증가액 또는 '재정수입'의 순감소액을 추계기법을 활용하여 추산하는 것
 - '재정지출'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 및 「국가재정법」 상 [별표 2]의 규정에 따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의 지출을 의미
 - '재정수입'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 및 기금의 수입을 의미
- 법안 비용추계는 소요 비용을 추계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는 비용-편익분석 (Cost-Benefit Analysis)과 유사하지만, 법안의 시행에 따라 소요되는 화폐적·회계적 비용만을 다룬다는 점에서 비용-편익분석과 차이가 있음
 - 비용-편익분석은 비용뿐 아니라 편익과 경제학적 기회비용도 분석 대상에 포함됨
- 입법에 대한 분석이라는 점에서 입법영향분석과도 유사하지만, 입법에 따른 재정적 측면의 영향에 한정하여 분석한다는 점에서 입법영향분석과 차이가 있음
 - 입법영향분석은 사회·경제에 미치는 재정·비재정적 측면의 영향을 포괄하여 분석
- 법안 비용추계는 법안이 가결되어 시행되는 경우 발생하는 재정지출 및 수입의 증감액을 사전에 점검하여 장기적으로 국가재정의 안정적인 관리를 지원하고, 법률과 예산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의의가 있음
 - (국가재정의 안정적 관리) 법률안은 어떤 형태로든지 국가재정에 영향을 미치므로, 법률안 등의 시행으로 초래되는 재정적 부담을 사전적으로 파악
 - (법률과 예산의 연계성 강화) 법안 비용추계는 재정부담능력을 고려한 입법을 유도함으로써 예산의 뒷받침이 없는 입법을 방지하고, 사전에 소요비용을 추계함으로써 법률과 연계 없이 예산을 편성하는 관행을 시정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

1) 「국회법」 제79조의2는 비용추계의 대상을 법률안 등 외에도 의원이 발의하거나 위원회가 제안하는 '의안'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공식적인 명칭은 '의안 비용추계'라 할 수 있으나, 실무상으로 비용추계의 대상이 되는 의안은 법안이 대부분이므로 이하에서는 특별히 언급하지 않는 한 '법안 비용추계'를 '의안 비용추계'와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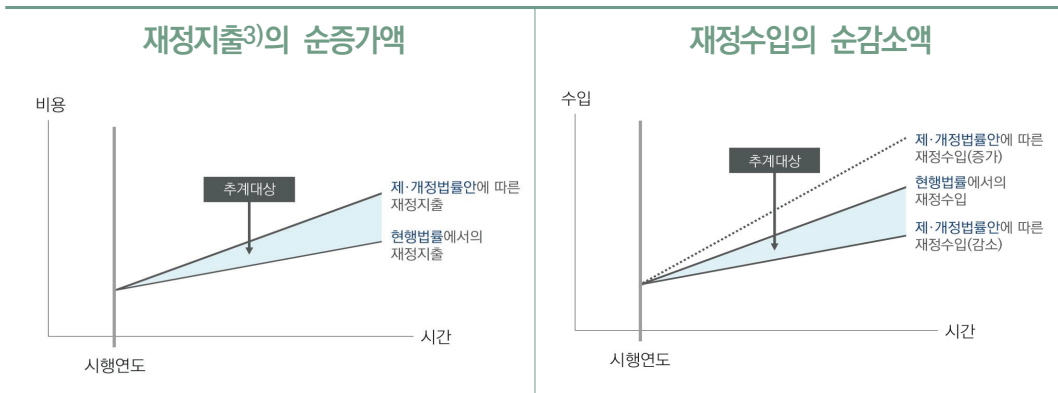
2

비용추계의 대상 및 방법

1. 비용추계 대상

- 「국회법」 제79조의2에 따른 비용추계는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대상으로,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추계함
 - 「국회법」 제79조의2제1항은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추계대상으로 규정
 - 이때 ‘비용’의 개념²⁾은 재정지출의 순증가액 또는 재정수입의 순감소액
 - * 다만, ‘세입’ 관련 법안의 경우 법안의 통과여부 뿐만 아니라 예산편성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감안하여 국회예산정책처는 세입의 ‘감소’ 뿐 아니라 세입의 ‘증가’ 부분에 대해서도 비용추계서를 제공
 - 단순 회계간 자금이동과 같이 특정 회계상으로는 순지출의 증가를 초래하지만 재정총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라면 비용추계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국회법」 제79조의2제2항은 위원회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안하는 경우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도 추계대상으로 규정

비용추계의 대상



2)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정의)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의 지출로 공공기관의 지출은 포함되지 않음

- 재정지출이 수반되지 않거나, 재정상 조치와 무관한 경우는 비용추계의 대상에서 제외
 - 재정상 지출을 수반하지 않는 의안과 재정상 조치와 무관한 선출안, 의원징계안, 윤리 및 자격심사안 등은 비용추계의 대상에서 제외
 - 예산안은 그 자체가 재정적 추계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비용추계의 대상에서 제외
- 한편 정부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 당해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관한 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 조달방안을 작성하여 의안에 첨부하도록 「국회법」 제79조의2제4항 등에 규정⁴⁾

2. 비용추계의 방법

- 비용추계는 의안의 규정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과 하위 법령에의 위임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실시함
 - 의안의 시행으로 인한 재정지출 또는 재정수입의 증감액은 상계하지 아니하고 이를 비용 추계서에 각각 표시
 - 법령·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의안에 따른 총 소요 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
- 비용추계는 회계연도(Fiscal Year)를 단위로 하며, 비용추계의 기간은 당해 의안의 시행 및 최초 지출이 발생한 연도를 포함하여 5년으로 하되⁵⁾ 재정소요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함
 - 이는 법안 비용추계의 목적이 법안이 매 회계연도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
 - 단, 5년의 기간으로 비용의 추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추계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4)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재원조달방안의 작성)

정부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원조달방안을 작성하되, 당해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조세수입, 세외수입, 국채발행,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 등 정부내부수입, 차입금, 예비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5) 「국가재정법」 제87조 제1항,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제4항

3

비용추계서의 작성 및 처리

1. 비용추계서 작성주체

- 재정상 조치를 수반하는 의원 발의 의안, 위원회 제안 의안(위원회안·대안), 위원회 수정안의 경우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비용추계서를 작성
 - 2014년 3월 「국회법」 개정⁶⁾에 따라 2015년 3월부터 의원 또는 위원회가 재정수반법안을 발의·제안할 때 국회예산정책처의 추계서 또는 국회예산정책처에 대한 추계요구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의무화⁶⁾
- 정부 제출 의안의 경우 정부가 비용추계서를 작성

의안 등 유형별 비용추계서 작성주체

의안 등	비용추계서 작성주체
의원 발의(「국회법」 제79조의2제1항)	• 국회예산정책처
위원회 제안(「국회법」 제79조의2제3항)	
위원회 수정(「국회법」 제66조제3항)	
정부 제출(「국회법」 제79조의2제4항)	• 정부

주: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2. 비용추계의 요구 및 처리절차

- 비용추계의 요구 및 처리절차는 크게 ① 비용추계의 요구, ② 비용추계서의 작성, ③ 비용추계서의 회답, ④ 비용추계서의 첨부 및 제출의 4단계로 구성

6) 2014년 3월 「국회법」 개정 이전에는 비용추계서의 작성주체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의원실에서 자체적으로 작성한 비용추계서의 제출도 가능하였음

비용추계의 요구 및 처리절차

단 계	내 용
비용추계 요구	- 국회종합입법지원시스템*을 이용하여 국회예산정책처장에게 비용추계 요구(의원, 위원회 → 국회예산정책처장) * 국회종합입법지원시스템(https://nals.assembly.go.kr)
비용추계서 작성	요구된 비용추계에 대하여 “비용추계서”,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비용추계서 미대상사유서”로 구분하여 작성
비용추계서 회답	국회예산정책처는 요구된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국회 종합입법지원시스템을 통하여 국회의장 및 의원위원회에 회답 (국회예산정책처장 → 의장(의안과), 의원/위원회)
비용추계서 첨부 및 제출	- 재정수반 의안에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 발의(의원, 위원회) - 이미 발의된 의안의 경우 비용추계서만 제출

■ 의안에 첨부된 비용추계서는 위원회의 의안 심사 시 활용

■ 위원회 제안 의안 및 위원회 수정안은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비용추계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

3. 비용추계의 처리결과 유형

■ 국회예산정책처는 의원·위원회에서 요구한 비용추계에 대하여 의안의 내용에 따라 ‘비용추계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1호·2호·3호)’,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로 구분하여 처리⁷⁾

- ‘비용추계서’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지출의 순증가액 및 재정 수입 순감소액을 제시

7)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국회의원·위원회 또는 정부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거나 위원회에서 수정된 의안이 비용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0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0억원 미만인 경우
2. 비용추계의 대상이 국가안전보장·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인 경우
3.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미첨부 사유서’는 의안의 시행으로 추가적인 지출 수반 또는 수입이 감소하지만, 소요 비용이 적거나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등에 작성
- ‘미대상 사유서’는 의안의 시행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규모에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변화를 초래하지 않는 경우(예: 법안 내용상 민간이 재정부담 주체인 경우, 기존에 수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경우 등)에 작성

비용추계 처리결과 유형

처리결과		내 용
비용추계서		•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출의 순증가액 또는 재정수입의 순감소액¹⁾에 대한 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호	• 소요비용이 적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경우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0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우로서 총 30억원 미만인 경우)
	2호	• 국가안전보장이나 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인 경우
	3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거나 구체적인 내용이 시행령 등에 위임되어 있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미대상사유서		•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규모에 대한 영향이나 변화가 없는 경우 • 의안이 시행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출의 순감소 또는 재정수입의 순증가가 예상되는 경우

주: 1) 다만, ‘세입’ 관련 법안의 경우 법안의 통과여부 뿐만 아니라 예산편성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국회예산정책처는 세입의 ‘감소’ 외에 ‘증가’ 부분에 대해서도 비용추계서를 제공

1. 의안 비용추계의 연혁

- 1973년 「국회법」 개정(1973.2.7. 전부개정)으로 예산상의 조치가 수반되는 의안에 대한 예산명세서 제도를 도입
 - 단, 실제 예산명세서 첨부는 제13대 국회인 1988년⁸⁾부터 시작됨
 - 제13대 국회부터 제16대 국회까지 예산명세서 첨부실적은 총 의원발의 법안건수 대비 3.8%(121건/3,171건) 수준
- 2005년 「국회법」 개정(2005.7.28. 일부개정)으로 비용추계제도가 도입되고, 비용추계서 제출 대상 범위에 ‘예산’ 외 ‘기금’ 상의 조치가 수반되는 의안도 포함
 - ※ 2006년 「국가재정법」 제정(2006.10.4. 제정)에 따라 정부 제출 재정수반 법률안 및 정부 입안 법령안에 대해 추계자료와 이에 상응하는 자원조달방안을 법률안 및 법령안에 첨부하도록 규정⁹⁾되면서 비용추계제도가 법령안까지 확대
 - ※ 2011년 「지방자치법」 개정(2011.7.14. 일부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출하는 조례안 등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자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도록 규정¹⁰⁾되면서 비용추계제도가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
- 2014년 「국회법」 개정(2014.3.18. 일부개정)과 함께 의원이 발의하거나 위원회가 제안하는 재정수반 의안과 위원회 수정안에 대해서는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를 2015년 3월 19일부터 제출하도록 의무화
 - 비용추계의 전문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비용추계 전담기관을 국회예산정책처로 일원화하고, 위원회안과 위원회 수정안에 대한 비용추계를 강화함으로써 국가 재정건전성 확보를 도모

8) 「국회사무처법중개정법률안」, 의안번호130050, 김덕규의원등 3인 외 163인

9) 「국가재정법」 제87조

10) 「지방자치법」 제66조의3(현행 제78조)

- 2021년 「국회법」 개정(2021.7.27. 일부개정)¹¹⁾으로 의원이 비용추계요구서를 첨부하여 의안을 발의한 경우, 국회예산정책처는 해당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서를 국회의장(의안과)과 의원(또는 소관 위원회)에게 제출

의안 비용추계제도의 주요 연혁

연도	내 용
1973	예산상의 조치가 수반되는 의안에 대한 예산명세서 제도 도입(「국회법」 제73조제2항 개정)
1988	예산명세서를 첨부한 최초의 법안* 제출 * 「국회사무처법중개정법률안」(의안번호 130050, 김덕규의원 대표발의)
2005	비용추계제도 도입(「국회법」 제79조의2 신설) * 2006년 정부 입안 법령안에 대한 비용추계제도 도입(「국가재정법」 제87조 제정) * 2011년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출하는 조례안 등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제도 도입(「지방자치법」 제66조의3 신설)
2015 ¹⁾	- 의원 발의 및 위원회 제안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서 작성 주체를 국회예산정책처로 일원화(「국회법」 제79조의2 개정) - 위원회 수정안에 대한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도록 함(「국회법」 제66조제3항 신설) * 위원회 심사 시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예상 비용에 대하여 국회예산정책처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국회법」 제58조제7항 개정)
2021	의원이 비용추계요구서를 첨부하여 의안을 발의한 경우, 국회예산정책처는 해당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서를 의장과 의원에게 제출(「국회법」 제79조의2 개정)

주: 1) 2014.3.18. 일부개정, 2015.3.19. 시행

11) 「국회법」 제79조의2(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 ② 제1항에 따라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대한 비용추계요구서를 제출한 경우 국회예산정책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58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사 전에 해당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서를 의장과 의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원이 제1항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2. 의안 비용추계 관련 통계

- 제17대 국회에서 발의(제출·제안 포함)된 법률안은 총 7,489건이며 제18대 국회에서는 13,913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제20대 국회에서 24,141건까지 급증
 - 제21대 국회의 경우 2022년 11월 30일 기준으로 18,025건 발의
- 제17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률안에 첨부된 비용추계서 및 미첨부 사유서는 총 1,634건이며 제18대 국회에서는 4,428건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제20대 국회에서 4,725건까지 증가
 - 제21대 국회가 진행 중임에도 첨부된 비용추계서 및 미첨부 사유서는 5,357건으로 제20대 국회의 4,725건을 상회
- 의원발의 법률안이 전체 발의 법률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제17대 국회의 경우 76.5%였으나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제21대 국회에서는 92.8%로 증가
 - 정부제출안의 경우 전체 발의 법률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제17대 국회 14.7%에서 제21대 국회 3.2% 수준으로 감소하는 추세

법안 발의 현황

(단위: 건, %)

	의원발의		위원회제안		정부제출		합 계 ¹⁾	
		첨부 ²⁾		첨부		첨부		첨부
제17대 국회 (‘04.5.30~’08.5.29)	5,728 (76.5)	1,372 [24.0]	659 (8.8)	17 [2.6]	1,102 (14.7)	245 [22.2]	7,489 (100.0)	1,634 [21.8]
제18대 국회 (‘08.5.30~’12.5.29)	11,191 (80.4)	3,897 [34.8]	1,029 (7.4)	9 [0.9]	1,693 (12.2)	522 [30.8]	13,913 (100.0)	4,428 [31.8]
제19대 국회 (‘12.5.30~’16.5.29)	15,444 (86.7)	4,080 [26.4]	1,285 (7.2)	23 [1.8]	1,093 (6.1)	328 [30.0]	17,822 (100.0)	4,431 [24.9]
제20대 국회 (‘16.5.30~’20.5.29)	21,594 (89.4)	4,122 [19.1]	1,453 (6.0)	353 [24.3]	1,094 (4.5)	250 [22.9]	24,141 (100.0)	4,725 [19.6]
제21대 국회 (‘20.5.30~’22.11.30.기준)	16,719 (92.8)	5,015 [30.0]	733 (4.1)	197 [26.9]	573 (3.2)	145 [25.3]	18,025 (100.0)	5,357 [29.7]

주: 1) 국회의안정보시스템 상의 법률안(2022.11.30. 기준) 건수로 재정수반이 포함되지 않은 법률안도 포함된 수치

2) 비용추계서 및 미첨부 사유서가 첨부된 경우를 의미

1. ()안은 전체 발의 법률안에 각 제안종류별 발의안이 차지하는 비중

2. []안은 각 제안종류별 발의안에서 첨부 발의안이 차지하는 비중

3. 법률안만 포함한 현황으로, 결의안, 국회규칙안 등 법률안 이외의 의안은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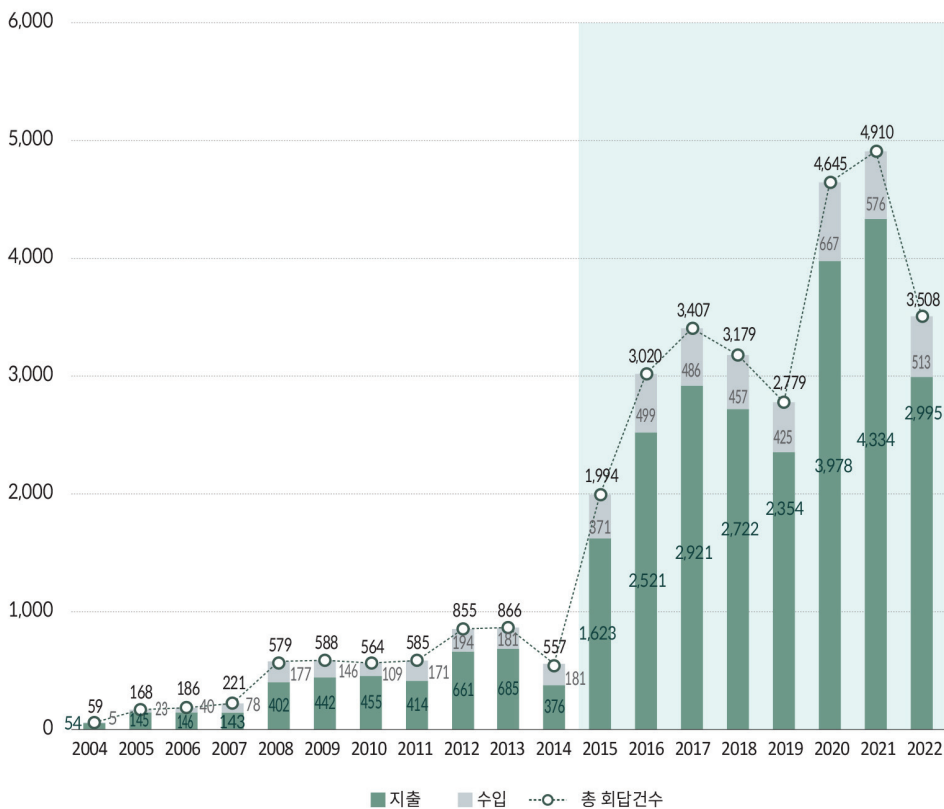
자료: 의안정보시스템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국회예산정책처의 의안 비용추계서 회답 실적은 2004년 59건에서 2021년 4,910건으로 크게 증가

- 2014년 「국회법」 개정으로 의원 발의·위원회 제안 재정수반의안에 대한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 제출이 의무화되면서, 2015년의 회답 실적이 크게 증가

연도별 의안 비용추계 회답 실적

(단위: 건)



주: 1.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미대상 사유서 모두 포함된 회답 실적 건수임
 2. 2022년은 2022.11.30. 기준
 3. 그래프 중 음영은 의원 발의 및 위원회 제안 법률안에 대한 비용추계서 작성 주체가 국회예산정책처로 일원화된 시기를 의미함
 4. 법률안 이외에 결의안, 국회규칙안 등 모든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회답 실적을 포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 회답 실적은 제19대 국회에서는 1,685건이었으나 제20대 국회에는 3,771건으로 2배 이상 증가
 - 비용추계서 회답 실적은 지출의안이 수입의안의 2배 수준이며, 유형별 회답 실적 중 비용추계서 첨부율은 수입의안이 지출의안보다 많음

의안 비용추계 유형별 회답 실적

(단위: 건,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미대상 사유서	합 계 ¹⁾
제19대 국회 (‘12.5.30~’16.5.29)	지출	1,138	1,461	836	3,435
	수입	547	336	54	937
	합계	1,685	1,797	890	4,372
제20대 국회 (‘16.5.30~’20.5.29)	지출	2,523	3,737	4,340	10,600
	수입	1,248	470	164	1,882
	합계	3,771	4,207	4,504	12,482
제21대 국회 (‘20.5.30~’22.11.30.기준)	지출	2,088	3,249	5,564	10,901
	수입	1,018	559	126	1,703
	합계	3,106	3,808	5,690	12,604

주: 1) 비용추계시스템 상의 비용추계 회답(2022.11.30. 기준) 건수이며, 비용추계 요청 후 미발의된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회답 건수도 포함된 수치

1. ()안은 의안 비용추계 회답 건수 중 비용추계 유형별 회답 건수의 비중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법안 비용추계의 사례

제1장 지출법안

- Ⅰ. 보건·복지·여성가족·노동 분야
- Ⅱ. 교육·과학·문화 분야
- Ⅲ. 산업·농업 분야
- Ⅳ. 환경·국토·교통 분야
- Ⅴ. 국방·보훈·보상·법제사법 분야
- Ⅵ. 안전·행정 분야

제2장 수입법안

- Ⅰ. 소득과세 분야
- Ⅱ. 법인과세 분야
- Ⅲ. 재산과세 분야
- Ⅳ. 소비과세 분야
- Ⅴ. 기타 분야

II

제1장 지출법안

I

보건·복지·여성가족·노동 분야

1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 대상자 확대 시나리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주요내용

- 만 11~12세 아동에게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 시행

2. 비용추계 결과

-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 대상을 확대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시나리오별로 다음과 같이 예상됨
 - (시나리오1: 백신 접종률 89.6%) 연평균 403억 1,900만원
 - (시나리오2: 백신 접종률 100.0%) 연평균 421억 200만원

개정안에 따른 비용추계 결과

(단위: 억원)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합계	연평균
(시나리오1: 백신 접종률 89.6%)							
합 계	792	309	309	298	307	2,016	403
국비	369	144	144	139	143	939	188
지방비	423	165	165	159	164	1,077	215
(시나리오2: 백신 접종률 100.0%)							
합 계	884	309	308	296	308	2,105	421
국비	412	144	144	138	143	981	196
지방비	472	165	164	158	164	1,124	225

3. 재정수반요인

■ 아동에 대한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

- 만 11~12세 아동에게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다음의 표와 같이 접종 대상을 확대

아동에 대한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대상 개정안 비교

현행법에 따른 대상	개정안에 따른 대상
· 만 12세 여아 대상 - 근거규정: 질병관리청 고시,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별표1]에 따라 해당 연도에 만 12세 이거나 만 12세에 달하게 되는 여성	· 만 11~12세 아동 - 현행법에 비해 대상 연령 1세 하향 및 남아 접종 추가

4. 비용추계의 전제

■ 개정안에 따라 확대되는 접종 대상은 만 11세 여아와 만 11~12세 남아임

- 여아의 경우 현행 사업에서 만 12세를 대상으로 접종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개정안 시행 첫 해에는 만 11세 여아에 접종하는 비용을 추계하고, 시행 두 번째 해부터 여아는 추계 대상에서 제외
- 남아의 경우 개정안 시행 첫 해에는 만 11~12세가 모두 접종 대상이 되고, 시행 두 번째 해부터는 만 11세 남아와 만 11세에 미접종한 만 12세 남아를 대상으로 함

■ 접종 횟수는 자궁경부암 백신의 식약처 허가 용법·용량¹²⁾에 따라 2회로 하며, 접종 일정은 1년 이내에 접종을 완료하는 것으로 가정

12) 이 백신은 다음의 접종 일정에 따라 1회 0.5mL 씩 3회 근육주사한다.

- 1차접종: 방문일
 - 2차접종: 1차 접종으로부터 2개월 후
 - 3차접종: 1차 접종으로부터 6개월 후
- 단, 만 9~13세의 경우, 2회 일정(0, 6개월)으로 접종할 수 있다.

- 백신 접종률은 현행 사업의 2020년 자궁경부암 백신 접종률인 89.6%를 가정한 경우(시나리오 1)와 100%를 가정한 경우(시나리오 2)로 구분
 -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20년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 사업의 자궁경부암 백신의 접종률은 89.6%(1차 접종 기준)이고, 사업시행 첫 해인 2016년(62.3%) 이후 점차 증가하고 있으므로 2020년의 접종률을 ‘시나리오 1’에 적용
 - 만 11세에 접종을 시작하여 마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개인의 건강상태 등으로 인해 접종할 수 없는 경우(시나리오 1)에는 만 12세까지 접종할 수 있는 것으로 가정
 - 여아의 경우 시나리오1, 2의 추계 대상이 모두 동일하여 시행 첫 해에는 만 11세 여성이고, 시행 두 번째 해 부터는 현행사업에 따라 접종하므로 추가재정소요가 없음
 - 남아의 경우 시행 첫 해는 만 11~12세이고, 다음 연도부터는 만 11세 남아와 전년도에 접종을 못한 만 12세 남아(시나리오1), 만 11세 남아(시나리오2)임
- 개정안에 따라 관할 보건소에서 접종을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접종비는 2020년 기준 HPV 4가 백신 접종 단가인 60,200원에 최근 3년(2019~2021년) 평균 수가증가율(2.22%) 적용
- 법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개정안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 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으로 함

5. 비용추계 상세 내역

가. 추계의 대상 및 방법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만 11세 여아와 만 11~12세 남아에 대하여 자궁경부암 백신 접종을 실시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임

비용추계 산식

$$\text{추가재정소요}_t = \text{접종 대상자 수}_t^{1)} \times \text{접종횟수}^{2)} \times \text{백신비}^{3)} \times \text{백신 접종률}^{4)}$$

이때, t 는 추계기간(2022~2026년)

- 1) 만 11세 여아와 만 11~12세 남아를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하되, 성별과 시나리오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
 - 여아의 경우 시행 첫 해에는 만 11세 여성이며, 다음 연도부터는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음(시나리오1, 2 모두 동일)
 - 남아의 경우 시행 첫 해에는 만 11~12세 남아이고, 다음 연도부터는 만 11세 남아와 백신 접종률에 따라 직전 해에 못 맞은 인원(시나리오1), 만 11세 남아(시나리오2)로 함
- 2) 접종 횟수는 1인당 2회이고, 1년 이내에 모든 접종 일정을 완료하는 것으로 가정
- 3) 보건소 백신비 단가 60,200원(2020년)에 최근 3년(2019~2021년) 평균
수가증가율(2.22%) 적용
- 4) 백신 접종률은 현행 사업의 2020년 자궁경부암 백신 접종률인 89.6%를 가정한 경우
(시나리오1)와 100%를 가정한 경우(시나리오2)로 구분하여 추계

나. 아동에 대한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

- 개정안에 따라 추가되는 예방접종 대상은 전제에서 밝힌 것처럼 만 11세 여성과 만 11~12세 남성이며 대상자 수는 통계청 장래인구추계¹³⁾ 반영
 - 연도별 접종 대상자 수는 성별과 시나리오에 따라 다르게 적용
 - 여성의 경우 시나리오1, 2의 추계 대상이 모두 동일하여 시행 첫 해에는 만 11세 여성이고, 시행 두 번째 해 부터는 추가재정소요가 없음
 - 남성의 경우 시행 첫 해에는 만 11~12세이고, 다음 연도부터는 만 11세 남성과 전 연도에 접종을 못한 만 12세 남성(시나리오1), 만 11세 남성(시나리오2)임
 - 접종횟수는 1인당 2회로 가정

13) 「장래인구특별추계」(통계청, 2021.12.)

자궁경부암 백신 접종 대상자 수 추계: 2022~2026년

(단위: 명)

구 분			2022	2023	2024	2025	2026
시나리오 1	여아	만 11세	231,430	-	-	-	-
	남아	만 11~12세	471,556	265,547	259,293	244,664	247,086
	합계		702,986	265,547	259,293	244,664	247,086
시나리오 2	여아	만 11세	231,430	-	-	-	-
	남아	만 11~12세	471,556	240,113	234,321	220,295	224,175
	합계		702,986	240,113	234,321	220,295	224,175

주: '시나리오1'은 백신접종률을 89.6%, '시나리오2'는 백신접종률을 100%로 가정하여 추계

- 백신비는 보건소의 HPV 4가 백신의 백신비 단가 60,200원(2020년 기준)에 최근 3년(2019~2021년) 평균 수가증가율(2.22%)을 반영하여 추계

개정안에 따른 백신 단가 추계: 2022~2026년

(단위: 원)

구 분	2022	2023	2024	2025	2026
접종 단가	62,903	64,299	65,726	67,186	68,677

- 백신 접종률은 89.6%(현행 사업의 2020년 1차 접종률)를 가정한 경우(시나리오1)와 100%를 가정한 경우(시나리오2)로 구분
- 국고보조금은 최근 3년 평균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 사업'의 국비지원을 46.6% 적용¹⁴⁾

14)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및 별표1에 근거하여 서울 30%, 그 외 시도 50% 국비를 지원. 따라서 2021년 평균 국비보조율은 46.6%에 해당

대한민국 국적 신생아에게 기본자산 지급: 「기본자산에 관한 법률안」

1. 주요내용

- 대한민국 국적 신생아(수급권자)에게 3천만원의 기본자산 지급액을 일시불로 전용계좌로 지급하고, 수급권자는 기본자산 지급액과 이에 따른 예금이자액을 19세가 되는 날부터 3년 이내 인출 가능

2. 비용추계 결과

- 제정안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 신생아에게 기본자산 예금액 지급, 기본자산 예금액 위탁 운용, 기본자산제도 실태조사 및 연구, 기본계획 수립 시 연평균 10조 1,706억원의 추가재정소요 예상

제정안에 따른 비용추계 결과

(단위: 억원)

구분	2023	2024	2025	2026	2027	합계	연평균
기본자산 예금액 지급	91,800	96,527	101,683	106,659	111,443	508,112	101,622
기본자산 예금액 위탁 운용	73	77	81	85	89	405	81
기본자산제도 실태조사 및 연구	2	2	2	2	2	10	2
기본계획 수립	1.5	-	-	-	-	1.5	0.3
합계	91,877	96,606	101,766	106,746	111,534	508,529	101,706

3. 재정수반요인

- 대한민국 국적 신생아에게 3천만원의 기본자산을 일시불로 전용계좌로 지급
 - 기본자산지급액과 예금이자율의 금리는 국가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기본자산특별위원회가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음
 - 기본자산 지급액과 이에 따라 발생하는 예금이자액을 인출할 수 있는 기간은 수급권자가 19세가 되는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임
- 기본자산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기본자산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
- 기본자산제도의 운영, 이행에 관한 주요사항 심의·의결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기본자산특별위원회를 운영
 - 위원회는 위원장 1명(국무총리)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 설치·운영
- 기본자산 예금액은 은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운용사 등에 위탁 운용
- 기본자산 실태 조사 및 연구 시행

4. 비용추계의 전제

- 기본자산 지급액은 제정안에 따라 2023년에는 3,000만원이고, 이후 매년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만큼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
- 기본자산 예금액에 대한 예금이자율 기본자산 예금액을 자산운용사 등에 위탁하여 운용한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정부의 추가재정소요로 볼 수 없어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
-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어 추계기간 동안 1회 수립하는 것으로 가정
- 위원회의 민간위촉위원에게 지급하는 회의참석수당¹⁵⁾은 연간 소요액이 1천만

15) 기획재정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민간위촉위원 1인당 참석수당 15만원, 안건

원 이하로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어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

-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제정안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으로 함

5. 비용추계 상세 내역

가. 추계의 대상 및 방법

-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기본자산 예금액, 기본계획 수립, 기본자산제도에 관한 연구, 기본자산 예금액 등의 자산운용 위탁 비용임

비용추계 산식

$$\begin{aligned} \text{추가재정소요}_t &= \text{기본자산 예금액}_t^{1)} + \text{기본자산 예금액 위탁 운용}_t^{2)} \\ &\quad + \text{기본자산제도 실태조사 및 연구}_t^{3)} + \text{기본계획 수립}_{2023}^{4)} \end{aligned}$$

이때, t 는 추계기간(2023~2027년)

- 1) 기본자산 예금액 $_t$ = 대한민국 국적 신생아 수 $_t$ × 기본자산 지급액 $_t$
 - 대한민국 국적 신생아 수는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의 내국인 출생아수 전망치 적용
 - 기본자산 지급액은 2023년에는 3,000만원, 이후부터는 국회예산정책처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를 적용
- 2) 기본자산 예금액 위탁 운용 $_t$ = 기본자산 예금액 전망 $_t$ × 위탁 운용 수수료율 $_t$
 - 위탁 운용 수수료율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산 위탁수수료율 평균을 적용
- 3) 기본자산제도 실태조사 및 연구 $_t$ 는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 심의·제도개선 관련 심층연구” 2021년 예산 2억원을 동일하게 적용
- 4) 기본계획 수립 $_{2023}$ 은 보건복지부의 「제2차(2019~2023년) 사회보장 기본계획 수립」 예산 1억 5,000만원을 동일하게 적용

검토비 10만원

나. 기본자산 예금액

- 기본자산 예금액은 대한민국 국적 신생아 수에 기본자산 지급액을 곱하여 추계
 - 대한민국 국적 신생아 수는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20) 부록 내외국인 인구전망(2017-2040)의 연도별 내국인 출생아수 전망치 적용
 - 기본자산 지급액은 2023년에는 3,000만원, 이후부터 매년 국회예산정책처의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만큼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

기본자산 예금액 지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3~2027년

(단위: 천명, 만원, 억원)

구 분	2023	2024	2025	2026	2027	합계
신생아 수(A)	306	317	329	340	350	-
기본자산 지급액(B)	3,000	3,045	3,091	3,137	3,184	-
합계(C=A×B)	91,800	96,527	101,683	106,659	111,443	508,112

다. 기본자산 예금액 위탁 운용

- 기본자산 예금액을 은행 등에 위탁 운용함에 따른 위탁 운용 수수료는 기본자산 예금액 전망치에 위탁 운용 수수료율을 곱하여 추계
 - 기본자산 예금액의 위탁 운용 수수료율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산 위탁수수료율의 평균¹⁶⁾인 0.08%를 적용

16) 최근 5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산 위탁규모, 위탁비용 및 위탁수수료율은 아래와 같음

	연도	위탁규모	위탁비용	위탁수수료율
건강보험	2015	17,719	13	0.07
	2016	35,929	33	0.09
	2017	42,179	42	0.10
	2018	50,115	48	0.10
	2019	57,149	55	0.10
노인장기요양보험	2015	1,210	1	0.08
	2016	3,218	3	0.09
	2017	3,604	3	0.08
위탁수수료율 평균				0.08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기본자산 예금액 위탁 운용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3~2027년

(단위: 억원, %, 억원)

구 분	2023	2024	2025	2026	2027	합계
기본자산 예금액(A)	91,800	96,527	101,683	106,659	111,443	-
위탁 운용 수수료율(B)	0.08	0.08	0.08	0.08	0.08	-
합계(C=A×B)	73	77	81	85	89	405

라. 기본자산제도 실태조사 및 연구

- 기본자산 실태조사 및 연구 시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유사한 사례로 볼 수 있는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위원회 전문성강화” 사업의 내역사업인 “최저임금 심의·제도개선 관련 심층연구” 2021년 예산 2억원¹⁷⁾을 동일하게 적용

기본자산제도 실태조사 및 연구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3~2027년

(단위: 억원)

구 분	2023	2024	2025	2026	2027	합계
기본자산제도 실태조사 및 연구	2	2	2	2	2	10

마. 기본계획 수립

-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유사한 사례로 볼 수 있는 보건복지부의 「제2차(2019~2023년) 사회보장 기본계획 수립」 비용인 1억 5,000만원을 동일하게 적용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3~2027년

(단위: 억원)

구 분	2023	2024	2025	2026	2027	합계
기본계획 수립	1.5	-	-	-	-	1.5

17) “최저임금 심의·제도개선 관련 심층연구”는 최저임금의 효과분석 연구(1억원), 심의·제도개선 관련 테마별 심층연구(1억원) 등으로 구성

3

한부모가족 복지 급여 확대: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 주요내용

- 한부모가족 복지 급여에 대한 타 급여와의 중복지급 제한 폐지, 대상자 확대, 지급액 조정¹⁸⁾

2. 비용추계 결과

- 한부모가족 복지 급여에 대한 타 급여와의 중복지급 제한을 폐지하고, 소득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대상자를 확대하며, 지급액을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따라 인상되도록 하는 경우 연평균 452억원의 추가재정소요 예상

개정안에 따른 비용추계 결과

(단위: 억원)

구분	2023	2024	2025	2026	2027	합계	연평균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164	277	371	448	519	1,779	356
아동교육지원비	90	94	97	100	100	481	96
합계	254	371	468	548	619	2,260	452

18) 개정안의 영향을 받는 급여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청소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추가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생계비, 청소년한부모가족 자립촉진수당, 청소년한부모가족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청소년한부모가족 고등학생 교육비 등 여성가족부 소관 8개 급여이나 본고에서는 이 중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와 아동교육지원비의 사례를 제시

3. 재정수반요인

- 한부모가족에 대한 복지 급여와 타 급여의 중복지급 제한 폐지
 - 동 법률안의 지원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한 규정을 삭제
- 한부모가족에 대한 복지 급여 지원대상의 범위 설정
 - 동 법률안의 복지 급여 지원대상자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상으로 함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한부모가족에 대한 복지 급여 지급액의 설정 기준 규정
 - 동 법률안에 따른 복지 급여 지급액은 그 전년도에 지급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매년 고시

4. 비용추계의 전제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 급여(이하 ‘한부모가족 복지 급여’)에 대하여 타 급여와의 중복지급 제한 폐지, 대상자 확대, 지급액 조정이 발생했을 때의 추가재정소요를 급여별로 추계

현행 제도와 개정안에 따른 제도 비교

구분	현행 제도	개정안에 따른 제도
공통 사항	· 지급액 고정	· 지급액은 2022년 단가를 기준으로 소비자 물가상승률에 따라 인상
아동 양육비	· 기준 중위소득 58% 이하인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1인당 월 20만원 - 기준 중위소득 52% 초과 58% 이하 1인당 월 10만원 ·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 양육보조금과 중복지급 제한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인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 (2022년 단가)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1인당 월 20만원 - (2022년 단가) 기준 중위소득 52% 초과 60% 이하 1인당 월 10만원 · 중복지급 제한 폐지
아동 교육 지원비	· 기준 중위소득 58% 이하인 한부모가족 및 청소년한부모가족의 중학생·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8.3만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교육급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교육비 지원,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교육지원과 중복지급 제한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인 한부모가족 및 청소년한부모가족의 중학생·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8.3만원 · 중복지급 제한 폐지

자료: 「2022년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여성가족부고시 제2022-27호)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복지 급여 중복지급 제한 폐지) 한부모가족증명서를 발급받고 급여별 수급조건(연령, 소득범위 등)을 충족한 대상자 중에 한부모가족 복지 급여와 중복지급이 제한된 타 급여를 수급한 사람에 대한 정보를 활용하여 개정안에 따른 대상자 수를 추계
 - 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 보호 대상자를 증명하는 ‘한부모가족증명서’를 발급하고 있는데, 현재 동 증명서의 발급대상자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한부모가족이므로, 이들에 대한 소득 및 타 급여 수급 등의 정보를 활용
 - 2021년 급여별 해당 연령대 인구 대비 급여별 수급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중복지급이 제한된 타 급여를 수급한 사람 수 비율이 추계기간 동안 유지된다고 가정

- (복지 급여 지급 대상자 범위 설정) 한부모가족 복지 급여 지원 대상자의 소득범위를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하로 설정
 - 개정안은 한부모가족 복지 급여의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을 최소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으로 하되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 시점에서 개정안 시행 후 설정될 구체적인 선정기준을 알 수 없으므로, 본 추계에서는 한부모가족 복지 급여의 지원 대상자 소득범위를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하로 가정
 - 향후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는 선정기준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보다 큰 경우 추가재정소요 규모는 본 추계의 전망치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
 - (현행 제도에 따른 대상자 수) 2021년 해당 연령대 인구 대비 수급자 수 비율이 추계기간 동안 유지된다고 가정
 - 현행 제도에 따른 대상자 수는 기준 중위소득 범위가 변경된 2022년 10월 1일 기준에 맞추어 추계
 - 2022년 10월 1일 이후 변동된 소득 기준에 따라 추가된 대상자 수는 2021년 수급자 수에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가구의 소득수준별 대상자 수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후, 이러한 대상자 수의 해당 연령대 인구 대비 비율을 추계기간 동안 각 연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의 해당 연령대 인구에 적용하여 추계
 - (개정안에 따른 대상자 수) 현행 대상자 소득범위와 이를 초과하는 소득범위 간 대상자 수 비율은 한부모가족증명서를 발급 가구의 해당 소득범위 간 해당자 수 비율과 동일하다고 가정
 - 2021년 기준 수급자 수에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가구의 소득수준별 대상자 수 비율을 적용하여 개정안에 따른 지원 대상자 수를 산출한 후, 이러한 대상자 수의 해당 연령대 인구 대비 비율을 추계기간 동안 각 연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의 해당 연령대 인구에 적용하여 추계
- (지급액 설정 기준 변경) 현행 제도에 따른 급여별 지급 단가는 2022년 10월 1일 기준 단가가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하고, 개정안에 따른 급여별 지급 단가는 2022년 10월 1일 기준 한부모가족 복지 급여별 단가를 기준으로 국회예산정책처의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를 적용하여 산출
 - 아동교육지원비를 제외한 한부모가족 복지 급여 단가는 2019년 이후 유지되고 있고, 아동교육지원비의 경우에도 2021년 단가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으므로, 현행 제도에 따른 급여별 지급 단가는 2022년 10월 1일 기준 단가가 추계기간 동안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개정안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 기간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으로 함

5. 비용추계 상세 내역

가. 추계의 대상 및 방법

- 개정안에 따른 추계대상은 한부모가족 복지 급여에 대한 타 급여와의 중복지급 제한 폐지, 대상자 확대, 지급액 조정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 한부모가족 복지 급여별로 추계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와 아동교육지원비에 대한 추가재정소요 추계 결과를 제시
 - 소득기준 완화와 중복급여 지급 제한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수급자로 신규 편입되는 사람 수를 추계하기 위해, 본 추계서는 소득기준 완화에 따른 대상자 수를 먼저 산출한 후 중복 급여 지급 제한 폐지에 따른 대상자 수를 산출

비용추계 산식

$$\text{추가재정소요}_t = \sum_i (\text{개정안에 따른 급여 지급 비용}_{i,t}^{1)} - \text{현행 제도에 따른 급여 지급 비용}_{i,t}^{2)})$$

이때, t 는 추계기간(2023~2027년),

i 는 급여 유형(1=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2=아동교육지원비)

1) 개정안에 따른 급여 지급 비용 $_{i,t}$ = 개정안에 따른 대상자 수 $_{i,t}^{a)}$ × 개정안에 따른 지급 단가 $_{i,t}^{b)}$

a) 2021년 기준으로 중복지급 제외 폐지에 따른 추가 수급자 수 및 소득범위 확대에 따른 추가 수급자 수를 추계한 후, 2021년 기준 인구 대비 추계된 수급자 수 비율을 연도별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적용하여 추계기간 동안의 수급자 수를 산출

- 중복지급 제외 폐지에 따른 추가 수급자 수는 2021년 한부모가족증명서를 발급받고 급여별 수급조건(연령, 소득범위 등)에 해당하는 대상자 중 급여별 중복지급이 제한된 타 급여를 수급한 사람 수를 준용

- 소득범위 확대에 따른 추가 수급자 수는 2021년 수급자 수에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별 대상자 수 비율을 적용하여 추계

b) 2021년도 급여별 지급 단가를 기준으로 국회예산정책처의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를 적용하여 추계

- 2) 현행 제도에 따른 급여 지급 비용 $_{i,t}$ = 현행 제도의 대상자 수 $_{i,t}$ ^{a)} × 현행 제도의 지급
단가 $_{i,t}$ ^{b)}
- a) 2021년 기준 인구 대비 추계된 수급자 수 비율을 연도별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적용하여 추계기간 동안의 수급자 수를 산출
- 2022년 10월 1일 이후 변동된 소득 기준에 따라 추가된 대상자 수는 2021년 수급자
수에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별 대상자 수 비율을 적용하여 추계
- b) 현행 제도에 따른 급여 지급 단가가 유지된다고 가정

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1) 현행 제도에 따른 급여 지급 비용

- 현행 제도에 따른 수급자 수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18만명에서 16만명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
 - 2021년 18세 미만 아동 인구 대비 수급자 수 비율이 유지된다고 가정하되, 2022년 10월
1일 이후 변동된 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 58% 이하)에 따라 추가된 대
상자 수는 2021년 수급자 수에 한부모가족증명서를 발급받은 가구의 18세 미만 아동 중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아동 수 대비 52% 초과 58% 이하 아동 수 비율(2.83%)을
적용하여 대상자 수를 산출한 후, 2021년 만 18세 미만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
(0.07%)을 산출하여 각 연도별 장래인구추계 결과에 적용
- 월별 지급 단가는 2022년 10월 1일 기준 지급단가가 추계기간 동안 유지된
다고 가정
- 현행 제도에 따른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의 총재정소요는 2023년부터 2027
년까지 4,314억원에서 3,791억원으로 감소할 전망

현행 제도에 따른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2023~2027년

(단위: 명, 만원/월, 억원)

구 분	기준 중위소득	2023	2024	2025	2026	2027
대상자 수	52% 이하	177,240	171,980	166,405	160,487	155,738
	52% 초과 58% 이하	5,013	4,864	4,707	4,539	4,405
	합 계	182,253	176,844	171,112	165,026	160,143
지급 단가	52% 이하	20	20	20	20	20
	52% 초과 58% 이하	10	10	10	10	10
총재정소요		4,314	4,186	4,050	3,906	3,791

2) 개정안에 따른 급여 지급 비용

- 개정안에 따른 수급자 수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17.7만명에서 15.6만명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
 - 2021년 수급자 수에 한부모가족증명서를 발급받은 가구의 만 18세 미만 아동 중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아동 수 대비 58% 초과 60% 이하 아동 수 비율(0.79%)을 적용하여 추가 대상자 수를 산출한 후, 이들이 2021년 만 18세 미만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0.02%)을 산출하여 각 연도별 장래인구추계 결과에 적용
 - 2021년 만 18세 미만 아동 인구 대비 한부모가족증명서를 발급받고 가정위탁 양육보조금을 수급한 만 18세 미만 아동 수 비율을 소득 구간별로 산출¹⁹⁾하여 각 연도별 장래인구추계 결과에 적용
- 월별 지급 단가는 2022년 10월 1일 기준 지급단가를 기준으로 국회예산정책처의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에 따라 변동한다고 가정
- 개정안에 따른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의 총재정소요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4,478억원에서 4,309억원으로 감소할 전망

19)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는 0.00252%, 기준 중위소득 52% 초과 58% 이하는 0.0009%, 기준 중위소득 58% 초과 60% 이하는 0.00001%

개정안에 따른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추계: 2023~2027년

(단위: 명, 만원/월, 억원)

구 분	기준 중위소득	2023	2024	2025	2026	2027
대상자 수	52% 이하	177,418	172,153	166,572	160,648	155,894
	52% 초과 58% 이하	5,020	4,870	4,713	4,545	4,411
	58% 초과 60% 이하	1,398	1,357	1,313	1,266	1,229
	합 계	183,836	178,380	172,598	166,459	161,534
지급 단가	52% 이하	21	21	22	22	23
	52% 초과 60% 이하	10	11	11	11	11
총재정소요		4,478	4,463	4,421	4,354	4,309

3) 추가재정소요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에 대하여 가정위탁 양육보조금과의 중복지급 제한을 폐지하고, 대상자 소득범위를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로 상향 조정하며, 지급 단가를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따라 변동하도록 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3년 164억원에서 2027년 519억원으로 예상

개정안에 따른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추가재정소요: 2023~2027년

(단위: 억원)

구 분	2023	2024	2025	2026	2027	합계
현행 제도 유지 시 총재정소요(A)	4,314	4,186	4,050	3,906	3,791	20,247
개정안에 따른 총재정소요(B)	4,478	4,463	4,421	4,354	4,309	22,025
추가재정소요(B-A)	164	277	371	448	519	1,779

다. 아동교육지원비

1) 현행 제도에 따른 급여 지급 비용

- 현행 제도에 따른 수급자 수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9,500명 수준일 것으로 전망
 - 2021년 만 13세 이상 18세 이하 아동 인구 대비 수급자 수 비율이 유지된다고 가정하되, 2022년 10월 1일 이후 변동된 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 58% 이하)에

따라 추가된 대상자 수는 2021년 수급자 수에 한부모가족증명서를 발급받은 가구의 만 13세 이상 18세 이하 아동 중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아동 수 대비 52% 초과 58% 이하 아동 수 비율(6.12%)을 적용하여 대상자 수를 산출한 후, 2021년 해당 연령대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0.02%)을 산출하여 각 연도별 장래인구추계 결과에 적용

- 연간 지급 단가는 2022년 10월 1일 기준 지급단가가 추계기간 동안 유지된다고 가정
- 현행 제도에 따른 아동교육지원비의 총재정소요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매년 8억원으로 예상

현행 제도에 따른 아동교육지원비 추계: 2023~2027년

(단위: 명, 만원/연, 억원)

구 분	기준 중위소득	2023	2024	2025	2026	2027
대상자 수	52% 이하	8,926	9,044	9,162	9,185	9,024
	52% 초과 58% 이하	546	553	561	562	552
	합 계	9,472	9,597	9,723	9,747	9,576
지급 단가		8.3	8.3	8.3	8.3	8.3
총재정소요		8	8	8	8	8

2) 개정안에 따른 급여 지급 비용

- 개정안에 따른 수급자 수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11.4만명에서 11.5만명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 2021년 수급자 수에 2021년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가구의 만 13세 이상 18세 이하 아동 중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대비 58% 초과 60% 이하 비율(1.86%)을 적용하여 대상자 수를 산출한 후, 2021년 해당 연령대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0.01%)을 산출하여 각 연도별 장래인구추계 결과에 적용
 - 2021년 만 13세 이상 18세 이하 아동 인구 대비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가구의 해당 연령대 아동 중 교육급여·긴급복지 교육비 지원·장애인 교육비 지원 등을 수급한 아동 수 비율을 소득 구간별로 적용²⁰⁾하여 산출

- 연간 지급 단가는 2022년 10월 1일 기준 지급단가를 기준으로 국회예산정책처의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에 따라 변동한다고 가정
- 개정안에 따른 아동교육지원비의 총재정소요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98억원에서 108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개정안에 따른 아동교육지원비 추계: 2023~2027년

(단위: 명, 만원/연, 억원)

구 분	2023	2024	2025	2026	2027
대상자 수	114,000	115,505	117,016	117,308	115,249
지급 단가	8.6	8.8	9.0	9.2	9.4
총재정소요	98	102	106	108	108

3) 추가재정소요

- 아동교육지원비에 대하여 교육급여 등과의 중복지급 제한을 폐지하고, 대상자 소득범위를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로 상향 조정하며, 지급 단가를 소비자물가상승률과 연동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3년 90억원에서 2027년 100억원으로 예상

개정안에 따른 아동교육지원비 추가재정소요: 2023~2027년

(단위: 억원)

구 분	2023	2024	2025	2026	2027	합계
현행 제도 유지 시 총재정소요(A)	8	8	8	8	8	40
개정안에 따른 총재정소요(B)	98	102	106	108	108	522
추가재정소요(B-A)	90	94	97	100	100	481

20)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는 3.65%, 기준 중위소득 52% 초과 58% 이하는 0.18%, 기준 중위소득 58% 초과 60% 이하는 0.06%

4

출산전후휴가 기간 확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1. 주요내용

-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출산전후휴가 기간 확대에 따른 고용보험기금²¹⁾ 의무지출 추가재정소요 발생

2. 비용추계 결과

- 출산전후휴가 기간을 확대하는 경우 연평균 1,092억원의 추가재정소요 예상

개정안에 따른 비용추계 결과

(단위: 억원)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합계	연평균
출산전후휴가 기간 확대	427	1,240	1,206	1,243	1,345	5,462	1,092

3. 재정수반요인

- 출산전후휴가를 90일에서 120일로 확대하고,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 및 1명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로서 이미 1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에는 150일의 출산전후휴가 부여

21) 「고용보험법」 제75조(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피보험자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를 받은 경우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이하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1.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휴가를 시작한 날[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를 받은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시작 후 6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이 지난 날로 본다]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다만, 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출산전후휴가 기간 확대 관련 현행법 및 개정안 비교

현행법	개정안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u>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 한 경우에는 120일)</u>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u>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u>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u>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u>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 중 최초 <u>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u>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u>다음 각 호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u>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u>60일(임신 당시 이미 1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u>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1명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120일. 다만, 이 미 1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에는 <u>150일로 한다.</u> 2.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 150일 ②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u>60일(임신 당시 이미 1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u>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 중 최초 <u>80일(임신 당시 이미 1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00일)</u>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4. 비용추계의 전제

- 개정안에 따라 출산전후휴가 기간이 확대되면 「고용보험법」 제75조에 따라 고용보험기금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는데,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수급자 유형에 따라 확대되는 지급 기간이 다르므로 수급자를 구분하여 추계

- 수급자 유형은 첫째, 수급자의 소속 기업에 따라 ① 우선지원대상기업,²²⁾ ② 대규모기업으로 구분하고, 둘째, 임신 상황에 따라 ① 1명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② 임신 당시 이미 1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③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로 구분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부칙 제1조를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
- 다만, 2022년의 추가재정소요는 연간 추가재정소요의 3분의 1만 반영

5. 비용추계 상세 내역

가. 추계의 대상 및 방법

- 비용추계 대상은 “출산전후휴가 기간 확대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로 하며, 출산 전후휴가 급여의 유형별 수급자 수에 급여 단가와 추가 지급 기간을 곱하여 산출
 - 수급자 수는 최근 급여 실적과 통계청의 출생아 수 전망치 등에 근거하여 추정
 -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수급자 수는 출생아 수 전망치(중위 기준)의 24.3%로 가정 (2020년 기준)
 - 출생아 수 전망치는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2020~2070년」(2021.12.)을 따름
 - 급여 단가는 우선지원대상기업과 대규모기업으로 구분하고, 2022년 예산상 단가를 반영하며 추계기간 동안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명목임금상승률만큼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
 - 개정안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추가 지급 기간은 수급자의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달라짐

22)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산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구분함(「고용보험법 시행령」 제 12조)

개정안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추가 지급 기간

(단위: 일)

	현행(A)		개정안(B)		확대(B-A)	
	우선지원 대상기업	대규모 기업	우선지원 대상기업	대규모 기업	우선지원 대상기업	대규모 기업
1명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90	30	120	40	30	10
임신 당시 이미 1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90	30	150	50	60	20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120	45	150	50	30	5

- 유산·사산휴가 급여의 경우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0.5% 수준(2020년 실적 기준)으로 가정

비용추계 산식

$$\text{추가재정소요}_t = \sum_{i=1}^2 \sum_{j=1}^3 (\text{수급자 수}_{i,j}^{1}) \times \text{급여 단가}_{i,j}^{2}) \times \text{추가 지급 기간}_{i,j}^{3})$$

이때, t 는 추계기간(2022~2026년),

i 는 수급자의 소속 기업 유형(우선지원대상기업, 대규모기업),

j 는 개정안에 따라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지급 기간이 달라지는 수급자 유형(1명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임신 당시 이미 1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 1) 2020년 기준 7.1만명(통계청 출생아 수 전망치의 24.3%). 우선지원대상기업의 비중은 56.1%(최근 3년 평균)
- 2) 2022년 예산상 단가 기준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196만원, 대규모기업 월 198만원. 단가는 최저임금에 연동되며, 추계기간 동안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명목임금상승률 적용
- 3) 개정안에 따라 확대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지급 기간

나. 임신부의 보호(출산전후휴가 기간 확대)

- (수급자 수)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수급자 수는 통계청의 출생아 수 전망치(중위 기준)에 근거하여 추정
 - 2020년 기준 출산전후휴가 급여 수급자 수는 7.1만명으로 출생아 수 전망치의 24.3% 수준
 - 출생아 수 전망치는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2021, 중위 기준)에 근거하며, 수급자의 출생아 수 대비 비율은 2020년 수준이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수급자 중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수급자 비중은 최근 3년(2018~2020년) 평균인 56.1% 적용
 - 수급자 중 “1명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는 2020년 기준 56.6%로 가정하며, 최근의 증가 추세를 반영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의 출산순위별(1아/2아/3아 이상) 출생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출생아 27.2만명 중 “1아”는 15.4만명(56.6%)
 - 추계기간 동안 연도별 출생아 중 “1아”의 비중은 2016~2020년 자료에 근거하여 선형회귀식²³⁾으로 추정
 - 이때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는 제외하여야 하는데, 통계청 「인구동향조사」의 출산순위별 출생(쌍태아 이상) 자료에 근거하여 2020년 기준으로 수급자 수의 2.4%로 가정²⁴⁾
 - 수급자 중 “임신 당시 이미 1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는 전체 수급자 수에서 “1명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를 차감하여 산출

23) 선형회귀식은 $y = 0.0114x + 0.5082$ 으로 추정함($R^2 = 0.9522$)

24) 최근의 증가 추세를 반영하기 위해 2016~2020년 자료에 근거하여 추계기간 동안 선형회귀식($y = 0.0014x + 0.0174$, $R^2 = 0.9414$)으로 추정함

출생아 수 전망치와 출산전후휴가 급여 수급자 수 추계: 2022~2026년

(단위: 만명)

	2022	2023	2024	2025	2026
출생아 수 전망치(통계청)	25.8	24.3	23.1	23.3	24.7
출산전후휴가 급여 수급자 수	6.3	5.9	5.6	5.7	6.0
- 1명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 우선지원대상기업	2.0	1.9	1.8	1.9	2.0
· 대규모기업	1.5	1.5	1.4	1.5	1.6
- 임신 당시 이미 1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 우선지원대상기업	1.5	1.4	1.3	1.3	1.3
· 대규모기업	1.2	1.1	1.0	1.0	1.0
-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 우선지원대상기업	0.1	0.1	0.1	0.1	0.1
· 대규모기업	0.1	0.1	0.1	0.1	0.1

- (급여 단가)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단가는 2022년 예산상 단가를 반영하며 추계기간 동안 NABO의 명목임금상승률 적용

출산전후휴가 급여 단가 추계: 2022~2026년

(단위: 만원)

		2022	2023	2024	2025	2026
급여 단가 (월)	우선지원대상기업	196	202	209	215	221
	대규모기업	198	205	211	217	223

- (지급기간) 개정안의 추가 지급 기간은 수급자의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음
 - “1명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 30일, 대규모기업 10일
 - “임신 당시 이미 1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 60일, 대규모기업 20일
 -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 30일, 대규모기업 5일

5

육아휴직 급여 기준임금 변경 및 소득대체율 확대: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1. 주요내용

- 육아휴직 급여의 기준임금 변경 및 소득대체율 확대

2. 비용추계 결과

- 육아휴직 급여의 기준이 되는 임금을 현행 “통상임금”에서 “평균임금”으로 변경하고 육아휴직 첫 3개월의 소득대체율을 현행 80%에서 100%로 확대하는 경우 연평균 5,369억원의 추가재정소요 예상

개정안에 따른 비용추계 결과

(단위: 억원)

구분	2023	2024	2025	2026	2027	합계	연평균
육아휴직 급여	4,767	5,057	5,355	5,665	6,004	26,847	5,369

3. 재정수반요인

- 육아휴직 급여의 기준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변경하고, 육아휴직 첫 3개월의 소득대체율 확대
 - 육아휴직 급여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함
 -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평균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육아휴직 급여 기준임금 변경 및 소득대체율 확대 관련 현행법 및 개정안 비교

현행법	개정안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함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함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평균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4. 비용추계의 전제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육아휴직 급여의 기준이 되는 임금을 현행 “통상임금”²⁵⁾에서 “평균임금”²⁶⁾으로 변경하고 육아휴직 첫 3개월의 소득대체율을 현행 80%에서 100%로 확대하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
 - 추가재정소요는 육아휴직 기간별(첫 3개월과 4개월 이후)로 구분하여 산출하되, 평균임금에서 통상임금을 차감한 추가급여액에 지원대상자 수와 지급기간을 모두 곱하여 추계
- (지원대상자 수) 고용보험 상용근로자 피보험자 수 전망치에 2021년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대비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 비율을 적용하여 지원대상자 수 추계
 - 추계기간 동안 고용보험 상용근로자 피보험자 수는 최근 5년간(2017~2021년) 고용보험 상용근로자 피보험자 수의 연평균 증가율을 적용하여 추계
 - 2021년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대비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 비율(0.76%)이 추계기간 동안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25)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 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26)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 개정안에 따라 추후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가 증가할 수 있으나 이러한 행태변화는 현시점에서 추정하기 어려우므로, 수급자 수는 현행 수준이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고용보험 상용근로자 피보험자 수 추계: 2017~2021년

(단위: 천명)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고용보험 상용근로자 피보험자 수	12,942	13,414	13,842	14,081	14,512

자료: 고용노동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월평균 추가 급여액) 2021년 기준 육아휴직 평균단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차액

- 육아휴직급여 수급자의 2021년 임금분포를 기준으로 추정하되, 육아휴직 첫 3개월과 4개월 이후로 구분하여 산출
- (육아휴직 첫 3개월) 2021년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의 소득대체율 100% 평균단가(2,139,000원)에서 통상임금 소득대체율 80% 평균단가(1,444,000원)를 차감한 월평균 추가 급여액(695,000원)에 국회예산정책처의 명목임금상승률 전망치를 적용하여 추계
 - 2021년 기준 육아휴직 평균단가(1,444,000원)는 통상임금 80% 기준이므로, 이를 통상임금 100% 기준 평균단가(1,805,000원)로 환산하고, 이에 1.19를 곱하여 평균임금 100% 기준 평균단가(2,139,000원) 산출
- (육아휴직 4개월 이후) 2021년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의 소득대체율 80% 평균단가(1,711,000원)에서 통상임금 소득대체율 80% 평균단가(1,444,000원)를 차감한 월평균 추가 급여액(267,000원)에 국회예산정책처의 명목임금상승률 전망치를 적용하여 추계
 - 2021년 기준 육아휴직 평균단가는 통상임금 80% 기준이므로, 이에 1.19를 곱하여 평균임금 80% 기준 평균단가(1,711,000원) 산출

■ (지급기간) 육아휴직 첫 3개월의 지급기간은 3개월, 4개월 이후는 2021년 기준 평균 지급기간을 준용하여 6.3개월 적용

- 2021년 기준 평균 육아휴직 기간은 9.3개월이므로 4개월 이후 평균 지급기간은 6.3개월로 적용하며, 동 기간이 추계기간 동안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개정안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으로 함

5. 비용추계 상세 내역

가. 추계의 대상 및 방법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육아휴직급여의 기준임금 변경 및 소득대체율 확대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로서, 지원대상자 수에 월평균 추가 급여액과 지급 기간을 모두 곱하여 산출
 - 육아휴직급여 수급자의 2021년 임금분포를 기준으로 월평균 추가 급여액을 추정하되, 육아휴직 첫 3개월과 4개월 이후로 구분하여 산출

비용추계 산식

$$\text{추가재정소요}_{it} = \text{지원대상자 수}_t^{1)} \times \text{월평균 추가 급여액}_{it}^{2)} \times \text{지급기간}_i^{3)}$$

이때, t 는 추계연도(2023~2027년),

i 는 육아휴직 첫 3개월($i=1$)과 4개월 이후($i=2$)

1) 지원대상자 수 t = 고용보험 상용근로자 피보험자 수 $t^{a)}$ $\times$ 0.76%^{b)}

a) 고용보험 상용근로자 피보험자 수 t = 고용보험 상용근로자 피보험자 수 $_{(t-1)} \times (1 + \alpha_t)$

이때, 고용보험 상용근로자 피보험자 수 $_{(t=2021)}$ 는 14,512,434명,

α 는 최근 5년간(2017~2021년) 연평균 증가율 2.9%

b) 2021년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대비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 비율

2) 월평균 추가 급여액 $_{it}$ = 월평균 추가 급여액 $_{i(t-1)}^{c)d)} \times (1 + \beta_t)$

이때, β 는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명목임금상승률

c) 육아휴직 첫 3개월($i=1$)의 월평균 추가 급여액은 2021년 기준 육아휴직급여 월평균

단가를 준용하되, 현행 소득대체율 80%를 100% 수준으로 환산하여 평균임금의

소득대체율 100% 평균단가(2,139,000원)에서 통상임금 소득대체율 80%

평균단가(1,444,000원)를 차감한 월평균 추가 급여액(695,000원) 적용

d) 육아휴직 4개월 이후($i=2$)의 월평균 추가 급여액은 2021년 기준 육아휴직급여 월평균

단가를 준용하되, 평균임금의 소득대체율 80% 평균단가(1,711,000원)에서 통상임금

소득대체율 80% 평균단가(1,444,000원)를 차감한 월평균 추가 급여액(267,000원) 적용

3) 지급기간_i은 2021년 기준 육아휴직급여 평균 수급기간(9.3개월)을 준용하여, 육아휴직 첫 3개월($i=1$)의 지급기간은 3개월, 육아휴직 4개월 이후($i=2$)의 지급기간은 6.3개월로 가정

나. 육아휴직 급여

- 개정안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의 기준이 되는 임금을 현행 “통상임금”에서 “평균임금”으로 변경하고 육아휴직 첫 3개월의 소득대체율을 현행 80%에서 100%로 확대할 경우 발생하는 추가재정소요는 지원대상자 수에 월평균 추가 급여액과 지급기간을 모두 곱하여 산출
 - (지원대상자 수) 2021년 기준 고용보험 상용근로자 피보험자 수(14,512,434명)에 최근 5년간(2017~2021년) 고용보험 상용근로자 피보험자 수 연평균 증가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후, 이에 2021년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대비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 비율(0.76%)을 적용하여 추계

지원대상자 수 추계: 2023~2027년

(단위: 명)

구 분	2023	2024	2025	2026	2027
고용보험 상용근로자 피보험자 수	15,372,374	15,818,764	16,278,117	16,750,808	17,237,226
지원대상자 수	116,830	120,223	123,714	127,306	131,003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월평균 추가 급여액) 육아휴직급여 수급자의 2021년 임금분포를 기준으로 추정하되, 육아휴직 첫 3개월과 4개월 이후로 구분하여 산출
 - (육아휴직 첫 3개월) 2021년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의 소득대체율 100% 평균단가(2,139,000원)에서 통상임금 소득대체율 80% 평균단가(1,444,000원)를 차감한 월평균 추가 급여액(695,000원)에 국회예산정책처의 명목임금상승률 전망치를 적용하여 추계
 - (육아휴직 4개월 이후) 2021년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의 소득대체율 80% 평균단가(1,711,000원)에서 통상임금 소득대체율 80% 평균단가(1,444,000원)를 차감한 월평균 추가 급여액(267,000원)에 국회예산정책처의 명목임금상승률 전망치를 적용하여 추계

월평균 추가 급여액 추계: 2023~2027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	2024	2025	2026	2027
육아휴직 첫 3개월	0.752	0.776	0.798	0.821	0.845
육아휴직 4개월 이후	0.289	0.298	0.307	0.316	0.325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지급기간) 2021년 기준 평균 육아휴직 기간은 9.3개월이므로 4개월 이후 평균 지급기간은 6.3개월로 적용하며, 동 기간이 추계기간 동안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기준임금 변경 및 소득대체율 확대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3~2027년

구분	2023	2024	2025	2026	2027	합계
육아휴직 첫 3개월 추가재정소요						
지원대상자 수(A, 천명)	117	120	124	127	131	619
월평균 추가 급여액(B, 백만원)	0.752	0.776	0.798	0.821	0.845	3.992
지급기간(C, 개월)	3	3	3	3	3	15
소 계(D=A×B×C, 억원)	2,637	2,798	2,962	3,134	3,322	14,852
육아휴직 첫 3개월 추가재정소요						
지원대상자 수(E, 천명)	117	120	124	127	131	619
월평균 추가 급여액(F, 백만원)	0.289	0.298	0.307	0.316	0.325	1.535
지급기간(G, 개월)	6.3	6.3	6.3	6.3	6.3	31.5
소 계(H=E×F×G, 억원)	2,130	2,259	2,392	2,531	2,682	11,995
합 계(D+H, 억원)	4,767	5,057	5,355	5,665	6,004	26,847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II

교육·과학·문화 분야

1

특별회계 설치 비용추계 미첨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안」

1. 주요내용

- 대학의 미래 인재양성 및 교육·연구·운영 여건 개선을 위하여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설치

2. 재정수반요인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 설치
 - 특별회계의 세입은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다른 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차입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함
 - 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인 교육세 세입액을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변경하여 일반회계로부터 특별회계로 전입함
 - 특별회계의 세출은 대학의 교육·연구 역량 강화, 신기술 분야 등 국가 인재양성, 직업교육 등 대학의 평생교육 역량 강화,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인재양성 등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로 함

3. 미첨부 근거규정

-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4. 미첨부 사유

■ 특별회계가 설치·운영됨에 따라 국가 회계의 세출 총액이 증가하거나 시·도교육청이 운영하는 교육비특별회계의 세출이 조정되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 발생 가능

- (국가 회계 세출 총액 증가) 특별회계 세출 사업의 자원 마련을 위해 차입금을 활용하는 경우 국가의 재정지출 총량에 변화가 발생하므로 늘어난 지출 총액만큼 추가재정소요가 될 수 있음
 - 특별회계가 일반회계 등으로부터 재원을 전입받는 경우 이는 회계 간 거래(내부거래)이므로, 국가 재정지출의 총량에 변화가 없다고 전제한다면 추가재정소요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임
 - 다만, 특별회계에서 차입금을 통해 부족한 세출재원을 충당하거나 타 회계에서 특별회계 전출금을 마련하기 위해 국채 발행 등 차입금을 활용하는 경우 국가의 재정지출 총량에 변화가 발생하므로 추가재정소요 발생 가능
- (시·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 조정) 시·도교육비특별회계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액에 대응하여 기금 적립액을 사용하거나 부족 재원을 차입하는 경우 해당 금액이 추가재정소요가 될 수 있음
 - 제정안이 시행되는 경우 교육세 세입액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자원에서 삭제되고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편입되어 교부금이 감액될 것으로 예상
 - 시·도교육청에서 기존 사업 규모를 유지하기 위하여 기금에 적립된 금액²⁷⁾을 시·도교육비특별회계로 전입하여 사용하거나 차입을 통해 부족한 세출재원을 충당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시·도교육청)의 재정지출이 증가하여 추가재정소요 발생 가능

■ 이러한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특별회계 신설에 따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 증가분을 산출하여야 하나, 특별회계나 타 회계의 차입 규모, 시·도교육비특별회계의 세출 조정 규모 등을 합리적으로 가정할 수 없으므로 추가재정소요 추계가 불가능함

27) 시·도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 여유자금 등 시·도 교육비특별회계의 일부 금액을 교육재정안정화기금 등에 적립하여 운용 중이며, 2020년 결산 기준 16개 시·도교육청 31개 기금의 조성액은 총 2조 8,948억원임

- 특별회계에서 자체수입이나 내부거래수입으로 충당 가능한 수준보다 세출 사업의 규모를 확대하는 경우 차입을 통해 필요비용을 보전하는 것이 불가피하므로 국가의 재정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현 시점에서 고등교육 분야 사업의 확대 여부와 규모를 예측할 수 없음
 - 참고로,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부 소관 고등교육 분야 세출사업은 세부사업 기준 총 66개로, 2022년도 예산(2차 추경 기준)은 총 11조 9,090억원, 2023년도 예산안은 총 12조 1,374억원임
 - 한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감액에 대응하여 시·도교육청이 적립해둔 여유자금을 사용하는 경우 시·도교육청의 세출이 교부금 감액분만큼 감소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 총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현 시점에서 시·도교육청별 세출예산 조정 여부와 규모를 예측할 수 없음
- 이에 따라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설치·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5. 참고사항

- 제정안에 따르면 교육세 세입액이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전환되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보통교부금에 배분되는 금액이 감소하는데, 2022년도 예산(2차 추경)을 기준으로 보통교부금은 현행보다 약 3조 602억원 감소

제정안에 따른 자원 배분 변화

[현행]

재원		배분		
내국세 총액의 20.79% (A)	72조 9,847억원	교부금 [A+(B-Z)]	보통교부금 [(A×97%)+(B-Z)]	73조 8,554억원
교육세 세입액 (B)	4조 7,266억원		특별교부금 (A×3%)	2조 1,895억원
			소계	76조 449억원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Z)		1조 6,664억원
총계	77조 7,113억원	총계		77조 7,113억원



[제정안]

재원		배분		
내국세 총액의 20.79% (A)	72조 9,847억원	교부금 (A)	보통교부금 (A×97%)	<u>70조 7,952억원</u>
			특별교부금 (A×3%)	2조 1,895억원
			소계	72조 9,847억원
교육세 세입액 (B)	4조 7,266억원	<u>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B-Z)</u>		<u>3조 602억원</u>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Z)		1조 6,664억원
총계	77조 7,113억원	총계		77조 7,113억원

주: 1) 금액은 2022년도 2차 추경 예산액 기준

2) 동 제정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반영된 변화 외에 다른 제도 변화는 없는 것으로 가정

3) 교육세 세입액에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로 배분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모두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로 배분되는 것으로 전제함

자료: 교육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

연구용 원자로 인근 지역 거주자 대상 방사선 건강영향조사 실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1. 주요내용

- 연구용 원자로 인근 지역 거주자 등을 대상으로 방사선 건강영향조사를 실시

2. 비용추계 결과

- 연구용 원자로 인근 지역 거주자 등을 대상으로 방사선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연평균 146억 700만원의 추가재정소요 예상

개정안에 따른 비용추계 결과

(단위: 백만원)

구분	2023	2024	2025	2026	2027	합계	연평균
방사선 건강영향조사	13,918	14,294	14,637	14,944	15,243	73,037	14,607

3. 재정수반요인

- 개정안은 방사선 건강영향조사 대상에 ‘발전용 원자로’뿐 아니라 ‘연구용 원자로’를 추가하여 방사선 건강영향조사 대상자를 확대
 - (현행)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 인근 지역 중 위원회가 정하는 범위의 지역에 거주하였거나 거주 중인 사람 및 방사선작업종사자
 - (개정안) 발전용 원자로, **연구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 인근 지역 중 위원회가 정하는 범위의 지역에 거주하였거나 거주 중인 사람 및 방사선작업종사자

4. 비용추계의 전제

- 개정안에 따른 연구용 원자로 인근 지역은 대전 유성구에 설치된 연구용 원자로(하나로) 주변 지역으로서, 인근 지역 거주자는 반경 5km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이며 추계기간 동안 변동이 없는 것으로 가정
 - 현행법에 따른 발전용 원자로 인근 지역 거주자에 대한 건강영향조사²⁸⁾는 2023년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구체적인 조사내용 및 방법은 연구용역을 통해 결정할 예정
 - 현행 방사선 건강영향조사는 발전용 원자로 및 연구용 원자로 방사선 작업종사자에 한하여 실시되고 있음
 - 본 추계는 연구용 원자로의 반경 5km 이내에 위치하는 읍면동의 인구수를 산출하여 해당 주민 전체를 조사대상자로 가정
 - 원전 반경 5km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전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거리 기준
- 방사선 건강영향조사는 매년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하며, 거주자 1인당 조사비용은 환경부의 “주민건강영향조사 및 사후관리” 사업의 2021년도 기준 조사비용 단가를 준용하여 산출
 - 개정안에 따른 일반 거주자 대상의 건강영향조사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실시하는 방사선 작업종사자 대상 건강영향조사와 조사방법 등이 상이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방사선 작업종사자 대상의 조사비용 단가를 적용하는 것은 곤란함
 - 본 추계에서는 환경부의 “주민건강영향조사 및 사후관리” 사업의 2021년 기준 조사비용 단가²⁹⁾에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조사비용 단가를 추정
-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개정안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으로 함

28) 「원자력안전법」 제105조의2는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인근 지역 중 위원회가 정하는 범위의 지역 거주자에 대한 방사선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하도록 2021년 8월에 개정되었음

29) 환경부는 2021년에 비정기 조사로 월성원전 주변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함

5. 비용추계 상세 내역

가. 추계의 대상 및 방법

- 추가재정소요의 추계대상은 연구용 원자로 인근 지역 거주자 대상 건강영향조사 실시에 따른 비용

비용추계 산식

$$\begin{aligned}\text{추가재정소요}_t &= \text{연구용 원자로 인근 지역 거주자 대상 방사선 건강영향조사 비용}_t \\ &= \text{조사대상자 수}_t^{1)} \times \text{1인당 조사비용}_t^{2)}\end{aligned}$$

이때, t 는 추계연도(2023~2027년)

1) 조사대상자 수 $_t$ = 연구용 원자로 인근(반경 5km) 전체 주민 수(204,404명)

2) 1인당 조사비용 $_t$ = 1인당 조사비용 $_{t-1} \times (1 + \alpha_t)$

- 이때, 1인당 조사비용 $_{t=2021}$ 은 환경부의 “주민건강영향조사 및 사후관리” 사업의 2021년도 기준 조사비용 단가(62,658원)

- α 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

나. 방사선 건강영향조사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연구용 원자로 인근 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방사선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할 경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요비용으로, “조사대상자 수”에 “1인당 조사비용”을 곱하여 추계
 - 참고로, 현행법에 따른 방사선 작업종사자 대상 건강영향조사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방사선 건강영향 조사” 사업(2022년 예산 15억 9,500만원)을 통하여 매년 실시되고 있음
- 조사대상자 수는 연구용 원자로(하나로) 인근(반경 5km 이내) 거주자 전체를 조사대상으로 간주하면 총 204,404명
 - 대전시 유성구에 위치한 연구용 원자로(하나로)의 반경 5km 이내에 위치하는 읍면동의 인구 수를 적용함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현황”의 2022년 1월 기준 해당 읍면동 주민등록 인구 수를 바탕으로 조사대상자 수를 산출하였으며, 이때 조사대상자 수는 재외국민 및 거주불명자를 제외한 거주자만을 대상으로 함

연구용 원자로 주변 인구수

(단위: 명)

구분	신성동	관평동	전민동	구죽동	온천2동
인구 수	25,950	28,536	26,900	27,092	39,533
구분	노은2동	회덕동	덕암동	목상동	합계
인구 수	24,251	12,136	13,591	6,415	204,404

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현황”의 2022년 1월 기준 해당 읍면동 주민등록 인구 수(재외국민 및 거주불명자를 제외한 거주자만을 대상으로 함)

자료: 행정안전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1인당 조사비용은 환경부 “주민건강영향조사 및 사후관리” 사업의 2021년도 기준 조사비용 단가에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를 적용하여 추정
 - 환경부는 2021년에 월성원전 주변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하였음 (2021년도 예산 16억 9,000만원)

환경부 “주민건강영향조사 및 사후관리” 사업 내용

(단위: 백만원)

조사항목	조사내용	2021년도 예산
설문조사 및 노 분석	-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 기준 1,500명 인구비례 선정 ※ 인구사회학적, 경제적 특성 등을 고려한 원거리 대조지역 선정	1,220
		- (월성) 1,500명×0.61=915 - (대조) 500명×0.61=305
생물학적 선량평가	- 소변시료에서 삼중수소 등 내부피폭 의심자에 대한 생물학적 선량평가(예, 10 Bq/L 이상 혹은 내부피폭 상위 150명)	255
		- 150명×1.7=255
역학적 영향평가	- 주민 개별 피폭선량 추정, 코호트 DB 관리, 질병자료 (암등록, 검진자료 등) 연계 분석 등의 연구원 인건비, 기술정보활동비, 수용비 등	215
		- 215×1식=215
합 계		1,690

자료: 환경부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추계기간 동안 1인당 조사비용은 2021년 기준 62,658원에 국회예산정책처의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를 적용하여 산출

1인당 조사비용 추계: 2023~2027년

(단위: 원)

구 분	2023	2024	2025	2026	2027
1인당 조사비용	68,091	69,930	71,608	73,112	74,574

특수교육 지원인력 배치 시나리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 주요내용

- 특수학교의 학급 및 일반학교의 특수학급당 특수교육 지원인력 배치

2. 비용추계 결과

- 특수학교의 학급 및 일반학교의 특수학급당 1명의 지원인력을 배치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시나리오별로 다음과 같이 예상됨
 - (시나리오1: 학급당 평균 1명) 연평균 3,377억 2,800만원
 - (시나리오2: 학급당 1명 추가) 연평균 6,593억 4,600만원

개정안에 따른 비용추계 결과

(단위: 백만원)

구분	2024	2025	2026	2027	2028	합계	연평균
(시나리오1: 학급당 평균 1명)							
합 계	315,241	326,661	337,591	348,899	360,248	1,688,640	337,728
(시나리오2: 학급당 1명 추가)							
합 계	615,444	637,740	659,079	681,154	703,311	3,296,729	659,346

3. 재정수반요인

- 특수교육 지원인력 배치
 - 교육감이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하여 특수학교의 학급 및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이하 “학급”)당 1명 이상의 지원인력 제공
 - 특수교육 지원인력 배치에 따른 인건비·기본경비 등의 지출이 확대되어 지방자치단체(시·도교육청)의 재정지출이 증가하므로 추가재정소요 발생

4. 비용추계의 전제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지원인력을 추가로 배치하는 데 소요되는 인건비와 기본경비를 합한 금액으로 가정하며, 사립학교의 지원인력 배치에 소요되는 비용도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
 - 자산취득비는 학교에서 구비한 자산 및 비품을 활용하는 것으로 보아 별도로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 개정안에서 특수교육 지원인력 제공을 의무로 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시·도교육감이 국·공립학교뿐만 아니라 사립학교의 지원인력 배치에 소요되는 비용도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
- 기존 지원인력을 포함하여 학급당 배치된 특수교육 지원인력의 수가 평균 1명 이상이 되도록 인원을 추가 배치하거나(시나리오1), 기존에 배치된 지원인력과 무관히 학급마다 1명의 특수교육 지원인력을 추가로 배치하는 경우(시나리오2) 발생하는 추가재정소요를 추계
 - 개정안은 “학급당 1인 이상의 지원인력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정지출 증가분의 최소액을 추계하려면 현재 지원인력이 배치되지 않은 학급에만 1명씩 배치하는 것으로 가정하여야 할 것이나, 현재 학교별로 배치된 지원인력의 수를 모두 파악할 수 없으므로 시나리오별로 다음과 같이 가정
 - (시나리오1) 기존에 배치된 지원인력을 포함하여 학급당 지원인력의 수가 평균 1명 이상이 되도록 필요한 인원을 추가로 배치하는 경우 재정지출의 증가분을 추계³⁰⁾
 - (시나리오2) 기존에 배치된 지원인력과 무관히 학급마다 1명의 지원인력을 추가로 배치하는 경우 재정지출의 증가분을 추계
- 배치 필요한 지원인력의 수는 시나리오1의 경우 9,203명, 시나리오2의 경우 1만 7,967명으로 가정하며, 해당 인원이 2024년에 전원 배치된 이후 추계기간 동안 인원수에 변동이 없는 것으로 가정
 - 교육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2022년 9월 기준 학급수는 총 1만 7,967개이며, 지원인력은 총 8,764명

30) 기존 지원인력은 모두 국가재정이나 지방재정을 재원으로 배치된 것으로 전제하고, 시나리오1에 따라 지원인력을 추가로 배치하는 데 필요한 비용만을 추가재정소요로 봄

- 시나리오1의 경우 기존에 배치된 지원인력을 포함하여 학급당 평균 지원인력의 수가 1명 이상이 되도록 필요한 인원을 추가 배치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므로, 배치 필요한 지원인력의 수는 총 학급수(1만 7,967개)에서 기존에 배치된 지원인력(8,764명)을 뺀 9,203명으로 가정
- 시나리오2의 경우 기존에 배치된 지원인력과 무관히 학급마다 1명의 지원인력을 추가 배치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므로, 배치 필요한 지원인력의 수를 총 학급수(1만 7,967개)에 해당하는 1만 7,967명으로 가정

특수학교 학급 · 일반학교 특수학급 및 특수교육 지원인력 현황

(단위: 개, 명)

학급			특수교육 지원인력		
계	특수학교 학급	일반학교 특수학급	계	특수학교 학급	일반학교 특수학급
17,967	5,255	12,712	8,764	2,943	5,821

주: 1) 국·공·사립학교의 학급수 및 지원인력의 수를 모두 포함한 값임

2) 2022년 9월말 기준

자료: 교육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지원인력의 인건비 단가는 국·공립학교의 경우 임금 협약서에 따라 교육공무 직원에게 적용되는 2022년도 공통 급여체계 II 유형의 인건비를 기준으로 추계 하며, 사립학교의 경우 국·공립학교 지원인력의 인건비 단가를 동일하게 적용
- 현행법 시행규칙 제5조³¹⁾ 등에 따라 볼 때 지원인력이 교사의 지시에 따라 특수교육대상 자의 활동을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 시·도교육청에서 지원인력³²⁾을 교육공무직 원으로 채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본 추계에서도 신규 배치되는 지원인력이 전원 교육 공무직원으로 채용되는 것으로 가정

3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5조(지원인력의 역할 및 자격) ①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학교에 배치되는 지원인력은 교사의 지 시에 따라 교수학습 활동, 신변처리, 급식, 교내외 활동, 등하교 등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및 학 교 활동에 대하여 보조 역할을 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인력의 자격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한다.

32) 시·도교육청별로 지원인력의 명칭은 “특수교육지도사”, “특수교육실무원”, “특수교육실무사”, “특수교육보조원” 등으로 다양함

- 교육부 및 전국 시·도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매년 단체임금협약³³⁾을 통해 교육공무직원의 급여체계를 정하고 있는데, 시·도별로 차이는 있으나 2022년 기준 지원 인력은 일반적으로 Ⅱ유형 급여체계(일 8시간 근무 기준 월 기본급 186만 8,000원)를 적용받고 있으므로, 본 추계에서도 이를 준용하여 신규 배치되는 지원인력에 Ⅱ유형 수준의 인건비(일 8시간)를 적용하는 것으로 가정
 - 이때, 인건비에는 보수(기본급·정기상여금·급식비·명절휴가비), 맞춤형복지 및 기관부담금³⁴⁾을 포함하며, 그 외 개인마다 지급 금액이 상이한 근속수당, 직무관련수당, 가족수당 및 연차수당 등 각종 수당과 제 비용은 제외하고 산출하는 것으로 가정
 - 사립학교의 경우 시·도교육청별 지원 방법이나 지원 한도 등에 따라 인건비 단가가 달라질 수 있으나, 추계를 위하여 국·공립학교 교육공무직원에게 적용하는 위 인건비 단가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가정
- 지원인력 배치에 따른 기본경비는 매년 인건비에 연동하여 일정 비율만큼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
 - 기본경비는 인건비에 「2022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본예산 분석 결과 보고서」에 따른 인건비 대비 물건비³⁵⁾의 비율(6.2%)을 적용하여 산출하며, 해당 비율이 추계기간 동안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개정안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으로 함

33) 교육부 및 전국시도교육청·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2021년 단체(임금)협약서」, 2022.2.14.

34)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기관부담 보험료

35) 시·도 교육비특별회계의 물건비에는 운영비(일반수용비·공공요금·특근매식비 등), 여비, 업무추진비 등이 포함됨

5. 비용추계 상세 내역

가. 추계의 대상 및 방법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시나리오별로 지원인력을 배치하는 데 소요되는 인건비 및 기본경비를 합한 금액

비용추계 산식

$$\text{추가재정소요}_t = \text{지원인력 배치에 따른 인건비}_t^{1)} + \text{기본경비}_t^{2)}$$

이때, t 는 추계기간(2024~2028년)

$$1) \text{인건비}_t = \text{배치 인원}^a) \times \text{인건비 단가}_t^b)$$

$$a) \text{배치 인원} = 9,203\text{명(시나리오1)} \text{ 또는 } 1\text{만 } 7,967\text{명(시나리오2)}$$

- 2024년에 모두 배치되며, 추계기간 동안 인원수에 변동이 없는 것으로 가정
- 시나리오1: 기존에 배치된 지원인력을 포함하여 학급당 평균 지원인력의 수가 1명 이상이 되도록 지원인력을 추가 배치하는 데 필요한 인원수(9,203명)
- 시나리오2: 기존에 배치된 지원인력과 무관히 학급마다 1명의 지원인력을 추가 배치하는 데 필요한 인원수(1만 7,967명)

$$b) \text{인건비 단가}_t = \text{보수}_t + \text{기관부담금}_t + \text{맞춤형복지비}$$

- 보수 _{t} : 임금협약에 따른 2022년 일 8시간 근무자(Ⅱ 유형)의 기본급, 정기상여금, 급식비 및 명절휴가비를 기준으로 국회예산정책처의 명목임금상승률 전망치 적용
- 기관부담금 _{t} = 보수 _{t} × 기관부담금 비율 _{t}
 - * 기관부담금 비율은 국회예산정책처의 기관부담금(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기관부담 보험료) 비율 전망치 적용
- 맞춤형복지비: 임금협약에 따른 2022년 일 8시간 근무자(Ⅱ 유형) 기준 지급액(연 55만원)이 추계기간 동안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2) \text{기본경비}_t = \text{인건비}_t \times \text{기본경비 비율}^a)$$

$$a) \text{기본경비 비율} = 6.2\%$$

- * 「2022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본예산 분석 결과」에 따른 인건비 대비 물건비 비율로, 해당 비율이 추계기간 동안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나. 학급당 평균 1명이 되도록 추가 배치(시나리오1)

- 시나리오1에 따라 학급당 평균 지원인력이 1명 이상이 되도록 추가 배치하는 경우 신규로 배치 필요한 지원인력의 수는 9,203명
 - 기존에 배치된 지원인력을 포함하여 학급당 지원인력의 수가 평균 1명 이상이 되도록 필요한 인원을 추가 배치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므로, 배치 필요한 지원인력의 수는 2022년 9월 기준 총 학급수(1만 7,967개)에서 기존에 배치된 지원인력(8,764명)을 제외한 9,203명으로 산출
- 보수와 기관부담금, 맞춤형복지비를 합한 1인당 연간 인건비 단가는 2024년 3,226만원, 2028년 3,686만원 등으로 추계
 - 추계의 전제와 방법에서 가정한 바에 따라 보수는 임금협약에 따른 2022년 일 8시간 근무자(Ⅱ유형)의 보수를 기준으로 하되 기본급 외에 정기상여금, 급식비 및 명절휴가비만을 포함하여 산출하며³⁶⁾, 추계기간 동안 매년 국회예산정책처의 명목임금상승률 전망치를 적용
 - 기관부담금은 추계연도별 보수에 국회예산정책처의 기관부담금(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기관부담 보험료) 비율 전망치를 적용하여 산출
 - 맞춤형복지비는 임금협약에 따라 2022년 일 8시간 근무자(Ⅱ유형)에게 지급하는 맞춤형 복지비(연 55만원)가 추계기간 동안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 배치 필요한 지원인력의 수에 1인당 인건비 단가를 곱하면 인건비는 2024년 2,968억 3,800만원, 2028년 3,392억 1,800만원 등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1조 5,900억 6,300만원으로 추계
- 기본경비는 추계의 전제와 방법에서 가정한 바에 따라 추계연도별로 산출된 인건비에 기본경비 비율(6.2%)을 곱하여 산출하며, 2024년 184억 300만원, 2028년 210억 3,000만원 등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985억 7,600만원으로 추계

36) 2022년 기준 연 기본급 2,242만원, 정기상여금 90만원, 급식비 168만원, 명절휴가비 140만원

- 인건비와 기본경비를 합하면, 시나리오1에 따라 학급당 평균 지원인력이 1명 이상이 되도록 지원인력을 추가로 배치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4년 3,152억 4,100만원, 2028년 3,602억 4,800만원 등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1조 6,886억 3,900만원(연평균 3,377억 2,800만원)으로 추계

특수교육 지원인력 1인당 인건비 단가 추계: 2024~2028년

(단위: 천원)

구분	2024	2025	2026	2027	2028
보수	28,496	29,524	30,504	31,518	32,533
기관부담금	3,209	3,349	3,487	3,630	3,776
맞춤형복지비	550	550	550	550	550
인건비 단가 계	32,255	33,423	34,541	35,698	36,859

주: 교육부 및 전국시도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간 임금협약에 따른 2022년 일 8시간 근무자(Ⅱ유형)의 인건비를 기준으로 산출

특수교육 지원인력 인건비 및 기본경비 시나리오1: 2024~2028년

(단위: 백만원)

시나리오1: 학급당 평균 1명	2024	2025	2026	2027	2028	합 계	연평균
인건비(A)	296,838	307,592	317,884	328,531	339,218	1,590,063	318,013
기본경비(B=A×6.2%)	18,403	19,069	19,707	20,367	21,030	98,576	19,715
계(A+B)	315,241	326,661	337,591	348,898	360,248	1,688,639	337,728

다. 학급당 1명 추가 배치(시나리오2)

- 시나리오2에 따라 학급마다 1명의 지원인력을 추가 배치하는 경우 신규로 배치 필요한 지원인력의 수는 1만 7,967명
 - 기존에 배치된 지원인력과 무관히 학급마다 1명을 추가 배치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므로, 배치 필요한 지원인력의 수를 2022년 9월 기준 총 학급수(1만 7,967개)에 해당하는 1만 7,967명으로 가정

- 보수와 기관부담금, 맞춤형복지비를 합한 1인당 연간 인건비 단가는 2024년 3,226만원, 2028년 3,686만원 등으로 추계
 - 산출 방법 및 결과는 시나리오1과 동일하며, 추계연도별 단가는 표 “특수교육 지원인력 1인당 인건비 단가 추계” 참고
- 배치 필요한 지원인력의 수에 1인당 인건비 단가를 곱하면 인건비는 2024년 5,795억 1,700만원, 2028년 6,622억 5,500만원 등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3조 1,042억 7,800만원으로 추계
- 기본경비는 추계의 전제와 방법에서 가정한 바에 따라 추계연도별로 산출된 인건비에 기본경비 비율(6.2%)을 곱하여 산출하며, 2024년 359억 2,700만원, 2028년 410억 5,700만원 등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1,924억 5,100만원으로 추계
- 인건비와 기본경비를 합하면, 시나리오2에 따라 학급마다 1명의 지원인력을 추가로 배치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4년 6,154억 4,400만원, 2028년 7,033억 1,200만원 등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3조 2,967억 2,900만원(연평균 6,593억 4,600만원)으로 추계

특수교육 지원인력 인건비 및 기본경비 시나리오2: 2024~2028년

(단위: 백만원)

시나리오2: 학급당 1명 추가	2024	2025	2026	2027	2028	합 계	연평균
인건비(A)	579,517	600,511	620,604	641,391	662,255	3,104,278	620,856
기본경비(B=A×6.2%)	35,927	37,229	38,475	39,763	41,057	192,451	38,490
계(A+B)	615,444	637,740	659,079	681,154	703,312	3,296,729	659,346

소상공인의 대손상각채권 원금 감면 시나리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주요내용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이 소액채무자인 소상공인이 대손상각채권을 발생시킨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범위에서 채권 원금을 감면

2. 비용추계 결과

- 공단이 소상공인 대손상각 채권에 대해 일부 원금을 감면하고 정부가 감면액에 상응하는 금액을 출연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시나리오별로 다음과 같이 예상됨
 - (시나리오 1: 원금감면 비율 50%) 연평균 1,321억원
 - (시나리오 2: 원금감면 비율 30%) 연평균 792억원
 - (시나리오 3: 원금감면 비율 10%) 연평균 264억원

개정안에 따른 비용추계 결과

(단위: 억원)

	2023	2024	2025	2026	2027	합계	연평균
고정 이하 자산 규모	6,844 ¹⁾	2,099	2,099	1,414	751	13,208	2,642
(시나리오1: 원금감면 비율 50%)							
합계	3,422	1,050	1,050	707	376	6,604	1,321
(시나리오2: 원금감면 비율 30%)							
합계	2,053	630	630	424	225	3,962	792
(시나리오3: 원금감면 비율 10%)							
합계	684	210	210	141	75	1,321	264

주: 1) 2023년의 고정이하 자산 규모는, 대출상환도래액 중 고정 이하 자산 규모(1,436억원) 및 2022년 1분기 대출자산 건전성분류 결과 부실자산(고정, 회수익문, 추정손실)으로 분류된 금액인 5,408억원을 합한 금액임

1. 공단이 실시하는 용자에는 공단 직접대출 및 금융기관(은행)을 통한 간접대출 방식이 있는데 간접대출의 경우 신용보증재단 보증을 통해 100% 회수되는 구조이므로 본 추계에서는 직접대출 채권에 대한 원금감면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임

3. 재정수반요인

■ 부실채권의 매각 등

- 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채무자인 소상공인이 대손상각채권을 발생시킨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범위에서 채권 원금을 감면할 수 있음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피해 지원 특별계정의 설치

- 기금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피해 지원 특별계정(이하 “특별계정”)을 설치하고, 별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 함
- 기금에서 특별계정의 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기금의 특별계정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함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재난을 말한다)의 발생으로 방역당국으로부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에 따른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명령을 받아 영업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재정 지원

- 그 밖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피해 극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특별계정의 유효기간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함

4. 비용추계의 전제

- 개정안은 소액채무자인 소상공인 대손상각채권에 대하여, 일부 원금을 감면하면서 그 감면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현 시점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이에 본 추계에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대출자산 건전성 분류별 현황에 따른 부실 자산 중 일부 원금을 감면하고, 감면액에 상응하는 금액을 정부가 기금에 출연³⁷⁾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감면비율에 관해서는 시나리오를 추가하여 추계
 - 공단이 실시하는 융자에는 공단 직접대출 및 금융기관(은행)을 통한 간접대출 방식이 있는데 간접대출의 경우 신용보증재단 보증을 통해 100% 회수되는 구조이므로 본 추계에 서는 직접대출 채권에 대한 원금감면에 대해서만 추계
 - 향후 공단의 직접 대출 규모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 여부 및 피해 지원을 위한 대출액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 구체적으로 예측하기 곤란하므로 과거 실적치 등을 적용하여 가정함
 - 2022년 1분기 대출자산 건전성분류 결과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로 분류되는 부실 자산 중 원금감면 비율을 ① 50% 적용하는 경우, ② 30% 적용하는 경우 및 ③ 10% 적용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추계

37) 법 제20조(재원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직전 회계연도 관세 징수액의 100분의 3을 기준으로 한다)
 2.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출연하는 현금·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
 3.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차입금
 4.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
 5.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預受金)
 6.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 ②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 안 제22조의6에 따른 특별계정 설치 및 관련 사업의 확대 실시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향후 사업 규모와 이에 따른 정부 출연규모 등을 예상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추계대상에서 제외
 - 특별계정을 통한 구분 회계처리는 추가재정소요에 해당하지 않음
-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개정안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으로 함

5. 비용추계 상세 내역

가. 추계의 대상 및 방법

- 추가재정소요는 대출자산 건전성 분류 결과 중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에 해당하는 대출자산에 대한 원금감면액으로 하고,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추계

비용추계 산식

$$\text{추가재정소요}_t = \text{부실대출 규모}_t^{1)} \times \text{감면율}^{2)}$$

이때, t 는 추계기간(2023~2027년)

1) 부실대출 규모 $_t$

$$= \text{기존 부실대출 규모}_{t=2022.1Q}^{a)} + [\text{상환도래액 추정}_t^{b)} \times \text{감면대상 대출 비중}_t^{c)}$$

a) 기존 부실대출 규모 $_{t=2022.1Q}$: 2022년 1분기 대출자산 건전성분류 결과

부실자산(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으로 분류된 금액인 5,408억원

b) 상환도래액 추정 $_t$: $t-2$ 년에 발생한 대출자산 추정액이 t 년부터 $t+2$ 년까지 3년간 균등상환되는 것으로 가정

- 대출자산 추정액 $_t$: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 여부 및 대출액 규모에 대한 구체적인 예측이 곤란하므로 과거 실적치를 적용하여 가정함(2022년은 상반기 직접대출금액(1조 4,716억원) 규모의 대출에 하반기에도 있는 것으로 가정하고, 2023년은 2021년 실적을 적용하며, 2024년 이후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전인 2019년과 동일한 것으로 가정)

c) 감면대상 대출 비중 $_t$: 2022년 1분기 기준 대출자산 건전성 분류

결과(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자료) 중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대출자산 비중인 8.5% 적용

2) 감면율: 시나리오 별로 적용함

(시나리오 1)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대출자산액의 50%에 대해 원금을 감면하는 경우

(시나리오 2)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대출자산액의 30%에 대해 원금을 감면하는 경우

(시나리오 3)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대출자산액의 10%에 대해 원금을 감면하는 경우

나. 부실채권의 매각 등

■ (대출현황) 기금은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소상공인에게 68.6만건, 18.1조 원을 지원

- 연도별로는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경영 지원을 위해 2020년과 2021년에 각각 17만 3,232건과 8만 1,379건의 대출에 대해 3조 9,401억원과 1조 2,152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이 중 공단의 직접대출은 2020년과 2021년에 각각 1조 4,444억원과 3조 215억원임
- 공단이 실시하는 융자에는 공단 직접대출 및 금융기관(은행)을 통한 간접대출 방식이 있는데, 간접대출의 경우 신용보증재단 보증을 통해 100% 회수되는 구조임

내역사업(자금)별 대출건수: 2015~2021년

(단위: 건)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합계
성장기반자금	12,226	25,122	21,423	13,871	14,855	12,983	8,573	109,053
일반경영안정자금	32,007	23,219	43,074	43,639	43,607	173,232	81,379	440,157
소상공인특별자금	-	-	-	115	-	-	-	115
스마트소상공인자금	-	-	-	-	-	-	545	545
특별경영안정자금	-	-	-	-	-	-	136,135	136,135
합계	44,233	48,341	64,497	57,625	58,462	186,215	226,632	686,005
직접대출	4,065	8,598	7,106	9,230	12,087	102,081	204,171	347,338

자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제출자료

내역사업(자금)별 대출금액: 2015~2021년

(단위: 억원)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합계
성장기반자금	5,576	10,813	9,830	6,973	7,227	6,099	4,459	50,977
일반경영안정자금	9,363	6,737	12,620	13,578	14,818	39,401	12,152	108,669
소상공인특별자금	-	-	-	24	-	-	-	24
스마트소상공인자금	-	-	-	-	-	-	294	294
특별경영안정자금	-	-	-	-	-	-	20,705	20,705
합계	14,939	17,550	22,450	20,575	22,045	45,500	37,610	180,669
직접대출	3,507	5,086	4,355	4,867	6,034	14,444	30,215	68,508

자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제출자료

- (기존 부실대출 규모) 2022년 1분기 기준 대출자산 건전성분류 결과 부실자산(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으로 분류된 금액은 5,408억 원이며, 그 비율은 전체 융자 금액의 8.5%임

대출자산 건전성 분류별 현황: 2019~2022.1분기

(단위: 억원)

대출금건전성 등급	2019	2020	2021	2022.1분기
정상	15,813 (91.5%)	25,960 (91.7%)	43,832 (90.2%)	57,666 (90.8%)
요주의	181 (1.1%)	394 (1.4%)	397 (0.7%)	454 (0.7%)
고정	3 (0.0%)	4 (0.01)	15 (0.0%)	14 (0.0%)
회수의문	454 (2.6%)	529 (1.9%)	2,671 (4.9%)	2,942 (4.6%)
추정손실	825 (4.8%)	1,458 (5.0%)	2,254 (4.2%)	2,452 (3.9%)
고정 이하 자산	1,283 (7.4%)	1,991 (7.0%)	4,940 (9.1%)	5,408 (8.5%)
총 계	17,277	28,345	54,170	63,528

주: 2021년 1분기 대출자산은 손실보상 선지급 융자가 미포함된 금액임

자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제출자료

- (상환도래액 추정) 추계기간 동안 상환액 규모 추정을 위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융자액 규모를 과거 실적 등을 고려한 가정값을 사용하고, 각 대출은 2년간 거치 후 3년간 분할상환하는 것으로 가정하는 경우 상환도래액의 추정치는 다음 표와 같음
 -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 여부 및 감염병 확산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 회복을 위한 정책 자금 지원 규모 등에 대한 구체적인 예측이 곤란하므로 추계기간 동안 점진적으로 피해가 회복된다는 가정하에 과거 실적치를 적용하여 가정³⁸⁾
 - 2022년은 하반기에 상반기 실적과 동일한 규모의 대출이 하반기에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2023년은 2020년 실적을 적용하며, 2024년 이후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전인 2019년 실적을 적용
 - 대출이 발생한 해부터 2년간 거치 후 다음 3년간 분할상환하는 것으로 가정
 - 이때 대출의 조기 상환이나 상환 지연 등 개별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음

대출상환도래액 추계: 2021~2027년

(단위: 억원)

대출연도	직접대출액	상환도래액 추정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19년	6,034	2,011	2,011	2,011				
2020년	14,444		4,815	4,815	4,815			
2021년	30,215			10,072	10,072	10,072		
2022년	29,432				9,811	9,811	9,811	
2023년	14,444					4,815	4,815	4,815
2024년	6,034						2,011	2,011
2025년	6,034							2,011
합계		2,011	6,826	16,898	24,697	24,697	16,637	8,837

주: 1) 융자 규모는 2022년의 경우 상반기 직접대출금액(1조 4,716억원)과 동일한 금액의 대출이 하반기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2023년 이후 점진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 피해가 회복된다는 가정하에 과거 실적치를 적용하여 가정
 2) 대출이 발생한 해부터 2년간 거치 후 다음 3년간 분할상환하는 것으로 가정함

38) 2022년 상반기 기준 공단의 대출 건수는 144,729건(공단 직접대출은 110,510건)이고, 대출금액은 2조 6,316억원(공단 직접대출 1조 4,716억원)규모임

- (상환도래액 중 부실대출 규모) 상환도래액 추정치에 2022년 1분기 기준 대출 자산 건전성 분류 결과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대출자산 비중인 8.5% 적용한 부실자산 규모는 아래 표와 같음
 - (대출자산 부실률) 2022년 1분기 기준 대출자산 건전성 분류³⁹⁾ 결과 중 통상 부실채권으로 간주되는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대출자산 비중인 8.5% 적용하며, 추계기간 동안 동일한 것으로 가정⁴⁰⁾

대출상환도래액 중 고정 이하 자산규모 추계: 2023~2027년

(단위: 억원)

	2023	2024	2025	2026	2027
대출상환도래액 추정	16,898	24,697	24,697	16,637	8,837
부실률	8.5%				
대출상환도래액 중 고정 이하 자산 규모	1,436	2,099	2,099	1,414	751

- (감면율 시나리오) 고정 이하 자산(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에 따라 시나리오로 구분하여 추계
 - (시나리오 1) 고정 이하 자산 50%에 대해 원금을 감면하는 경우
 - (시나리오 2) 고정 이하 자산 30%에 대해 원금을 감면하는 경우
 - (시나리오 3) 고정 이하 자산 10%에 대해 원금을 감면하는 경우

39) 자산 건전성 분류기준

건전성 등급	부실화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
정 상	1월 미만의 연체대출금을 보유하고 있으나, 금융거래내용, 신용상태가 양호하여 채무상환능력이 충분한 채무자에 대한 총 대출금
요주의	금융거래내용 또는 신용상태 등으로 보아 사후관리에 있어 통상이상의 주의를 요하는 채무자에 대한 총 대출금(연체 1월 이상, 3월 미만, 타 금융기관 연체 포함)
고 정	금융거래 내용 또는 신용 상태가 불량하여 구체적인 회수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는 채무자에 대한 총 대출금 중 회수예상가액* 해당금액(연체 3월 이상, 타 금융기관 연체 포함)
회수의문	고정으로 분류된 채무자에 대한 총대출금 중 손실발생이 예상되나, 현재 그 손실액을 확정할 수 없는 회수예상가액 초과 금액(연체 3월 이상 12개월 미만)
추정손실	고정으로 분류된 채무자에 대한 총대출금 중 회수불능이 확실하여 손비 처리가 불가피한 회수예상가액 초과 금액(연체 12개월 이상)

주: 회수예상가액: 부실화시 담보로 제공된 자산에서 회수가 가능한 금액

자료: 소상공인 융자사업 운영규정'(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1-39) 제31조(대출금건전성분류)

- 40) 공단이 실시하는 융자는 공단 직접 융자 및 금융기관(은행)을 통한 간접 융자 방식이 있는데 금융기관 융자의 경우 신용보증재단 보증을 통해 100% 회수되는 구조임

소규모어가 및 어선원 직접지불제도 신설: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주요내용

- 소규모어가 및 어선원 직접지불제도를 신설하여 소규모어가 및 어선원 직접지불금 지급

2. 비용추계 결과

-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및 어선원 직접지불금 지급하는 경우, 연평균 402억 7,600만원의 추가재정소요 예상

개정안에 따른 비용추계 결과

(단위: 백만원)

	2023	2024	2025	2026	2027	합계	연평균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22,276	22,276	22,276	22,276	22,276	111,378	22,276
어선원 직접지불금	18,000	18,000	18,000	18,000	18,000	90,000	18,000
합계	40,276	40,276	40,276	40,276	40,276	201,378	40,276

3. 재정수반요인

- 소규모어가 및 어선원 직접지불제도 신설 및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및 어선원 직접지불금 지급
 - 개정안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어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소규모어가 및 어선원 직접지불제도 신설 및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및 어선원 직접지불금을 지급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 발생

4. 비용추계의 전제

■ 본 추계에서 사용한 주요 전제는 다음과 같음

- (지원단가) 연간 120만원 (농업·임업 최소 지급단가 준용)
 - 이때,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중 현행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80만원)' 수급어가 인 소규모어가는 차액 40만원(=120만원-80만원)이 추가재정소요에 해당⁴¹⁾
 - 직접지불금 단가 120만원은 추계기간 동안 변동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 (지급대상) 총 37,665호(소규모어가 22,665호, 어선원 세대 15,000호)
 - 소규모어가 22,665호에는 현행 조건불리지역 소규모어가 6,153호가 포함된 숫자
 - 지급요건 미충족 자, 타 분야 직불금 중복수령자 등 제외
 - 소규모어가 및 어선원 수는 추계기간 동안 변동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개정안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 기간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으로 함

5. 비용추계 상세 내역

가. 추계의 대상 및 방법

■ 추가재정소요의 추계대상은 소규모어가 및 어선원 직접지불제도를 신설하여 소규모어가 및 어선원 직접지불금 지급액

비용추계 산식

$$\text{추가재정소요}_t = \sum_i (\text{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_i^{1)}) + \text{어선원 직접지불금}^{2)})$$

이때, t 는 추계기간(2023~2027년)

i 는 소규모어가가 속한 지역으로 $i=1$ 일 때 일반지역, $i=2$ 일 때 조건불리지역

41) 현재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은 국비 80%, 지방비 20%로 지급되고 있으나, 개정안에 따른 조건불리지역 내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은 국비 100%로 지급될 예정

- 1)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_{i,t}$ = 소규모어가 수 $_{i,t}$ × 소규모어가 직불금 단가 $_{i,t}$
 - $i=1$ 일 때 일반지역 16,512호, 직불금 단가 120만원/호
 - $i=2$ 일 때 조건불리지역 6,153호, 직불금 단가 40만원/호
(현행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80만원)' 수급어가인 소규모어가에는 차액 40만원(=120만원-80만원)이 추가재정소요)
 - 2) 어선원 직접지불금 $_t$ = 어선원 수 $_t$ × 직불금 단가 $_t$
 - 어선원 수 $_t$: 15,000호 (어선원이 속한 세대당 1회 지급)
 - 직불금 단가 $_t$: 120만원/호
- ※ 어선원 수 및 직불금 단가는 추계기간 동안 변동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 소규모어가 지급대상 및 기준은 해양수산부 제출자료 참고

나. 소규모어가 및 어선원 지급대상 및 기준

■ 공통 적용사항

- (지급 대상) 어업경영체 등록 어업인으로 하고, 어선원의 경우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상 가입자(다만, 농업·임업 기본직불금 수령자 제외)
 - (기준) ① 분야별 일정 경영규모 이하, ② 영어종사기간(직전 3년 이상), ③ 어업 외 소득 일정금액 이하(개인 20백만원, 가구 45백만원) 요건 충족
- * 다만, 어선원은 연간 승선기록이 6개월 이상이고, ③ 기준 충족 시 지급

■ 소규모어가 지급대상

- (어선어업) 연안어선의 규모 및 어업수익 등을 감안, 5톤 이하로 설정
 - 어선 5톤 이하 어가의 평균 어업수익은 3,285만원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 기준인 가구 중위소득의 50% 수준(약 20,281어가)
 - * 가구 중위소득 50%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복지사업 수급자의 기준 지표로, 2022년 기준 4인가구 중위소득은 6,145만원(출처: 보건복지부, 2021.7. 고시)
- (양식업) 매출액 1억원(순소득 3천만원) 이하로 설정(약 1,451어가)
 - * 양식업은 품종에 따라 양식규모(면적, 소득) 차이가 매우 커 일률적인 규모로 설정하기보다는 매출액 기준으로 설정(매출액 중 사료 등 투입 비용이 약 70%)

- (신고어업 등) 면허·허가를 겸한 신고어업자를 제외한 단일 신고어업자 중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자(약 20,705어가)
 - * 직불제 시행직전 연도(2022.12.31) 기준 어업신고를 한 자에 한하여 직불금 지급대상에 포함
- 신청자 세대 단위로 신청하며, 세대 내 구성원이 중복 신청 불가⁴²⁾

■ 어선원 지급대상

- (지급 기준·대상) 연근해 어선(내수면 어선 포함) 승선기록 연간 6개월 이상 존재하는 내국인 어선원 15,000명(전체 내국인 어선원 104천명)
- (지급 방안) 승선사실 확인을 위해 어업임금 증빙*(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기준 임금적용동의서 등)이 가능한 어선원을 직불금 지급대상으로 설정
 - * 어선원 고용에 따른 어선원재해보험 가입시 제출하는 서류
- 신청자 세대 단위로 신청하며, 세대 내 구성원이 중복 신청 불가⁴³⁾

다.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소규모어가(어선원 제외) 기준을 충족하는 어가 42,437호에서 중복수급대상자를 제외한 최종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지급어가는 22,665호
 - (1차 제외) 농업직불금 수급자: 11,347호
 - (2차 제외) 어업외 소득 기준(개인 20백만원, 가구 45백만원) 미충족자: 8,425호

42) 안 제18조의2(소규모어가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②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을 신청하는 사람은 어가 단위로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을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한 사람이 속한 어가 내 구성원이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다.

43) 안 제18조의4(어선원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② 어선원 직접지불금을 신청하는 사람은 세대 단위로 어선원 직접지불금을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한 사람이 속한 세대 내 구성원이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다.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가구

(단위: 호)

구분	기준 대상 (A)	농업직불 수급자 1차 제외(B)	어업외소득 미충족 대상(C)	최종 지급대상 (D=A-B-C)
어선어업	20,281	4,644	4,238	11,399
신고어업 등	20,705	6,315	3,900	10,490
양식업	1,451	388	288	775
합계	42,437	11,347	8,425	22,665

자료: 해양수산부 제출자료

- 최종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어가는 22,665호,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지원단가는 연간 120만원(농업·임업 최소 지급단가 준용)
 - 최종 지급대상 22,665호에는 현행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연 80만원)을 수령하는 소규모어가 6,153호가 포함되어 있음
 - 현재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연 80만원)을 수급하고 있는 소규모어가에는 차액 40만원(= 120만원 - 80만원)이 추가재정소요에 해당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가구 및 단가

(단위: 호, 만원/호)

	지급대상	단가	비고
전체 소규모 어가	22,665		
일반지역	16,512	120	
조건불리지역	6,153	40	현재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80만원을 수령하고 있는 어가

자료: 해양수산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추계 결과, 개정안에 따른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추가재정소요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1,113억 7,800만원으로 예상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추계: 2023~2027년

(단위: 호, 백만원)

	2023	2024	2025	2026	2027	합계
일반지역(A)	16,512	16,512	16,512	16,512	16,512	-
직불금 단가(B)	1.2	1.2	1.2	1.2	1.2	-
소계(C=A×B)	19,814	19,814	19,814	19,814	19,814	99,072
조건불리지역(D)	6,153	6,153	6,153	6,153	6,153	-
직불금 단가(E) ¹⁾	0.4	0.4	0.4	0.4	0.4	-
소계(F=D×E)	2,461	2,461	2,461	2,461	2,461	12,306
추가재정소요 (G=C+F)	22,276	22,276	22,276	22,276	22,276	111,378

주: 1)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연 80만원)을 수급하고 있는 소규모어가에 지급하는 차액 40만원이 추가재정소요에 해당

라. 어선원 직접지불금

■ 어선원 직접지불금 기준을 충족하는 내국인 어선원 가구는 15,000호

- 연근해 어선(내수면 어선 포함) 승선기록 연간 6개월 이상 존재하는 내국인 어선원
 - 다만, 선주겸선장 또는 가족어선원(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은 제외, 어선원 동일세대가 소규모어가직불금 지급 대상인 경우도 제외

어선원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가구

(단위: 호)

구분	해경입출항 기록 선원 (A)	연 6개월 미만 승선 어선원 (B)	가족조업 제외 (C)	재해보험 미가입((D)	최종 지급대상 (E=A-B-C-D)
합계	104,095	41,573	37,811	9,711	15,000

주: 해경 입출항 기록 선원 조사기간은 2021.5~2022.4.

자료: 해양수산부 제출자료

- 추계 결과, 개정안에 따른 어선원 직접지불금 추가재정소요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900억원으로 추계됨

어선원 직접지불금 추계: 2023~2027년

(단위: 호, 백만원)

	2023	2024	2025	2026	2027	합계
어선원 세대(A)	15,000	15,000	15,000	15,000	15,000	-
직불금 단가(B)	1.2	1.2	1.2	1.2	1.2	-
추가재정소요 (C=A×B)	18,000	18,000	18,000	18,000	18,000	90,000

3

취약계층 양육 반려동물 진료비용 지원 시나리오: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 주요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장애인 가구 등 취약계층에서 양육 중인 반려동물 진료비용 지원

2. 비용추계 결과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장애인 가구에서 양육중인 반려동물에 대해 진료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다음과 같음
 - (시나리오1: 진료신청률 10%) 연평균 113억 3,300만원
 - (시나리오2: 진료신청률 20%) 연평균 226억 6,700만원

개정안에 따른 비용추계 결과

(단위: 백만원)

	2023	2024	2025	2026	2027	합계	연평균
(시나리오1: 진료신청률 10%)							
합 계	10,573	10,982	11,362	11,708	12,042	56,667	11,333
국비(50%)	5,287	5,491	5,681	5,854	6,021	28,333	5,667
지방비(50%)	5,287	5,491	5,681	5,854	6,021	28,333	5,667
(시나리오2: 진료신청률 20%)							
합 계	21,147	21,963	22,723	23,416	24,085	113,334	22,667
국비(50%)	10,573	10,982	11,362	11,708	12,042	56,667	11,333
지방비(50%)	10,573	10,982	11,362	11,708	12,042	56,667	11,333

3. 재정수반요인

■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비용의 지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취약계층이 양육중인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 발생
 - 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장애인 등

4. 비용추계의 전제

■ 본 추계에서 사용한 주요 전제는 다음과 같음

- (반려동물 양육 가구수) 통계청의 「2020 인구주택총조사」 중 반려동물 보유가구 조사 결과, 전체가구 대비 반려동물 양육 가구 비율은 15.0% 수준
- (추계대상 반려동물) 반려동물 중 양육비율이 높은 개와 고양이로 한정
- (취약계층 가구수) 중복을 제거한 취약계층별 수급가구 수 및 수급자 수 통계자료 활용
 - 추계기간 동안 2022년 기준 통계청의 「총인구조사」에서 조사된 총가구수 대비 취약계층 가구 비율 적용
- (취약계층 가구수 전망) 추계기간 동안 통계청의 「장래가구추계: 2020~2050년」에서 제시된 총가구 전망치 대비 취약계층 가구 비율 적용
- (가구당 양육 반려동물 수 및 총가구 대비 비율) 1가구당 양육중인 반려동물 수는 개 1.19마리, 고양이 1.46마리(2021년 기준)
- (진료비 지원단가) 반려동물 1마리당 필수진료비용 19만원 지원
- (진료신청률) 반려동물 진료신청률을 시나리오로 구분
 - (시나리오1) 진료신청률 10%/ (시나리오2) 진료신청률 20%
- (진료비용 부담비율) 국비 및 지방비 부담비율은 50:50으로 가정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 적용

■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개정안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으로 함

5. 비용추계 상세 내역

가. 추계의 대상 및 방법

- 추가재정소요의 추계대상은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장애인 가구)이 양육중인 반려동물의 진료비용 지원금액

비용추계 산식

$$\begin{aligned} \text{추가재정소요}_t &= \text{취약계층 양육 반려동물 진료비용 지원금액}_t \\ &= \sum_{i,j} (\text{취약계층 양육 반려동물 수}_{i,j,t}^{1)}) \times \text{진료비 지원단가}_t^{2)} \\ &\quad \times \text{진료신청률}_{k,t}^{3)} \times \text{국비·지방비 부담비율}_t^{4)} \end{aligned}$$

이때, t 는 추계기간(2023~2027년),

i 는 반려동물 종류: $i=1$ 일 때 개(반려견), $i=2$ 일 때 고양이(반려묘),

j 는 취약계층 유형: $j=1$ 일 때 기초생활수급자가구,

$j=2$ 일 때 차상위계층가구, $j=3$ 일 때 장애인가구,

$j=4$ 일 때 한부모가족가구

k 는 진료신청률: $k=1$ 일 때 10%, $k=2$ 일 때 20%

1) 취약계층 양육 반려동물 수 $_{i,j,t} = \text{취약계층 가구수}_{j,t}^{a)} \times \text{양육 반려동물 가구 비율}_{i,t}^{b)} \times \text{1가구당 양육 반려동물 수}_{i,t}^{c)}$

a) 취약계층 가구수 $_{j,t} = \text{우리나라 총가구수}_t \times \text{총가구 대비 취약계층별 가구 비율}_{j,t}$

b) 양육 반려동물 가구 비율 $_{i,t}$: 총가구 대비 개 11.6%, 고양이 3.4%,
반려동물 양육가구 대비 개 77.5%, 고양이 22.9%

c) 1가구당 양육 반려동물 수 $_{i,t}$: 개 1.19마리, 고양이 1.46마리 (2021년 기준)

2) 진료비 지원단가 $_t$: 19만원/마리 (2022년 기준, 반려동물 1마리당 필수진료비용)

3) 진료신청률 $_{k,t}$: 10% 또는 20%

- (시나리오1): 진료신청률 10%/ (시나리오2): 진료신청률 20%

4) 국비·지방비 부담비율 $_t$ 50 : 50

나. 반려동물 양육가구 현황

- 통계청의 「2020 인구주택총조사」 중 ‘반려동물 보유가구’ 조사 결과, 반려동물 양육가구는 3,129천가구, 전체 20,927천가구의 15.0% 수준⁴⁴⁾

44) 농림축산식품부는 매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에서 반려동물 수, 양육가구 등 추정. 본 추계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조사표본수(총 5,000명)와 통계청 조사표본수(전체 가구의 약 20%)가 큰 차이를 보이므로 통계청 자료 활용

「2020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른 반려동물 가구 조사결과: 2020년

(단위: 천가구, %)

	전체	반려동물 안 키움	반려동물 키움			
				개	고양이	기타
가구 수	20,927	17,798	3,129	2,423	717	150
(비율)	(100.0)	(85.0)	(15.0)	(11.6)	(3.4)	(0.7)

주: 반려동물은 복수응답으로 항목의 합은 전체보다 많음

자료: 통계청 보도자료, 「2020 인구주택총조사 표본 집계 결과: 인구·가구 기본 항목」, 2021.9.27.

다. 취약계층 가구 등 전망

- 보건복지부 및 사회보장정보원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족의 수급가구 및 수급자 수는 다음과 같음(중복제거)

사회적 취약계층 수급가구 수 및 수급자 수: 중복제거

(단위: 가구, 명)

구분	2019.12		2020.12.		2021.12		2022.8	
	수급가구	수급자	수급가구	수급자	수급가구	수급자	수급가구	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A=a+b+c+d)	1,281,759	1,792,012	1,459,059	2,046,213	1,637,569	2,268,852	1,706,337	2,338,650
-생계급여(a)	861,409	1,150,809	923,873	1,221,022	1,081,655	1,402,260	1,141,253	1,465,445
-의료급여(b)	105,373	164,779	107,161	150,642	98,494	127,182	99,961	122,448
-주거급여(c)	236,643	366,912	358,891	579,879	394,210	653,899	406,919	673,011
-교육급여(d)	78,334	109,512	69,134	94,670	63,210	85,511	58,204	77,746
차상위계층(B)	322,647	396,174	319,239	400,213	302,720	399,142	290,131	383,359
장애인(C)		2,024,993		2,015,451		2,011,788		2,000,068
한부모가족(D)	91,770	155,198	71,093	117,896	55,253	89,961	47,448	80,023
합계 (E=A+B+C+D)	1,696,176	4,368,377	1,849,391	4,579,773	1,995,542	4,769,743	2,043,916	4,802,100

주: 1. 각 계층별 중복제거시 우선순위: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한부모가족

2. 장애인은 수급자 수만 추출(가구 정보 없음)

자료: 보건복지부·사회보장정보원 제출자료, 2022.11.

- 장애인의 경우 수급자 수만 제공되므로 장애인 수급자 수를 장애인 1가구당 평균 가구원 수 2.53명(2017년 기준)⁴⁵⁾로 나누어 수급가구 수 산출
 - 2022년 8월 기준, 장애인 수급가구 수는 790,540가구(=2,000,068명/2.53명)로 산출
- 통계청 「장래가구추계: 2020~2050년」을 사용하여 추계기간(2023~2027년) 동안 우리나라 총가구에서 각 취약계층별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 계산
 - 총가구 대비 취약계층별 가구 비율은 13.1% (2022년 기준)
 - 이때 추계기간 동안 사회보장급여의 제도변화 없이 취약계층별 가구 비율이 2022년 수준으로 고르게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우리나라 총가구 대비 각 취약계층별 가구 수 및 비율: 2022년

(단위: 가구, %)

	총가구 (A)	취약계층				
		기초생활 수급(B)	차상위계층 (C)	장애인 (D)	한부모가족 (E)	합계 (F=B+C+D+E)
가구 수	21,579,415	1,706,337	290,131	790,540	47,448	2,834,456
(비율)	(100.0)	(7.9)	(1.3)	(3.7)	(0.2)	(13.1)

자료: 통계청, 「장래가구추계: 2020~2050년」, 2022.6.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통계청의 「장래가구추계」에서 전망한 총가구 수에 취약계층 가구 비율을 곱하여, 추계기간 동안 취약계층별 가구 수 전망
 - 여기에 '총가구 대비 반려동물 양육가구 비율(15.0%)'⁴⁶⁾을 곱하여 취약계층별 반려동물 양육가구 수 전망

45) 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는 조사환경 악화(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등)를 고려하여 등록장애인 DB를 모집단으로 진행하였으며 가구판별조사를 실시하지 않음

[장애인 실태조사 현황: 장애인 가구당 평균 가구원수]

(단위: 명)

	2005	2011	2014	2017	2020
장애인 가구당 평균 가구원수	2.94	2.76	2.72	2.53	미조사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 2020.12.

46) 전체 20,927천가구 중 반려동물 보유가구 3,129천가구

취약계층별 가구 수 및 취약계층별 반려동물 양육가구 수 추계: 2022~2027년

(단위: 가구)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총가구(A)	21,579,415	21,833,527	22,080,462	22,308,987	22,516,347	22,705,521
[취약계층별 가구 수]						
기초생활수급가구(7.9%)	1,706,337	1,726,430	1,745,956	1,764,026	1,780,422	1,795,381
차상위계층가구(1.3%)	290,131	293,547	296,867	299,940	302,728	305,271
장애인가구(3.7%)	790,540	799,849	808,895	817,267	824,864	831,794
한부모가족가구(0.2%)	47,448	48,007	48,550	49,052	49,508	49,924
합계	2,834,456	2,867,834	2,900,269	2,930,285	2,957,522	2,982,370
총가구 대비 반려동물 보유가구 비율	15.0%	15.0%	15.0%	15.0%	15.0%	15.0%
[취약계층별 반려동물 양육가구 수]						
기초생활수급가구	255,132	258,136	261,055	263,757	266,209	268,445
차상위계층가구	43,380	43,891	44,388	44,847	45,264	45,644
장애인가구	118,202	119,593	120,946	122,198	123,334	124,370
한부모가족가구	7,094	7,178	7,259	7,334	7,402	7,465
합계	423,808	428,799	433,648	438,136	442,209	445,924

자료: 1. 통계청, 「2020 인구총조사」, 2021. 및 통계청, 「장래가구추계: 2020~2050년」, 2022.6.
2. 보건복지부·사회보장정보원 제출자료, 2022.11.

라. 취약계층 양육 반려동물 수 전망

- 1가구당 양육중인 반려동물은 「2021년 동물보호복지 국민의식조사」를 참고하여 개 1.19마리, 고양이 1.46마리로 가정하며,⁴⁷⁾ 동 숫자는 추계기간 동안 변동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 취약계층 가구 수 전망치에 개·고양이의 보유가구 비율 및 1가구당 양육마리 수를 곱하여 취약계층 양육 반려동물 수 산출

47) 농림축산식품부·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2021년 동물보호복지 국민의식조사」, 2021.11.30.

취약계층 양육 반려동물 수 추계: 2022~2027년

(단위: 가구, 마리)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취약계층별 반려동물 양육가구 수]							
기초생활수급자(A)		255,132	258,136	261,055	263,757	266,209	268,445
차상위계층(B)		43,380	43,891	44,388	44,847	45,264	45,644
장애인(C)		118,202	119,593	120,946	122,198	123,334	124,370
한부모가족(D)		7,094	7,178	7,259	7,334	7,402	7,465
소계 (E=A+B+C+D)		423,808	428,799	433,648	438,136	442,209	445,924
[취약계층 양육 반려동물 수]							
개	반려동물 양육가구 대비 반려견 보유가구 비율(F, %)	77.5	77.5	77.5	77.5	77.5	77.5
	1가구당 반려견 양육 마리 수(G, 마리/가구)	1.19	1.19	1.19	1.19	1.19	1.19
	기초생활수급자 (H=A×F×G)	235,147	237,916	240,607	243,097	245,356	247,418
	차상위계층(I=B×F×G)	39,982	40,453	40,911	41,334	41,718	42,069
	장애인(J=C×F×G)	108,943	110,226	111,472	112,626	113,673	114,628
	한부모가족(K=D×F×G)	6,539	6,616	6,691	6,760	6,823	6,880
	소계 (L=H+I+J+K)	390,610	395,210	399,680	403,816	407,570	410,994
고양이	반려동물 양육가구 대비 반려묘 보유가구 비율(M, %)	22.9	22.9	22.9	22.9	22.9	22.9
	1가구당 반려묘 양육 마리수(N)	1.46	1.46	1.46	1.46	1.46	1.46
	기초생활수급자 (O=A×M×N)	85,383	86,388	87,365	88,269	89,090	89,838
	차상위계층(P=B×M×N)	14,518	14,689	14,855	15,009	15,148	15,275
	장애인(Q=C×M×N)	39,557	40,023	40,476	40,895	41,275	41,622
	한부모가족(R=D×M×N)	2,374	2,402	2,429	2,454	2,477	2,498
	소계 (S=O+P+Q+R)	141,832	143,502	145,125	146,627	147,990	149,234
합계 (T=L+S, 마리)		532,443	538,712	544,805	550,444	555,560	560,228

자료: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1. 통계청, 「장래가구추계: 2020~2050년」, 2022.6. 및 통계청, 「총인구조사」, 각 연도
2. 보건복지부·사회보장정보원 제출자료, 2022.11.
3. 농림축산식품부·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2021년 동물보호복지 국민인식조사」, 2021.11.

마. 반려동물 진료비용 단가, 진료신청률, 국비·지방비 분담비율

- 반려동물 진료비용 지원 단가는 서울특별시의 취약계층 반려동물 진료비용 지원 사업을 참고하여 1마리당 필수진료비용 19만원으로 가정
 - 필수진료비용은 기초검진, 예방접종, 심장사상충 예방약 등으로 1마리당 30만원 상당이 소요되며 이중 19만원 지원
 - 이때 필수진료비용 단가에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 적용
- 반려동물 진료신청률은 현 시점에서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아래와 같이 시나리오별로 구분⁴⁸⁾
 - (시나리오1) 진료신청률 10%
 - (시나리오2) 진료신청률 20%
- 진료비용의 국비 및 지방비 분담비율은 50 : 50으로 가정

48) 서울특별시는 「2022년 취약계층 반려동물을 위한 우리동네 동물병원 사업 계획」에서 지원목표로 1,500마리를 설정하였으며, 이는 서울시 취약계층 보유 반려동물 104,472마리의 1.44% 수준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3~2027년

(단위: 백만원)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비용의 지원	2023	2024	2025	2026	2027	합계
(시나리오1) 진료신청률 10%일 때						
기초생활수급자가구	6,365	6,611	6,840	7,048	7,250	34,113
차상위계층가구	1,082	1,124	1,163	1,198	1,233	5,800
장애인가구	2,949	3,063	3,169	3,265	3,359	15,805
한부모가족가구	177	184	190	196	202	949
합계	10,573	10,982	11,362	11,708	12,042	56,667
국비(50%)	5,287	5,491	5,681	5,854	6,021	28,333
지방비(50%)	5,287	5,491	5,681	5,854	6,021	28,333
(시나리오2) 진료신청률 20%일 때						
기초생활수급자가구	12,730	13,222	13,679	14,096	14,499	68,227
차상위계층가구	2,165	2,248	2,326	2,397	2,465	11,601
장애인가구	5,898	6,126	6,338	6,531	6,717	31,609
한부모가족가구	354	368	380	392	403	1,897
합계	21,147	21,963	22,723	23,416	24,085	113,334
국비(50%)	10,573	10,982	11,362	11,708	12,042	56,667
지방비(50%)	10,573	10,982	11,362	11,708	12,042	56,667

- 주: 1. 본 추계는 반려동물 중 개와 고양이를 대상으로 추계
 2. 국비 및 지방비 부담비율은 50:50으로 가정하였으며, 향후 부담비율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IV

환경·국토·교통 분야

1

악취방지시설 설치 지원: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1. 주요내용

- 악취배출시설 설치 사업장에 기술적 지원외에 재정적 지원 근거 신설

2. 비용추계 결과

-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이 악취를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악취저감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에 따라 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하게 될 경우, 연평균 129억 3,500만원의 추가재정소요 예상

개정안에 따른 비용추계 결과

(단위: 백만원)

구분	2023	2024	2025	2026	2027	합계	연평균
악취방지시설 설치	12,553	12,741	12,932	13,126	13,323	64,676	12,935
- 국비	6,973	7,078	7,184	7,292	7,401	35,931	7,186
- 지방비	5,579	5,662	5,747	5,833	5,921	28,745	5,749

주: 1. 악취방지시설 설치비의 국비, 지방비, 사업자 자부담 비율을 5:4:1로 가정함

2. 사업대상 개소의 증감에 따라 추가재정소요 증감 가능

자료: 환경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3. 재정수반요인

- 악취배출시설 설치 사업장에 기술적 지원외에 재정적 지원 신설
 -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이 악취를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악취저감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 외에 재정적 지원을 하게 될 경우, 악취방지시설 설치 지원비용이 추가재정소요로 발생함

4. 비용추계의 전제

- 환경부 제출자료를 참고하여 사업대상 개소와 악취방지시설 설치 지원비용을 산출
 - 사업대상 개소의 증감에 따라 추가재정소요 증감 가능
 - 시설 유지관리비용은 해당 사업장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가정하였고, 시설 유지관리 비용이 추가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 증가 가능
- 환경부의 「2022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⁴⁹⁾에 따라 2022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계획의 예산부담 비율을 준용하여 악취방지시설 설치비의 국비, 지방비, 사업자 자부담 비율을 5:4:1로 가정함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를 적용
-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개정안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으로 함

49) 「대기환경보전법」 제81조(재정적·기술적 지원)의 규정에 따라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보조금의 효율적인 사용과 관리를 위한 사항을 규정

5. 비용추계 상세 내역

가. 추계의 대상 및 방법

- 비용추계 대상은 악취저감에 필요한 악취방지시설 설치 지원비용임

비용추계 산식

$$\text{추가재정소요}_t = (\text{축산시설 설치지원비}_t^{1)} + \text{일반사업장 설치지원비}_t^{2)}) \times 0.9^{3)}$$

이때, t 는 추계기간(2023~2027년)

- 1) 축산시설 설치지원비 $_t$ = 축산시설 개소수 × 설치 단가 $_t$
 - 축산시설 개소수는 매년 125개소로 가정함
 - 설치 단가는 2021년 기준 개소당 5,908만원을 기준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함
 - ※ 광역단위 대기개선지원(악취방지조치) 시범사업⁵⁰⁾의 보조금 지원 기준에 의한 방지시설(축산시설) 보조금액을 토대로 축산시설 보조금액의 평균 설치 단가
- 2) 일반사업장 설치지원비 $_t$ = 일반사업장 개소수 × 설치 단가 $_t$
 - 일반사업장 개소수는 매년 125개소로 가정함
 - 설치 단가는 2022년 기준 개소당 4,980만원을 기준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함
 - ※ 「2022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의한 일반 악취배출 사업장 보조금액의 평균 설치 단가
- 3) 악취방지시설 설치비의 국비, 지방비, 사업자 자부담 비율을 5:4:1로 가정하였으므로, 시설 설치비의 90%를 추가재정소요로 산출

나. 악취저감을 위한 재정적 지원

- (사업대상 개소) 한국환경공단에서 수행중인 악취배출사업장 악취저감 기술지원 사업의 최근 3년간 수행 현황 중 악취저감 기술지원을 받은 신규 사업장 개소수를 참고하여 매년 250개(축산시설 125개소, 일반사업장 125개소)로 가정

50) 환경부의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지역(광역)단위로 추진되는 대기개선 기획사업임

- 사업대상 개소수는 추계기간 동안 변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고, 사업대상 개소수의 증감에 따라 추가재정소요 증감 가능
- (설치 단가) 환경부의 광역단위 대기개선지원(악취방지조치) 시범사업 및 「2022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의해 지원받은 축산시설 및 일반 악취배출사업장 보조금액의 평균 설치 단가를 기준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함
 - 축산시설: 5,908만원 (2021년 기준)
 - 일반사업장: 4,980만원 (2022년 기준)
 - 시설 유지관리비용은 해당 사업장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가정하였고, 시설 유지관리 비용이 추가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 증가 가능

축산시설 보조금액 현황: 2021년 기준

(단위: 만원)

구 분	시설용량	방지시설 설치비	보조금 지원액		
			계	국비	지방비
분무시설 (축사내부)	200㎡	460	414	230	184
	400㎡	600	540	300	240
	600㎡	730	657	365	292
	800㎡	850	765	425	340
	1,000㎡	1,000	900	500	400
평 균(A)		728	-	-	-
바이오커튼 (축사외부)	20m	2,000	1,800	1,000	800
	40m	3,600	3,240	1,800	1,440
	60m	5,200	4,680	2,600	2,080
	80m	6,800	6,120	3,400	2,720
	100m	8,300	7,470	4,150	3,320
평 균(B)		5,180	-	-	-
적 용(A+B)		5,908	-	-	-

주: 분무시설 및 바이오커튼은 세정수 또는 약액(미생물제제)를 공간에 살포하는 시설로 펌프 및 배관시설을 포함한 비용임

자료: 환경부 대기관리과 제출자료

일반 사업장 보조금액 현황: 2022년 기준

(단위: 만원)

구 분	시설용량	방지시설 설치비	보조금 지원액		
			계	국비	지방비
흡수에 의한 시설 (세정탑 등)	100m³/분 ⁵¹⁾	3,800	3,420	1,900	1,520
	200m³/분	5,000	4,500	2,500	2,000
	300m³/분	6,700	6,030	3,350	2,680
	400m³/분	7,900	7,110	3,950	3,160
	500m³/분	9,000	8,100	4,500	3,600
평 균(A)		6,480	-	-	-
흡착에 의한 시설 (활성탄 흡착탑 등)	100m³/분	1,600	1,440	800	640
	200m³/분	2,900	2,610	1,450	1,160
	300m³/분	3,500	3,150	1,750	1,400
	400m³/분	4,400	3,960	2,200	1,760
	500m³/분	5,000	4,500	2,500	2,000
평 균(B)		3,480	-	-	-
적 용[(A+B)÷2]		4,980	-	-	-

주: 대부분의 악취배출사업장이 흡수 또는 흡착에 의한 시설 적용

자료: 환경부 대기관리과 제출자료

- 악취방지시설 설치 비용은 연도별 사업대상 개소수에 설치 단가를 곱하여 추계

악취방지시설 설치 비용 추계: 2023~2027년

(단위: 백만원)

악취방지시설 설치		2023	2024	2025	2026	2027	합계	평균
축산시설	개소수(A, 개소)	125	125	125	125	125	-	-
	설치 단가(B, 백만원/개소)	60.9	61.9	62.8	63.7	64.7	-	-
	소계(C=A×B)	7,623	7,737	7,853	7,971	8,090	39,276	7,855
일반사업장	개소수(D, 개소)	125	125	125	125	125	-	-
	설치 단가(E, 백만원/개소)	50.5	51.3	52.1	52.9	53.7	-	-
	소계(F=D×E)	6,324	6,419	6,515	6,613	6,712	32,586	6,517
합 계		13,947	14,157	14,369	14,584	14,803	71,862	14,372

자료: 환경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51) 1분당 100m³ 공간의 악취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

- (지원 비율) 환경부의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의 2021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계획의 예산부담 비율을 준용하여 악취방지시설 설치비의 국비, 지방비, 사업자 자부담 비율을 5:4:1로 가정함

주거급여 수급기준 완화 미시자료 분석: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1. 주요내용

- 주거급여 수급기준을 현행 기준 중위소득 46%에서 50%로 완화

2. 비용추계 결과

- 주거급여 수급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로 상향하는 경우 연평균 4,150억원 추가재정소요 예상

개정안에 따른 비용추계 결과

(단위: 억원)

구분	2023	2024	2025	2026	2027	합계	연평균
주거급여 수급기준 완화	3,526	3,809	4,099	4,394	4,920	20,748	4,150
- 국비	2,931	3,167	3,407	3,653	4,090	17,248	3,450
- 지방비	595	643	691	741	830	3,500	700

3. 재정수반요인

- 주거급여 선정기준 조정
 -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50 이하인 자로 함
 - 현행법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3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의 주거급여지원 사업은 2022년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46 이하인 자에 대하여 실시
 - 따라서 개정안에 따라 주거급여 수급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46% 이하에서 50% 이하로 완화될 경우 수급대상자가 확대되므로 급여비 지출이 증가할 수 있음

4. 비용추계의 전제

- 주거급여 수급대상은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의 마이크로데이터자료를 이용하여 해당 가구를 추정
 - 본 추계에서는 현행 사업 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46% 이하인 점을 감안하여,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까지 지급할 때 소요 비용을 추산함
 - 주거급여⁵²⁾는 임차급여와 자가급여로 구분하여 추계
 - 주택 수리비용을 지원하는 자가급여의 경우 최근 5년간 급여대상자 기준 확대 등에도 사업비(예산기준) 확대⁵³⁾가 나타나지 않아, 현행 수준이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에서 제외함⁵⁴⁾
 - 개정안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중 주거급여 신청이 예상되는 가구분포를 알 수 없으므로, 통계청「가계금융복지조사」(2018~2021년)의 경상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6%, 50% 이하인 가구의 비중을 활용하여 임차급여 수급 대상을 추정함
-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개정안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으로 함

52) 「주거급여법」 제2조(정의)제1호. “주거급여”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2호의 주거급여로서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53) 주거급여 중 자가급여 수급대상 및 자가급여비(예산) 현황: 2017~2021년

	2017	2018	2019	2020	2021
기준 중위소득	43%	43%	44%	45%	45%
자가가구	75,513	74,158	86,055	91,786	103,464
(실수급가구)	19,882	17,488	22,264	17,635	20,321
자가급여비(억원)	1,114	1,035	1,777	1,511	1,511

54) 국토교통부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로 확대하더라도 향후 자가급여비는 1,500억원 수준(2022년 예산)으로 유지할 것으로 전망

5. 비용추계 상세 내역

가. 추계의 대상 및 방법

- 추가재정소요의 추계대상은 주거급여 수급대상 확대(46%→50%)에 따라 발생하는 임차급여비

비용추계 산식

추가재정소요_t = (추가 임차가구 수_t × 급여비 단가_t)

이때, t 는 추계기간(2023~2027년)

- 1) 추가 임차가구 수_t = $\sum_{i=1}^2 [\text{가구 수}_t \times (p_{50} - p_{46}) \times \gamma_i + (p_{50} - p_{46}) \times \delta]$
- 가구 수_t: 통계청 장래가구추계
 - p_{50} = 전체 가구 중 소득기준 50% 이하 가구 비중 전망치(2021년 가계금융복지조사 50%이하 가구 비중은 7.31%, 연평균 -0.66%p 감소세 반영)
 - p_{46} = 전체 가구 중 소득기준 46% 이하 가구 비중 전망치(2021년 가계 금융복지조사 46%이하 가구 5.97%, 연평균 -0.91%p 감소세 반영)
이때, 소득은 「가계금융복지조사」 각 년도 경상소득을 기준 중위소득으로 가정
 - γ_i = 임차급여 평균 수급률, 이때 i 는 소득기준 [(1= 기준 중위소득 46% 이하 수급률 98.9%(2021년 45% 이하 가구 실적), 2= 50% 이하 가구 임차급여 평균 수급률 89.2%*)]
 - * 2020~2021년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 가구의 평균 수급률 적용
 - δ = 청년 분리 가구 수급비율 2.7%(임차가구 중 청년분리가구 수급자 비중, 2021년 실적) 추계기간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 2) 급여비 단가_{j,t} = $\sum_{j=1}^2 [(c_{j,t} + d_j) \times 12]$
- $c_{j,t}$ = 임차급여비 단가(월), 이때 j 는 임차급여대상의 종류
(1=일반가구 임차급여비, 2=청년분리가구 임차급여비),
2022년 임차급여비(월) 16.08만원(예산기준), 청년분리가구 임차급여비(월) 16.30만원
 - d_j = 연도별 평균증가액(1=1.0만원(최근 5년간 평균증가액), 2=1.2만원(임차급여비 보다 추계기간동안 0.2만원 높게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2021년 실적))

※ 국비지원율은 2022년 83.13% 수준이 추계기간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나. 주거급여 선정기준 조정

- 주거급여 수급기준 조정(46%→50%)으로 임차급여 수급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임차급여비는 2021년부터 시행된 청년 주거급여⁵⁵⁾를 구분하여 추계
 - 청년분리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단가에 차이가 있어 별도로 추계하며, 청년분리가구 수는 2021년 실적치(해당 소득기준 대상 가구 수의 2.7%)가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임차급여 수급가구 현황: 2017~2021년

(단위: 가구)

	2017	2018	2019	2020	2021
임차급여 수급가구	727,022	735,720	772,188	914,510	1,149,785

주: 임차급여 수급가구 수는 각 연도별 1~12월까지 평균 수급가구 수

자료: 국토교통부

- (임차가구 추정) 추가 임차급여 수급가구 수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에서 현행 기준선 대상 가구(46% 이하)를 차감하여 추산함
 - 기준 중위소득 46%, 50% 가구분포에 대한 정보가 미비하므로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경상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6% 및 50% 이하일 때 가구 비중을 활용하여 추정
 - 기준 중위소득을 경상소득으로 가정할 때 46% 이하 가구는 전체 가구의 5.97%, 50%이하는 전체 가구의 7.31%(2021년 가계금융복지조사)이며, 소득구간별 가구 비중의 평균추세를 적용하여 추계기간 동안 가구비중 전망
 - 임차급여 수급자의 경상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6%이하인 비중은 감소세(연평균 -0.91%p), 50% 이하 비중은 감소세(연평균 -0.66%p)
 - 기준 중위소득 46% 이하인 가구의 주거급여 실수급률은 98.9%를 적용, 50% 이하 가구의 경우 45% 이하 가구의 2020~2021년 평균수급률(89.2%)적용
 - 2021년 경상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 가구 실수급률이 98.9%로 나타나고 있어 46% 이하 가구도 동 비율이 추계기간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 청년분리가구 수는 임차가구의 2.7%(추정된 임차가구 중 청년분리가구 비중, 2021년 실적)가 추계기간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55) 주거급여 수급자의 자녀 중 만 19세~30세 미만의 미혼자녀(‘청년가구원’)가 취학·구직 목적으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 지급

- 이상의 과정을 통해 임차급여 수급자 수를 전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임차급여 수급가구 추계: 2023~2027년

(단위: 가구)

	2023	2024	2025	2026	2027	합계
임차급여 수급가구 (개정안, A=b+c)	1,420,144	1,423,098	1,425,091	1,426,188	1,403,303	7,097,824
임차급여 수급가구(b)	1,379,777	1,382,645	1,384,580	1,385,645	1,363,425	6,896,072
청년분리가구(c)	40,367	40,453	40,511	40,543	39,878	201,752
임차급여 수급가구 (현행, B=d+e)	1,248,374	1,247,915	1,246,595	1,244,473	1,209,946	6,197,303
임차급여 수급가구(d)	1,215,600	1,215,153	1,213,867	1,211,801	1,178,180	6,034,601
청년분리가구(e)	32,774	32,762	32,728	32,672	31,766	162,702
추가대상가구 (A-B)	171,770	175,183	178,496	181,715	193,357	900,521

- (급여비 단가) 가구별 지급된 임차급여비 단가는 2022년 예산상 단가에 최근 5년간(2018~2022년 예산) 평균증가액을 반영하며, 임차급여 중 청년분리가구에 대한 임차급여비 단가는 2021년 실적치를 반영함
 - 임차급여 예산상 단가(월): 일반 임차급여비 단가 16.08만원(월), 청년분리가구 단가 16.30만원
 - 임차급여비 단가 평균증가액: 1.0만원, 청년분리가구 급여비 단가 평균증가액: 1.02만원
 - 2021년도 청년분리가구 급여비 평균단가가 임차급여비 평균단가보다 0.22만원 높은 것이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가구별 임차급여비(월) 단가 추계: 2023~2027년

(단위: 만원)

	2023	2024	2025	2026	2027
임차급여비(일반) 단가(월)	17.1	18.1	19.1	20.1	21.2
임차급여(청년분리가구) 단가(월)	17.3	18.3	19.3	20.4	21.4

주: 2022년은 임차급여비(월)는 예산상 단가 16.08만원(월), 청년임차급여 예산상 단가 16.30만원(월)

■ 주거급여 추가재정소요는 급여별 추가된 가구와 월평균 급여비 단가 및 12개월을 곱하여 추산

- 2022년도 예산 기준 국비보조율 83.13%가 추계기간 동안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주거급여 수급대상 확대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3~2027년

(단위: 억원)

			2023	2024	2025	2026	2027	합계
임차 급여	현행 (46% 이하)	국비	21,297	22,553	23,793	25,013	25,538	118,194
		지방비	4,322	4,577	4,828	5,076	5,183	23,986
		소계(a)	25,619	27,130	28,621	30,089	30,721	142,180
	개정안 (50% 이하)	국비	24,228	25,720	27,200	28,666	29,628	135,442
		지방비	4,917	5,220	5,520	5,817	6,013	27,486
		소계(b)	29,145	30,940	32,720	34,483	35,640	162,928
임차급여 추가재정소요 (b-a)		국비	2,931	3,167	3,407	3,653	4,090	17,248
		지방비	595	643	691	741	830	3,500
		합계	3,526	3,809	4,099	4,394	4,920	20,748

주: 본 추계에서 기준 중위소득 이하 가구는 경상소득으로 측정하여 추정한 결과를 활용함

특별교통수단 확보 및 이동지원센터 지원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1. 주요내용

- 특별교통수단 확보 및 이동지원센터 국비 지원 등

2. 비용추계 결과

- (추가재정소요) 특별교통수단을 법정대수만큼 확보하고,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신규로 1개소 설치 및 운영할 경우 연평균 38억원의 추가재정소요 예상

개정안에 따른 비용추계 결과

(단위: 백만원)

구분	2023	2024	2025	2026	2027	합계	연평균
특별교통수단 확보	2,197	2,230	2,263	2,297	2,232	11,218	2,244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1,440	1,485	1,528	1,571	1,618	7,642	1,528
합계	3,637	3,715	3,791	3,868	3,850	18,860	3,772

- (재정변동) 개정안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고 있는 이동지원센터 설치·운영비, 임차택시 운영비를 국가가 지원할 경우, 해당 부담만큼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분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총재정변동: 5년 동안 2조 5,201억원(연평균 5,040억원)
 - 국 비 증가: 5년 동안 1조 2,601억원(연평균 2,520억원)
 - 지방비 감소: 5년 동안 1조 2,601억원(연평균 2,520억원)

개정안에 따른 재정변동: 2023~2027년

(단위: 억원)

구분	2023	2024	2025	2026	2027	합계	연평균
이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4,382	4,518	4,649	4,779	4,922	23,250	4,650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 지원	313	351	389	429	469	1,951	390
재정변동 합계	4,695	4,869	5,038	5,208	5,392	25,201	5,040
국비(증가)	2,348	2,434	2,519	2,604	2,696	12,601	2,520
지방비(감소)	2,348	2,434	2,519	2,604	2,696	12,601	2,520

주 1.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던 비용을 국가가 보조함에 따라 지방은 당초보다 50% 수준만 부담하므로, 지방비는 감소하고, 국비는 증가 예상

3. 재정수반요인

■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등

- 국가 또는 도는 제1항⁵⁶⁾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의 확보 또는 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 및 제3항에 따른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하여야 함

현행법 및 개정안 비교

현행법	개정안
국가 또는 도는 특별교통수단 확보, 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 및 운 영에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국가 또는 도는 특별교통수단 확보, 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 및 운 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여야 함

56)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등) ① 시장이나 군수는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수 이상의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여야 한다.

■ 교통약자의 이동지원

- 국가 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는 제1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운행하거나 택시를 이용하는 데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하여야 함

4. 비용추계의 전제

■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반요인별 추계현황은 다음과 같음

재정수반요인별 추계현황

재정수반요인	추계현황	재정소요
특별교통수단 확보 국가 또는 도 지원	추계	추가재정소요
이동지원센터 국가 지원	추계	총재정 변동없음 (전액 지방비→ 국비·지방비)
광역이동지원센터 국가 또는 도 지원	추계	추가재정소요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임차택시) 확보 지원	추계	총재정 변동없음 (전액 지방비→ 국비·지방비)
택시 이용 비용 지원	×	추계곤란

■ (특별교통수단 확보) 국가 또는 도는 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의 확보 자금을 지원하여야 하는데, 현재 국토교통부는 특별교통수단 확보를 위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다만, 현행 특별교통수단은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 수만큼 충족하도록 동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법정대수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에 따라 이를 충족할 때 소요되는 국가 또는 도의 부담분을 추정함

■ (이동지원센터) 이동지원센터는 현재 전액 지방비로 운영되고 있어, 개정안에 따라 국가가 지원할 경우 국가의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되나, 지방비는 국가 지원분만큼 차감되므로 총재정은 변동이 없음

- 다만, 국가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고 지방비의 부담분이 감소하므로 재정주체별 재정변동을 추계하여 제시함
- 국토교통부는 특별교통수단 확보를 위해 차량도입 보조금을 지급⁵⁷⁾하고 있어 추계에서 제외함
- (광역이동지원센터) 광역이동지원센터가 미설치된 충청북도에 신규로 설치 및 운영하게 되는 경우 국가 또는 도가 지원하여야 하므로, 기존에 설치된 유사 사례를 참고하여 비용을 추산함
- 광역자치단체의 평균 고용 인력은 24명, 인당 평균 운영비(연간)는 5,810만원(2022년 기준)으로 함
- (택시이용요금) 택시를 이용하는 데 소요되는 자금을 국가 또는 특별시장 등이 지원하여야 하도록 하고 있으나, 각 지방자치단체별 택시(사업명: 바우처택시)⁵⁸⁾이용에 소요되는 자금, 이용수요 및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보조에 관한 정보가 부재하여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어 추계에서 제외함
- 재정주체간 재정변동분은 특별교통수단 국비보조율(50%)⁵⁹⁾을 참고하여 국가와 지방이 5:5로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하며, 국회예산정책처 소비자물가상승률, 명목임금상승률 전망치를 적용
- 2023년 7월 19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개정안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 기간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로 함

57) 특별교통수단 도입보조사업: 2021년 48억원(국비 40~50% 지원: 서울시 40%, 기타 시도 50% 지원)

58) 바우처 택시는 평소에는 일반시민이 이용 가능하나 이동지원센터 요청에 따라 교통약자에게 배차하는 택시임

59) 특별교통수단 구매보조 시 국비 50%, 지방비 50%(서울은 40%, 서울외 지방은 50%)

5. 비용추계 상세 내역

가. 추계의 대상 및 방법

- (추가재정소요) 추계 대상은 특별교통수단 추가확보비용과 신규로 설치되는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비용

비용추계 산식

추가재정소요_t = 특별교통수단 추가확보 비용_t¹⁾ +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비_t²⁾
이때, t는 추계기간(2023~2027년)

1) 특별교통수단 추가확보 비용_t = 필요대수_t × 지원단가_t

- 필요대수 = 233대
 - 2021년 기준 법정기준을 미달한 물량에서 2022년 예산상 도입물량을 차감하여 산정(233대=664대-431대)
 - 추계기간 균분(2023~2026년 47대, 2027년 45대)
- 지원단가 = 4,600만원(22년 예산상단가)에 국회예산정책처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 적용

2)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비_t = 센터 필요인원 × 1인당 운영비_t

- 센터 필요인원 = 광역이동센터 평균 인원 24명
- 1인당 운영비_t = 광역이동센터 1인당 평균운영비(연간)는 5,810만원(2022년 기준)
국회예산정책처 명목임금상승률 적용

자료: 국토교통부 및 각 지방자치단체 제출자료

- (재정변동) 개정안에 따라 전액 지방비로 부담되던 사업에 국비가 지원됨에 따라 발생하는 재정변동분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이동지원센터 운영비 및 임차택시 구매보조에 따른 소요비용

재정변동 산식

재정변동_t = 이동지원센터 운영비_t¹⁾ + 임차택시 구매보조비_t²⁾

1) 이동지원센터 운영비_t = [운영비₂₀₂₂ × (1 + δ_t)] + [신규 운전원 수_t × 1인당 인건비_t]

- 운영비₂₀₂₂ = 2022년 기준 3,965억원
- δ_t: 국회예산정책처 명목임금상승률 전망
- 신규 운전원 수: 2022년 474명, 2023년 256명으로 가정(신규 도입이 예상되는 특별교통수단 차량 수에 필요인력 1.10명을 곱하여 추산)

2) 임차택시 구매보조비_t = 임차택시 도입대수_t × 차량 대당 운영비_t

- 임차택시 도입대수_t: 현 수준의 증가세가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매년 61대씩 구비
- 임차택시 운영단가_t: 2021년 기준, 0.5억원(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 적용)

나. 추가재정소요: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1) 특별교통수단 확보

- 개정안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확보를 위해 국가 또는 도의 지원이 의무화됨에 따라, 추계기간인 2027년까지 법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대한 재정소요를 추정
 - 현재 국토교통부는 특별교통수단 도입보조사업⁶⁰⁾을 시행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에 따른 법정대수에 664대가 부족함(2021년 실적 기준)

60) 특별교통수단 도입보조 사업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휠체어 탑승설비등을 장착한 특별교통수단을 도입·운영하는 사업

▷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는 보행상의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50명당 1대를 운행(시행규칙 제5조)

특별교통수단 차량구매비는 국가가 총비용의 50%를 지원(서울 40%, 서울외 지역 50%)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 및 부족분: 2021년 기준

(단위: 대, %)

구분	대상 장애인수	운영대수 (A)	법정대수 (B)	보급률 (B/A×100)	부족대수 (B-A)
전체	698,713	4,074	4,738	86.0	664
서울시	108,655	622	725	85.8	103 (15.5%)
그 밖의 시도	590,058	3,452	4,013	86.0	561 (85.5%)

주: 대상장애인 수는 보행상의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수로 보건복지부 추산결과
자료: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각 년도

- (추계대상) 2021년 기준 특별교통수단은 4,074대가 운영중이며 법정대수 부족분은 전국 기준 664대인데, 2022년 예산상 도입목표 대수(431대)가 모두 도입된다고 가정하면 233대가 추가로 도입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
 - 추가 도입이 필요한 233대가 2023~2026년까지 47대, 2027년 45대 도입되는 것으로 가정
- (지원단가) 추계기간 동안 균분하여 특별교통수단을 도입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2022년 예산상 단가 4,600만원에 국회예산정책처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을 적용
 - 지원 단가는 국비와 지방비가 모두 포함된 것으로 서울의 경우 국비보조율은 40%, 서울 외 지역은 50%
 - 부족분 233대의 서울시와 그 밖의 시도의 배분물량을 알 수 없으므로 전체 부족분 중 서울시 비중(15.5%)을 감안하여 계산함
 - 이상의 가정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를 충족하기 위한 추가재정소요는 다음과 같이 추계됨
 - 2023~2026년까지 47대, 2027년 45대 도입되는 것으로 가정

특별교통수단 도입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3~2027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	2024	2025	2026	2027	합계
필요대수(A, 대)	47	47	47	47	45	233
지원단가(B) (b, 백만원)	46.7	47.4	48.1	48.9	49.6	-
합계(A×B)	2,197	2,230	2,263	2,297	2,232	11,218
국비	1,064	1,080	1,096	1,113	1,081	5,435
지방비	1,132	1,149	1,167	1,184	1,151	5,783

주: 국비보조율은 서울 40%, 서울 외 50%이며, 필요대수에 서울시 비중(15.5%)을 적용

2)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지원

- (추계대상) 충청북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비용은 기설치 된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비용을 참고하여 24명의 직원이 근무할 때 비용을 추산함
 - 기 구축된 광역이동지원센터 평균 비용을 기준으로 운영비를 산정함
- (지원단가) 광역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센터의 평균 근무인원은 24명이며, 1인당 연간 평균 운영비는 5,810만원(2022년 기준)으로 국회예산정책처 명목임금상승률 전망을 적용함
 - 센터당 연간 평균운영비는 13.9억원 수준

광역자치단체 이동지원센터 운영현황: 2022년 기준

(단위: 백만원)

도	운영방식	운영인력 (명)	연간 인건비	연간 운영비	합계	연간 평균운영비 (인당)
경기도	자체운영	6	364	518	882	-
강원도	위탁운영	19	399	900	1,299	68.4
충청남도		21	783	167	950	45.3
전라북도		26	1,090	433	1,523	58.6
전라남도		24	1,136	964	2,100	87.5
경상북도		23	902	98	1,000	43.5
경상남도		31	1,216	277	1,493	48.2
합계		144	5,526	2,439	8,365	58.1

주: 경기도는 자체 운영으로 평균비용 산정대상에서 제외함

자료: 지방자치단체 제출자료(2022년 상반기)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가 집계한 것으로 조사시점에 따라 운영현황은 달라질 수 있음

- 운영비는 국회예산정책처 명목임금상승률 전망치를 적용하며, 국비와 지방비의 분담비율이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5:5로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함
 - 현재 이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비용은 전액 지방비로 지원되고 있음

- 이상의 가정에 따라 광역이동지원센터 1개소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추가재정 소요는 다음과 같이 추계됨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3~2027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	2024	2025	2026	2027	합계
인원(a, 명)		24	24	24	24	24	-
운영비단가(인당) (b, 백만원)		60	62	64	65	67	-
합계 (a×b)		1,440	1,485	1,528	1,571	1,618	7,642
	국비	720	742	764	785	809	3,821
	지방비	720	742	764	785	809	3,821

다. 개정안에 따른 재정변동: 이동지원센터 국가 지원 등

1) 이동지원센터 국가 지원

- 개정안에 따라 이동지원센터 운영비를 국가가 지원하는 경우, 지방비 부담이 감소하고 국비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재정주체간 부담 변동분은 다음과 같이 추계할 수 있음
- 2022년 기준 전국 이동지원센터의 운영비는 3,965억원⁶¹⁾ 수준으로 나타나며, 운영비는 운전원 인건비, 콜센터 직원 인건비 등 인건비성 경비가 포함되어 있어 국회예산정책처 명목임금상승률 전망치를 적용함
 - 다만, 향후 이동지원센터에 특별교통수단이 추가로 배치됨에 따라 운전원 인건비 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해당 소요액을 고려하여 추산함
- 시군구별 이동지원센터의 차량구매계획 등을 알 수 없으므로 2023년까지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를 충족하는 것으로 가정할 때 필요한 운전원 인건비를 추산함
 - 2020년 기준 전국 시군구 이동지원센터에 배치된 특별교통수단 대당 운전원 수는 평균 1.10명으로 도입되는 차량 수에 이를 곱하여 추정
 -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 충족 시⁶²⁾ 이동지원센터에 추가로 필요한 운전원은 2022년 474명⁶³⁾, 2023년 256명⁶⁴⁾ 등 총 728명으로 나타남
 - 운전원 증가에 따른 운영비 증가액은 별도로 추산하기 곤란하므로 추계에서는 고려하지 않음
- (지원단가) 인건비는 2022년 기준 평균 3,800만원이며, 국회예산정책처 명목임금상승률 전망치를 적용하여 전망함

61) 전국 지방자치단체 이동지원센터가 제출한 자료를 국회예산정책처가 취합한 결과

62) 2021년 기준 특별교통수단은 4,074대이며 법정대수 부족분은 전국 기준 664대인데, 2022년 예산상 도입목표 대수(431대)가 모두 도입된다고 가정하면 233대가 추가로 도입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

63) 2022년 예산상 도입예정인 431대가 모두 도입되는 경우 필요한 운전원 수는 474명(=431대×1.10대)

64) 2023년 233대가 도입되는 경우 필요한 운전원 수는 256명(=233대×1.10대)

이동지원센터 운영비 재정변동: 2023~2027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3	2024	2025	2026	2027	합계
이동지원센터 운영비(a) ¹⁾	409,544	422,240	434,485	446,651	460,050	2,172,970
신규 운전원 인건비 증가액(b)	28,655	29,544	30,401	31,252	32,189	152,041
이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비(a+b)	438,200	451,784	464,886	477,902	492,239	2,325,011
국비	219,100	225,892	232,443	238,951	246,120	1,162,505
지방비	219,100	225,892	232,443	238,951	246,120	1,162,505

주 1) 기 설치된 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비를 의미함

1.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던 비용을 국가가 보조함에 따라 지방은 50% 수준만 부담하게 되므로, 지방비는 추가재정소요가 아니라 변화된 재정부담 결과이며, 국비는 추가재정소요임

2)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임차택시) 확보 지원

- 개정안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인 임차택시 도입 및 운영에 따라 국가가 자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지방비 부담이 감소하고 국비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재정주체간 부담 변동분은 다음과 같이 추계할 수 있음

- 임차택시는 2021년 기준 471대가 운행중이며 최근 4년간 평균 61대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향후 이 수준이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함

임차택시 도입대수: 2018~2021년

(단위: 대수)

	2018	2019	2020	2021	평균
임차택시 수	289	382	436	471	-
전년대비 증가대수	-	93	54	35	61

자료: 국토교통부,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각 연도

- 임차택시 단가는 서울시 사례를 참고하여, 연 5,000만원에 국회예산정책처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적용하여 산출
 -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임차택시는 2021년도 기준 80대로서, 운영예산은 40억원
 - 임차택시 운영비 단가는 연 5,000만원(=40억원÷80대, 2021년 기준)

임차택시 지원에 따른 재정변동: 2023~2027년

(단위: 백만원)

	2023	2024	2025	2026	2027	합계
임차택시 현행 수준(a,대)	593	654	715	776	837	-
임차택시 운영비 단가 (b,백만원)	52.8	53.6	54.4	55.2	56.1	-
재정변동 합계	31,329	35,070	38,917	42,870	46,934	195,121
국비	15,665	17,535	19,458	21,435	23,467	97,560
지방비	15,665	17,535	19,458	21,435	23,467	97,560

- 주 1. 2021~2022년 물량은 최근 3년간 평균 증가대수(61대)만큼 구비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산
 2.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던 비용을 국가가 보조함에 따라 지방은 50% 수준만 부담하게 되므로, 지방비는 추가재정소요가 아니라 변화된 재정부담 결과이며, 국비는 추가재정소요임

V

국방·보훈·보상·법제사법 분야

1

합정에 대한 감항인증제도 도입(수수료 수입 수반): 「합정의 운항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안」

1. 주요내용

- 합정의 운항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항인증제도 도입

2. 비용추계 결과

- 합정에 대한 감항인증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연평균 11억 8,900만원의 재정 지출 추가재정소요 예상
 - 참고로 수수료 수입에 따라 연평균 4,500만원의 재정수입 증가 예상('6. 참고사항' 참조)

제정안에 따른 비용추계 결과

(단위: 백만원)

구분	2024	2025	2026	2027	2028	합계	연평균
표준감항인증기준	333	108	110	112	114	777	155
감항인증 부서	996	994	1,023	1,054	1,086	5,153	1,031
감항인증심의위원회	3	3	3	3	3	15	3
합계	1,332	1,105	1,136	1,169	1,203	5,945	1,189

3. 재정수반요인

- 표준감항인증기준의 수립·고시
 - 합정 사업 계획의 수립 및 사업추진 단계별 합정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장이 표준감항인증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 감항인증

- 방위사업청장으로 하여금 사업관리기관의 함정사업이 감항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심사를 거쳐 감항인증을 하도록 함

■ 감항인증심의위원회의 설치

- 감항인증 및 주요정책과 감항인증 심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감항인증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함

4. 비용추계의 전제

■ 표준감항인증기준은 북대서양조약기구가 채택·공포한 수상함 및 잠수함 기준을 국내에 도입하여 수립하는 것으로 가정함

- 북대서양조약기구 수상함 및 잠수함 기준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국제함정안전협회에 가입하여야 하며, 가입 시 가입비, 연회비, NATO 수상함 및 잠수함 기준 사용료 및 연례회의 참석비가 발생한다고 가정함
- 2024년 표준감항인증기준의 제정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고 2025년 이후에는 표준감항인증기준의 개정에 따른 비용이 각각 발생한다고 가정함

■ 본 추계에서는 감항인증 부서의 신설, 감항인증심의위원회의 설치 등은 유사 사례인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사업을 참고하여 추계함

■ 추계기간 동안 소비자물가상승률 및 명목임금상승률은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한 중기경제전망(2021.9.)을 적용하고, 인건비 기관부담금의 효율은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한 공무원·민간 인건비 기관부담금 효율을 적용함

■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제정안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으로 함

5. 비용추계 상세 내역

가. 추계의 대상 및 방법

- 추가재정소요의 추계대상은 ① 표준감항인증기준의 수립, ② 감항인증, ③ 감항인증심의위원회의 설치 등에 소요되는 비용임

비용추계 산식

$$\text{추가재정소요}_t = \text{표준감항인증기준의 수립·고시}_t^{1)} + \text{감항인증 부서 신설}_t^{2)} \\ + \text{감항인증심의위원회 설치}_t^{3)}$$

이때, t 는 추계기간(2024~2028년)

- 1) 표준감항인증기준의 수립·고시 $_t$ = 납부금 및 연례회의 참석비 $_t^{a)}$
+ 표준감항기준 수립 용역비 $_t^{b)}$
 - a) 납부금 및 연례회의 참석비 $_t$ = 납부금(€ 15,250) + 연례회의 참석비(12,000천원)
※ 환율은 1€당 1,340원 적용. 다만, 납부금 중 가입비(€3,000)는 가입 첫해인 2024년만 발생함
 - b) 표준감항인증기준 수립 용역비 $_t$ = 표준감항인증기준 제정 용역비 $_{t=2024}$ +
표준감항인증기준 개정 용역비 $_{t=2025 \sim 2028}$
- 2) 감항인증 부서 신설 $_t$ = 인건비 $_t^{a)}$ + 운영비 $_t^{b)}$ + 자산취득비 $_{2024}^{c)}$
 - a) 인건비 $_t$ = 보수 $_t$ + 기관부담금 $_t$
이때, 보수는 유사사례인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부서의 평균 연 급여액에 국회예산정책처 중기경제전망(2021.9.)에 따른 명목임금상승률을 적용하고, 기관부담금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2020.11.26.) 공무원 인건비 기관부담금 요율을 적용함
 - b) 운영비 $_t$ = 인건비 $_t \times \alpha$
이때, α 는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부서의 인건비 대비 운영비 비율(2021년도 기준 55.6%)
 - c) 자산취득비 $_{t=2024}$ = PC·사무집기 등 구입비
- PC·사무집기 등 구입비 $_{t=2024}$: 1인당 4,446,454원 (2024년 첫해에 소요)
※ 1인당 자산취득비 4,197,924원(2020년 정부 기준)에 국회예산정책처 중기경제전망(2021.9.)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함
- 3) 감항인증심의위원회 설치 = 민간위원(4명) × 회의횟수(3회) × 회의수당(25만원)

나. 표준감항인증기준의 수립·고시

- 방위사업청은 함정의 운항안전성의 확보를 위한 표준감항인증기준으로 북대서양 조약기구가 채택·공포한 수상함 및 잠수함 기준(이하 “NATO 수상함 및 잠수함 기준”이라 함)을 도입할 예정
 - 동 기준은 국제함정안전협회 (INSA, International Naval Safety Association)⁶⁵⁾에서 함정 감항인증 기준을 개발하면, NATO가 채택하고 공포함
 - 동 기준은 7개 기술분야로 구성된 ‘NATO 수상함 기준 (Naval Ship Code)’과 11개 기술분야로 구성된 ‘NATO 잠수함 기준 (Naval Submarine Code)’으로 구성됨
- NATO 수상함 및 잠수함 기준 도입을 통한 표준감항인증기준의 수립·고시를 위해서는 국제함정안전협회 가입에 따른 비용, 연례회의 참석비, 표준감항인증기준 제·개정을 위한 NATO 수상함 및 잠수함 기준 번역 및 국내 영향성 검토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국제함정안전협회 가입 시 가입비, 연회비, NATO 수상함 및 잠수함 기준 사용료(이하 “납부금”이라 함) 및 연례회의 참석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
 - 2024년 표준감항인증기준의 제정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고 2025년 이후에는 표준감항인증기준의 개정에 따른 비용이 각각 발생할 것으로 예상

1) 납부금 및 연례회의 참석비

- NATO 수상함 및 잠수함 기준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국제함정안전협회의 가입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납부금과 연례회의 참석비 추가재정소요 발생

65) NATO를 지원하기 위하여 영국, 독일 등 13개국 해군과 DNV(노르웨이 선급협회) 등 7개 선급협회가 참여하여 수상함 및 잠수함 기준을 제정하고 매년 연례회의를 통하여 개정사항 검토를 수행하는 기관임

NATO 수상함 및 잠수함 도입비용: 2024년

(단위: 천원)

	비용	산 출 내 역
가입비	4,020	- € 3,000(최초 가입시만 납부)
연회비	4,690	- € 3,500 / 매년
수상함 기준(Naval Ship Code) 사용료	4,020	- € 3,000 / 매년
잠수함 기준(Naval Submarine Code) 사용료	7,705	- € 5,750 / 매년
연례회의 참석경비	12,000	- 3명×4백만원(3박 5일 기준)×1회
합 계	32,435	

주: 환율은 1€ 당 1,340원을 기준으로 산출

자료: 방위사업청 제출자료

2) 표준감항인증기준 제정 시 용역비

-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표준감항인증기준의 제정을 위해서는 도입비용(가입비, 연회비, 사용료) 외 'NATO 수상함 및 잠수함 기준'의 번역 및 국내 적용 영향성 검토를 위한 용역비가 별도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
 - 투입인력: 책임연구원 및 연구원 14명(7개 분야 책임연구원 및 연구원 각각 1명)
 - 연구기간: 10개월, 참여율: 50%
 - 인건비: 책임연구원 3,327,026원/월, 연구원 2,551,119원/월(2022년 기준)
- 'NATO 수상함 및 잠수함 기준' 번역 및 국내 적용 영향성 검토를 위한 용역비는 2024년 기준 300,722천원으로 추계

표준감항인증기준 제정 시 용역비: 2024년

(단위: 천원)

			용역비	산출내역
용역 원가	인건비	책임연구원	124,499	－ 7명×3,557,106원×10개월×50%
		연구원	95,464	－ 7명×2,727,542원×10개월×50%
	경비	여비	10,400	－ 국내출장: 40,000원×6명×10회 － 국외출장: 4백만원(3박5일 기준)×2명×1회
		유인물비	1,600	－ 최종보고서 발간비: 25,000원×50부 － A4용지, 토너 등: 350,000원
		회의비	2,500	－ 월간회의: 50,000원×6회 － 전문가토의: 100,000원×2회 － 세미나/워크숍: 700,000원×2회 － 착수/최종보고: 200,000원×3회
	소계		234,463	
	일반관리비		14,068	－ 순용역원가의 6% 이내
이윤		24,853	－ 순용역원가 및 일반관리비의 10% 이내	
부가가치세		27,338	－ 영리단체인 경우 10%	
합계		300,722		

주 1. 책임연구원 및 연구원의 인건비는 2022년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책임연구원 3,327,026원, 연구원 2,551,119원)에 국회예산정책처 중기경제전망(2021.9.) 명목임금상승률을 적용함

2. 일반관리비 6%, 이윤 10%, 부가가치세 10%를 각각 적용하여 산출함

자료: 방위사업청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3) 표준감항인증기준 개정 시 소요비용

- 표준감항인증기준의 제정 후에는 매년 'NATO 수상함 및 잠수함 기준'의 개정 사항을 조사하여, 개정사항의 번역 및 국내 적용 영향성 검토를 위한 용역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

- 투입인력: SWBS 기준으로 책임연구원 7명 (7개 분야 책임연구원 각 1명)
- 연구기간: 4개월, 참여율: 50%
- 인건비: 책임연구원 3,327,026원/월 (2022년 기준)

- 'NATO 수상함 및 잠수함 기준'의 개정사항 번역 및 국내 적용 영향성 검토를 위한 용역비는 2025년 기준 79,833천원으로 추계

표준감항인증기준 개정 시 용역비: 2025년

(단위: 천원)

			용역비	산 출 내 역
용역 원가	인건비	책임연구원	51,343	－ 7명×3,667,377원×4개월×50%
	경 비	여 비	10,400	－ 국내출장 : 40,000원×6명×10회 － 국외출장 : 4백만원(3박5일 기준)×2명×1회
		유인물비	1,600	－ 최종보고서 발간비 : 25,000원×50부 － A4용지, 토너 등 : 350,000원
		회의비	2,500	－ 월간회의 : 50,000원×6회 － 전문가토의 : 100,000원×2회 － 세미나/워크숍 : 700,000원×2회 － 착수/최종보고 : 200,000원×3회
	소 계		62,243	
일반관리비			3,735	－ 순용역원가의 6% 이내
이 윤			6,598	－ 순용역원가 및 일반관리비의 10% 이내
부가가치세			7,258	－ 영리단체인 경우 10%
합 계			79,833	

주 1. 책임연구원 및 연구원의 인건비는 2022년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책임연구원 3,327,026원, 연구원 2,551,119원)에 국회예산정책처 중기경제전망(2021.9.) 명목임금상승률을 적용함

2. 일반관리비 6%, 이윤 10%, 부가가치세 10%를 각각 적용하여 산출함

자료: 방위사업청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2025년 기준 표준감항인증기준 개정 시 소요비용 중 인건비에 대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중기경제전망(2021.9.)에 따른 명목임금상승률을 적용하여 표준감항인증기준 재정 시 소요비용을 추정

표준감항인증기준 개정 시 용역비 추계: 2025~2028년

(단위: 천원)

		2025	2026	2027	2028
용역	인건비	51,343	52,832	54,312	55,941
원가	경 비	10,900	10,900	10,900	10,900
일반관리비 등		17,590	18,011	18,429	18,889
합계		79,833	81,743	83,640	85,730

주 1. 책임연구원 및 연구원의 인건비는 2022년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책임연구원 3,327,026원, 연구원 2,551,119원)에 국회예산정책처 중기경제전망(2021.9.) 명목임금상승률을 적용함
 2. 경비는 추계기간 동안 동일하다고 가정하며, 일반관리비 등은 인건비의 변동액을 반영함
 자료: 방위사업청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4) 추계결과

-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추계기간 동안 표준감항인증기준의 수립·고시의 추가 재정소요는 다음 표와 같이 추정

표준감항인증기준 수립·고시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4~2028년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2027	2028	합계
표준감항 인증기준 수립·고시	납부금 및 참석비	32	28	28	28	28	144
	인증기준 제정	301	-	-	-	-	301
	인증기준 개정	-	80	82	84	86	332
합 계		333	108	110	112	114	777

주: 납부금 중 가입비 4,020천원은 국제함정안전협회 가입 첫해인 2024년에만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
 자료: 방위사업청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다. 감항인증 부서 신설

- 제정안은 방위사업청장으로 하여금 사업관리기관의 함정사업이 감항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심사를 거쳐 감항인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함정의 감항인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부서의 신설에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
 - 본 추계에서 신설 부서의 업무공간은 방위사업청의 유희공간을 활용하는 것으로 보고 별도의 임차료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 본 추계에서는 부서 신설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 자산취득비를 추계의 대상으로 가정
- 제정안에 따른 함정 감항인증 업무의 유사 사업인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직급별 정원은 과장급 1명, 4·5급(중령·소령) 6명, 6급 이하(대위 이하) 4명
 -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동 부서의 2021년 기준 평균 연 급여액은 약 7,100만원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부서 직급별 정원

(단위: 명)

	과장	4·5급 (중령·소령)	6급 이하 (대위 이하)	소 계
정 원	1	6	4	11

자료: 방위사업청의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제정안의 취지와 방위사업청의 의견을 참고하여, 함정에 대한 감항인증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직급별 정원을 추정하면 다음 표와 같음

함정 감항인증 부서 직급별 정원 추계

(단위: 명)

	과장	4·5급 (중령·소령)	6급 이하 (대위 이하)	소 계
정 원	1	4	2	7

자료: 방위사업청의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1) 인건비(보수, 기관부담금)

- 함정 감항인증 부서의 인건비는 유사 조직인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부서의 평균 급여액과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공무원 인건비 기관부담금의 요율을 적용하여 추계
 -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부서 1인당 평균 연 급여액 7,100만원(2021년 기준)을 적용
 - 기관부담금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2020.11.26.)에 따른 연도별 공무원 인건비 기관부담금의 요율을 적용

함정 감항인증 부서의 보수 및 기관부담금 추계: 2024~2028년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2027	2028
보수	1인 평균 연 급여	78	81	83	85	88
	인원	7	7	7	7	7
	소계	548	564	580	597	615
기관부담금		72	75	78	80	83
합계		620	639	658	677	698

자료: 방위사업청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 운영비(기본경비, 사업비)

- 함정 감항인증 부서의 운영비는 유사조직인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부서의 2022년도 인건비 대비 운영비 비율(55.6%) 적용하여 추계
 - 운영비는 사무용품비, 임차료, 여비, 시험연구비, 용역비 등으로서,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부서의 인건비 대비 운영비 비중⁶⁶⁾을 참고

66) 방위사업청이 제출한 자료(2022년도 예산 기준)에 따르면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부서의 인건비는 7.80억원이며, 운영비는 인건비의 55.6%인 4.34억원임

함정 감항인증 부서의 운영비 추계: 2024~2028년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2027	2028
운영비 (인건비×55.6%)	345	355	366	377	388

자료: 방위사업청의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3) 자산취득비

- 함정 감항인증 부서 인원 7명에 대한 PC·사무집기 등 자산취득비는 추계 첫 해인 2024년에만 발생하며 국회예산정책처의 「법안 비용추계에 이용되는 단가 및 기준정보에 관한 연구」에서 조사된 단가에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한 후 함정 감항인증 부서 정원을 곱하여 추정
 - 국회예산정책처의 「법안 비용추계에 이용되는 단가 및 기준정보에 관한 연구」에서 조사된 4,197,924원(2020년 정부 기준)에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하면 2024년 기준 자산취득비의 1인당 단가는 4,446,454원

함정 감항인증 부서 자산취득비 추계: 2024~2028년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2027	2028
인원	7	7	7	7	7
1인당 단가	4.4	-	-	-	-
자산취득비	31	-	-	-	-

4) 추계결과

-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추계기간 동안 감항인증 부서 신설에 따른 추가재정 소요는 다음 표와 같이 추정됨

감항인증 부서 신설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4~2028년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2027	2028	합계
감항 인증 등	안건비	620	639	658	677	698	3,292
	운영비	345	355	366	377	388	1,831
	자산취득비	31	-	-	-	-	31
합 계		996	994	1,023	1,054	1,086	5,153

자료: 방위사업청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라. 감항인증심의위원회 설치

- 제정안은 감항인증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민간위원에 대한 회의참석수당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
 - 본 추계에서는 유사사례인 군용항공기 감항인증심의위원회의 위원 13명 중 민간위원이 4명이라는 점을 참고하여 합정 감항인증위원회의 민간위원도 4명으로 가정
 - 본 추계에서는 감항인증심의위원회 민간위원의 회의 참석수당으로 1인당 25만원⁶⁷⁾씩 지급하는 것으로 하며 회의를 연 3회 개최하는 것으로 가정

감항인증심의위원회 설치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4~2028년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2027	2028	합계
민간위원 수당 (감항인증심의위원회)	3	3	3	3	3	15

67) 기획재정부의 「20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위원회 참석비는 법령 등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1일당 150,000원을 지급하되, 참석시간이 2시간 이상 일 경우에는 1일 1회에 한하여 50,000원을 추가 지급할 수 있으며, 원격지에서 참석하는 경우에는 교통비·식비·숙박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 또는 일반수용비로 추가 지급할 수 있음

6. 참고사항: 수수료 수입

■ 제정안은 방위사업청장으로 하여금 함정에 대한 감항인증 또는 감항인증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에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수수료의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본 추계에서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⁶⁸⁾에 따른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수수료 규정을 참고하여, 함정 판매가격에 1만분의 1을 곱하여 계산된 금액과 감항인증 활동 여비를 부과하는 것으로 가정
- 본 추계에서는 방위사업청의 의견을 참고하여, 매년 호위함(약 3,000억원) 1척이 수출되는 것으로 보고, 함정 감항인증 부서의 직원 15명이 5회(1회당 출장비 단가 20만원) 감항인증을 위한 출장을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

■ 수수료 수입 산식은 다음과 같음

- 수수료 수입 = 수수료 수입(30,000천원) + 경비 수입(15,000천원)
 - 수수료 수입은 매년 호위함(3,000억원) 1척이 수출된다고 가정하고 유사례인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수수료의 요율(1만분의 1)을 적용하여 산출
 - 경비 수입은 감항인증 전문기관의 직원 15명이 매년 5회 감항인증 업무수행 출장을 실시한다고 가정

68) 「군용항공기 감항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수수료)

①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6조에 따라 감항인증 또는 감항인증서 발급(제5조제2항에 따른 추가발급은 제외한다)을 신청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수수료로 부과할 수 있다.

1. 개별 군용항공기별 판매가격에 1만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산정한 감항인증 활동에 직접 필요한 여비

② 방위사업청장은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수수료 수입: 2024~2028년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2027	2028
수수료	판매가액	300,000	300,000	300,000	300,000	300,000
	요율	0.0001	0.0001	0.0001	0.0001	0.0001
	소 계	30	30	30	30	30
여 비	출장인원	15	15	15	15	15
	출장비 단가	0.2	0.2	0.2	0.2	0.2
	출장횟수	5	5	5	5	5
	소 계	15	15	15	15	15
합 계		45	45	45	45	45

자료: 방위사업청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 추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주요내용

-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에 33년 이상 재직하고 사망한 경찰공무원 및 소방공무원 추가

2. 비용추계 결과

-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을 추가하는 경우 연평균 17억 270만원의 추가재정소요 예상

개정안에 따른 비용추계 결과

(단위: 백만원)

구분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합계	연평균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 추가	59	63	68	72	77	673	7,908	7,911	95	101	17,027	1,703

주: 본 추계는 2031년 국립호국원의 봉안시설 10,000기 확충을 전제로 추계한 것으로, 공사기간 변경, 토지매입 비 반영 등 국립호국원 봉안시설 확충 공사의 내용이 변경되면 추계금액은 달라질 수 있을 것임

3. 재정수반요인

- 국립호국원의 안장 대상에 33년 이상 재직하고 사망한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 추가
 - 개정안은 국립호국원의 안장대상에 33년 이상 재직하고 사망한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 (이하 “장기재직 경찰공무원등”이라 함)을 추가하려는 내용으로, 국립호국원 안장비용과 봉안시설 확충 비용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

4. 비용추계의 전제

- 국립호국원의 안장비용의 산출에 필요한 장기재직 경찰공무원등의 사망 인원은 공무원연금공단의 퇴직연금 수급 인원과 경찰청·소방청의 최근 5년(2017~2021년) 퇴직 인원(통계청이 2022년 5월에 공표한 장래 성별 및 연령별 사망률(남성)을 적용하여 추정
 - 기존 퇴직자의 경우 공무원연금공단의 퇴직연금 수급 인원과 퇴직연금일시금 수령 인원을 합산한 인원(사망률)을 적용하여 추정
 - 퇴직연금 수급 인원은 2021년 12월 기준 공무원연금공단의 자료에 따른 인원을 적용하고, 퇴직연금일시금 수령 인원은 최근 5년간 퇴직급여 청구 시, 연금 대비 일시금 청구 비율을 적용하여 추정
 - 퇴직 경찰공무원등의 사망률은 최근 5년(2017~2021년) 퇴직연금 수급자의 평균 연령(50대 58세, 60대 64세, 70대 74세, 80세 이상 83세)을 기준으로 적용하여 산출
 - 퇴직예정자의 경우 최근 5년(2017~2021년) 경찰청과 소방청의 평균퇴직인원 및 연령(경찰 59세, 소방 60세)이 추계기간 동안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사망률을 적용하여 추정
 - 경찰공무원등의 사망 인원은 최근 5년간 퇴직자 중 여성의 비율이 미미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남성의 사망률을 적용하여 추정
- 개정안에 따른 장기재직 경찰공무원등의 국립호국원 안장률은 2021년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안장률 72.67%를 적용
- 국립호국원의 확충 비용은 토지매입은 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2022년 착공한 국립이천호국원의 봉안시설 확충 공사비 단가를 참고하여 추정
 - 본 추계에서는 개정안에 따른 경찰공무원등의 안장수요를 고려하여, 2031년에 국립호국원 봉안시설 10,000기를 확충하는 것으로 가정
 - 본 추계에서 국립호국원 봉안시설 확충 공사비 단가는 국립이천호국원 공사비 단가(1기당 989,520원)에 건설공사비지수 연평균상승률(4.65%)을 적용

- 법 공포 후 개정안 부칙에서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개정안 부칙과 국회 심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4년부터 2033년까지 10년으로 함

5. 비용추계 상세 내역

가. 추계의 대상 및 방법

- 추계 대상은 개정안에 따른 장기재직 경찰공무원등의 안장비용과 국립호국원 확충 비용
- 추가재정소요는 경찰공무원등의 안장비용과 국립호국원 확충 비용을 합산하여 산출

비용추계 산식

$$\text{추가재정소요}_t = \text{장기재직 경찰공무원등의 안장비용}_t^{1)} + \text{국립호국원 확충 비용}_t^{2)}$$

이때, t 는 추계기간(2024~2033년)

$$1) \text{ 장기재직 경찰공무원등의 안장비용}_t = \text{장기재직 경찰공무원등의 사망 인원}_t^{a)} \times \text{1기당 안장비용}_t^{b)}$$

$$a) \text{ 장기재직 경찰공무원등의 사망 인원}_t = \text{기존 퇴직자 중 사망 인원}_t^{\dagger} + \text{퇴직 예정자 중 사망 인원}_t^{\ddagger}$$

$$^{\dagger} \text{ 기존 퇴직자 중 사망 인원}_t = \sum_{i=1}^4 (\text{기존 퇴직자 연령별 인원}_{it} \times \text{연령별 사망률}_{it})$$

- 기존 퇴직자 연령별 인원 $_{it}$: $i=1$ 은 50대, $i=2$ 는 60대, $i=3$ 은 70대, $i=4$ 는 80대 이상
- 연령별 사망률 $_{it}$: 2022년 5월 공표 통계청 장래 성 및 연령별 사망률(남성)

$$^{\ddagger} \text{ 퇴직 예정자 중 사망 인원}_t = \sum_{j=1}^2 (\text{퇴직 예정자 인원}_{jt} \times \text{연령별 사망률}_{jt})$$

- 퇴직 예정자 인원 $_{jt}$: $j=1$ 은 경찰공무원 퇴직 예정자 인원, $j=2$ 는 소방공무원 퇴직 예정자 인원
- 연령별 사망률 $_{jt}$: 평균퇴직연령(경찰공무원 59세, 소방공무원 60세) 기준 중위 남성 사망률

$$b) \text{ 1기당 안장비용}_t = \text{1기당 안장비용}_{(t-1)} \times (1 + \alpha_t)$$

- 1기당 안장비용: 108,000원(2021년 기준)

· α :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

2) 국립호국원 확충 비용_t = 공사비_t^{a)} + 부대경비_t^{b)}

a) 공사비_t = 국립호국원 확충 기수(10,000기) × 봉안시설 1기당 공사비 단가[†] × 연부액 비율(50%)

[†] 봉안시설 1기당 면적당 공사단가 = 1,423,438원

* 공사비는 2년간(2030~2031년) 발생하며, 연부액 비율은 각 연도별 50%임

b) 부대경비_t = 설계비_t + 감리비_t + 시설부대비_t

* 설계비는 2029년,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는 2031년에 발생한다고 가정함

* 기획재정부 「2022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의 건축부문 요율 중 제2종(보통) 중급 적용

나.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에 33년 이상 재직 경찰·소방공무원 추가

■ 국립호국원의 안장 대상에 장기재직 경찰공무원등을 추가 규정에 따라 국립호국원 안장비용과 국립호국원 봉안시설 확충비용의 추가재정소요가 예상

- 국립호국원의 안장 대상자를 확대하는 경우, 안장비용 외에도 국립호국원의 조성·확장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2022년 기준 국립호국원의 잔여기수는 총 23,246기이나, 국가보훈처는 2024년까지 128,000기, 2028년까지 20,000기(강원)를 확충할 계획

국립호국원 안장 현황: 2022.6.30. 기준

(단위: 기)

		국립호국원						합계
		영천	임실	이천	산청	괴산	제주	
안장 현황	안장능력	52,530	35,568	50,002	10,008	20,356	10,000	178,464
	안장기수	49,317	31,846	50,002	8,178	15,042	833	155,218
	잔여기수	3,213	3,722	-	1,830	5,314	9,167	23,246
확충 계획	사업기간	'21~'24년	'21~'24년	'21~'24년	'21~'24년	'21~'24년	-	-
	확충기수	25,000	20,000	50,000	10,000	23,000	-	128,000

자료: 국가보훈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다만, 국가보훈처의 「국립묘지 종합 발전방안 수립 연구」 용역 결과보고서(2021.12.)에 따르면, 2033년 이후 국립호국원의 잔여기수가 부족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개정안에 따른 경찰공무원등의 안장수요를 고려하여, 2031년에 국립호국원 봉안시설 10,000기를 확충하는 것으로 가정

■ 국립호국원의 1기당 안장비용은 108,000원

국립호국원 1기당 안장비용: 2022년

안장비용	상세내역
108,000원	○ 1기당 108,000원 - 유골함 47,000원, 봉안명패(1인용) 51,000원 - 안치단 설치비 10,000원

자료: 국가보훈처 제출자료

1) 기존 퇴직자 안장비용

- 공무원연금공단에 따르면, 2021년 12월 기준 장기재직 경찰공무원등의 퇴직연금 수급 인원은 경찰공무원 31,675명, 소방공무원 4,529명 등 36,204명
 - 퇴직연금 수급자 중 남성비율은 99.26%이고, 여성비율은 0.74%
 - 퇴직연금 수급자 중 여성비율이 0.74%로 미미하므로, 본 추계에서는 추계기간 동안 국립호국원 안장인원 추정 시 성별 구분 없이 남성 사망률을 적용하는 것으로 가정

장기재직 경찰공무원등의 퇴직연금 수급자(경찰소방) 인원: 2021.12.31. 기준

(단위: 명)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합 계		
	남성	여성	소계	남성	여성	소계	남성	여성	소계
50대	893	19	912	121	4	125	1,014	23	1,037
60대	20,380	188	20,568	3,590	28	3,618	23,970	216	24,186
70대	6,985	20	7,005	672	-	672	7,657	20	7,677
80세 이상	3,180	10	3,190	114	-	114	3,294	10	3,304
합 계	31,438 (99.25%)	237 (0.75%)	31,675 (100%)	4,497 (99.29%)	32 (0.71%)	4,529 (100%)	35,935 (99.26%)	269 (0.74%)	36,204 (100%)

자료: 공무원연금공단

- 최근 5년(2017~2021년)간 장기재직 경찰공무원등의 퇴직급여 청구 현황은 경찰공무원의 연금 청구비율은 98.95%, 일시금 청구비율은 1.05%, 소방공무원의 연금 청구비율은 98.97%, 일시금 청구비율은 1.03%임

퇴직 경찰공무원등의 퇴직급여 청구 현황: 2017~2021년

(단위: 명)

		2017	2018	2019	2020	2021	합 계	비율
경찰공무원	연금	2,143	1,814	1,592	1,930	1,645	9,124	98.95%
	일시금	18	10	23	19	27	97	1.05%
	소 계	2,161	1,824	1,615	1,949	1,672	9,221	-
소방공무원	연금	350	389	423	478	379	2,019	98.97%
	일시금	1	3	2	7	8	21	1.03%
	소 계	351	392	425	485	387	2,040	-

자료: 공무원연금공단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퇴직연금 수급자 인원에 퇴직급여 청구비율을 적용하여 현재 생존 중인 장기재직 퇴직 경찰공무원등의 인원을 추정하면 경찰공무원의 경우 일시금 청구비율(1.05%) 적용 시 퇴직연금 일시금 수령자는 333명으로, 소방공무원의 경우 일시금 청구비율(1.03%) 적용 시 퇴직연금 일시금 수령자는 46명으로 추정됨

퇴직 경찰공무원등의 생존 인원 추정: 2021.12.31. 기준

(단위: 명)

	퇴직 경찰공무원등의 생존 인원			합 계
	연령	퇴직연금	퇴직연금 일시금	
경찰공무원	50대	912	10	922
	60대	20,568	216	20,784
	70대	7,005	74	7,079
	80대 이상	3,190	33	3,223
	소 계	31,675	333	32,008
소방공무원	50대	125	1	126
	60대	3618	37	3,655
	70대	672	7	679
	80대 이상	114	1	115
	소 계	4,529	46	4,575
합 계		36,204	379	36,583

자료: 공무원연금공단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2021년 기준 퇴직 경찰공무원등의 생존 인원 추정 36,583명에 통계청이 2022년 5월에 공표한 장래 성 및 연령별 사망률(남성)을 적용하여 추계기간 동안 퇴직 경찰공무원등의 사망 인원을 추정하면 다음과 같음

퇴직 경찰공무원등의 생존 및 사망 인원 추정: 2022~2033년

(단위: 명)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생존 인원	50대	1,042	1,037	1,031	1,024	1,018	1,011	1,003	996	987	979	970	961
	60대	24,220	23,991	23,753	23,505	23,246	22,975	22,686	22,378	22,050	21,699	21,323	20,910
	70대	7,584	7,394	7,187	6,960	6,713	6,443	6,148	5,830	5,489	5,129	4,755	4,366
	80대 이상	3,085	2,826	2,564	2,299	2,036	1,778	1,528	1,291	1,069	866	685	528
	소 계	35,931	35,248	34,534	33,788	33,012	32,206	31,366	30,495	29,595	28,673	27,733	26,765
사망 인원		652	683	714	746	776	806	840	872	899	922	940	969

주: 경찰공무원등의 퇴직연금 수급자의 구간별 평균연령(2021년 기준 50대는 58세, 60대는 64세, 70대는 74세, 80세 이상은 83세)의 사망률에 코호트(cohort) 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함

자료: 공무원연금공단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퇴직 경찰공무원등의 사망 추정 인원예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2021년 국립호국원 안장률 72.67%를 적용하여, 국립호국원 안장 인원을 추정
 - 최근 5년간 국립현충원 안장률이 78.6%인 점을 고려하여 추계기간 동안 국립호국원의 안장률은 2021년과 동일한 72.67%⁶⁹⁾로 가정

퇴직 경찰공무원등의 국립호국원 안장 인원 추계: 2024~2033년

(단위: 명)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사망인원 (A)	714	746	776	806	840	872	899	922	940	969
안장률 (B)	72.67%	72.67%	72.67%	72.67%	72.67%	72.67%	72.67%	72.67%	72.67%	72.67%
안장 인원 (C=A×B)	519	542	564	586	610	634	653	670	683	704

자료: 국가보훈처와 공무원연금공단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퇴직 경찰공무원등의 국립호국원 안장에 소요되는 추가재정소요는 다음 표와 같이 추계됨
 - 1기당 안장비용은 2022년 108,000원을 기준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

퇴직 경찰공무원등의 국립호국원 안장비용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4~2033년

(단위: 명, 천원, 백만원)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합계
안장 인원 (A)	519	542	564	586	610	634	653	670	683	704	-
1기당 안장비용 (B)	111.3	113.0	114.7	116.4	118.2	119.9	121.7	123.6	125.4	127.3	-
추가재정소요 (C=A×B)	58	61	65	68	72	76	80	83	86	90	739

69)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국립호국원 안장률

(단위: 명)

	2017	2018	2019	2020	2021
사망인원	223	195	198	207	161
안장인원	101	84	83	132	117
안 장 륜	45.29%	43.08%	41.92%	63.77%	72.67%

자료: 국가보훈처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 퇴직예정자 안장비용

- 경찰청과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5년(2017~2021년)간의 장기재직 경찰공무원등의 연도별 퇴직 인원은 경찰공무원이 연평균 1,274명(퇴직연령 59.4세), 소방공무원이 392명(퇴직연령 59.7세)
 - 퇴직 경찰공무원등 중 여성의 수는 미미하므로, 본 추계에서는 추계기간 동안 국립호국원 안장인원 추정 시 성별 구분 없이 남성 사망률을 적용하는 것으로 가정

장기재직 경찰공무원등의 퇴직 인원: 2017~2021년

(단위: 명, 세)

		2017	2018	2019	2020	2021	평균
경 찰 공무원	남성	1,696	1,228	961	1,070	1,290	1,249
	여성	14	21	21	35	36	25
	소계	1,710	1,249	982	1,105	1,326	1,274
	퇴직연령	59.5	59.5	59.4	59.3	59.4	59.4
소 방 공무원	남성	389	424	428	338	345	385
	여성	3	4	9	10	7	7
	소계	392	428	437	348	352	392
	퇴직연령	59.5	59.6	59.6	59.8	59.8	59.7

자료: 경찰청 및 소방청 제출자료

- 최근 5년간 장기재직 경찰공무원등의 연도별 퇴직 인원과 동일한 인원이 퇴직하고 이들의 평균퇴직연령도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통계청이 2022년 5월 공표한 장래 성 및 연령별 사망률(남성)을 적용하여 장기재직 퇴직예정 경찰공무원등의 인원을 추정
 - 경찰공무원은 매년 1,274명이 퇴직하고 이들의 평균퇴직연령은 59세로 가정
 - 소방공무원은 매년 392명이 퇴직하고 이들의 평균퇴직연령은 60세로 가정

퇴직예정 경찰공무원등의 사망 인원 추계: 2022~2033년

(단위: 명)

추계기간 퇴직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경찰	생존인원	2022	1,274	1,267	1,260	1,252	1,244	1,235	1,226	1,217	1,207	1,196	1,186	1,174
		2023	-	1,274	1,267	1,260	1,253	1,245	1,237	1,228	1,219	1,209	1,199	1,188
		2024	-	-	1,274	1,267	1,261	1,253	1,246	1,238	1,229	1,220	1,211	1,201
		2025	-	-	-	1,274	1,268	1,261	1,254	1,247	1,239	1,231	1,222	1,213
		2026	-	-	-	-	1,274	1,268	1,261	1,255	1,248	1,240	1,232	1,224
		2027	-	-	-	-	-	1,274	1,268	1262	1,255	1,248	1,241	1,234
		2028	-	-	-	-	-	-	1,274	1,268	1,262	1,256	1,249	1,242
		2029	-	-	-	-	-	-	-	1,274	1,268	1,263	1,257	1,250
		2030	-	-	-	-	-	-	-	-	1,274	1,269	1,263	1,257
		2031	-	-	-	-	-	-	-	-	-	1,274	1,269	1,263
		2032	-	-	-	-	-	-	-	-	-	-	1,274	1,269
		2033	-	-	-	-	-	-	-	-	-	-	-	1,274
	사망인원	-	7	14	22	27	38	44	51	62	69	77	88	
소방	생존인원	2022	392	389	387	384	381	378	374	371	367	364	360	355
		2023	-	392	390	387	384	381	378	375	372	368	365	361
		2024	-	-	392	390	387	384	382	379	376	372	369	365
		2025	-	-	-	392	390	387	385	382	379	376	373	370
		2026	-	-	-	-	392	390	387	385	382	380	377	374
		2027	-	-	-	-	-	392	390	388	385	383	380	377
		2028	-	-	-	-	-	-	392	390	388	385	383	380
		2029	-	-	-	-	-	-	-	392	390	388	386	383
		2030	-	-	-	-	-	-	-	-	392	390	388	386
		2031	-	-	-	-	-	-	-	-	-	392	390	388
		2032	-	-	-	-	-	-	-	-	-	-	392	390
		2033	-	-	-	-	-	-	-	-	-	-	-	392
	사망인원	-	3	4	8	11	14	16	18	23	25	27	34	

주: 추계기간 동안 33년 이상 재직 경찰공무원등의 연평균 퇴직인원(경찰공무원 1,274명, 소방공무원 392명)에 퇴직평균연령(경찰공무원은 59세, 소방공무원은 60세)의 사망률에 코호트(cohort) 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함

자료: 경찰청 및 소방청의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장기재직 퇴직예정 경찰공무원등의 사망 추정 인원에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2021년 국립호국원 안장률 72.67%를 적용하여, 국립호국원 안장 인원을 추정

퇴직예정 경찰공무원등의 국립호국원 안장 인원 추계: 2024~2033년

(단위: 명)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사망 인원	경찰공무원	14	22	27	38	44	51	62	69	77	88
	소방공무원	4	8	11	14	16	18	23	25	27	34
	소 계	18	30	38	52	60	69	85	94	104	122
안장률		72.67%	72.67%	72.67%	72.67%	72.67%	72.67%	72.67%	72.67%	72.67%	72.67%
안장 인원		13	22	28	38	44	50	62	68	76	89

자료: 국가보훈처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장기재직 퇴직예정 경찰공무원등의 국립호국원 안장에 소요되는 추가재정소요는 1기당 안장비용은 2022년 108,000원을 기준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추계

퇴직예정 경찰공무원등 국립호국원 안장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4~2033년

(단위: 명, 천원, 백만원)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합계
안장 인원 (A)	13	22	28	38	44	50	62	68	76	89	-
1기당 안장비용 (B)	111.3	113.0	114.7	116.4	118.2	119.9	121.7	123.6	125.4	127.3	-
추가재정소요 (C=A×B)	1	2	3	4	5	6	8	8	9	11	60

다. 국립호국원 확충

- 국가보훈처의 「국립묘지 종합 발전방안 수립 연구」 용역 결과보고서 (2021.12.)에 따르면 국립호국원의 신설 또는 확충이 없는 경우 경찰공무원 등의 안장수요 고려 시 2032년 이후 국립호국원의 잔여기수가 부족해질 것으로 예상

국립호국원 연도별 안장수급 추계: 2028~2033년

(단위: 기)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현행	안장여력	73,939	59,156	44,888	29,478	16,749	4,180
	안장수요	14,783	14,268	15,410	12,729	12,659	12,957
	잔여기수	59,156	44,888	29,478	16,749	4,180	△8,777
개정안	안장수요 (누적)	2,966	3,650	4,365	5,103	5,862	6,655
과부족		56,190	41,238	25,113	11,646	△1,682	△15,432

자료: 국가보훈처의 「국립묘지 종합 발전방안 수립 연구」 용역 결과보고서(2021.12.)를 바탕으로 국회에
산정책처 작성

- 개정안에 따른 경찰공무원등의 안장수요를 고려하여, 2031년에 국립호국원 봉안시설 10,000기를 확충하되 토지매입비는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 국가보훈처는 2022년 국립이천호국원의 봉안시설 확충공사를 착공하였으며, 국립호국원 봉안시설 1기당 공사비 단가는 989,520원이며, 국립이천호국원 총사업비는 6,869만원

국립이천호국원 공사비 내역

(단위: 천원)

	조성규모	사업기간	총사업비	상세내역
국립이천호국원	5만기	'18~'24년 ('22년 착공)	68,686	공사비: 49,476 보상비: 12,224 설계비: 3,821 부대경비: 3,165

-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발표한 2010년부터 2022년까지의 건설공사비지수는 2013년 97.27이고, 2022년 146.47이므로, 건설공사비지수의 연평균 상승률은 4.65%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발표 건설공사비지수: 2013~2022년(5월 기준)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비주거용건물	97.27	99.49	99.67	101.43	106.05	110.63	115.67	116.99	130.13	146.47

자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국립이천호국원의 공사비 단가를 기준으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발표한 건설공사비지수를 적용하여 국립호국원 확충 비용을 추정

- 공사비: 2022년 국립호국원 1기당 공사비(989,520원)에 건설공사비지수의 연평균상승률(4.65%) 적용 시 2030년 1기당 공사비(1,423,438원)에 확충기수(10,000기)를 곱하여 산출하되, 공사기간을 2년으로 가정
- 부대경비: 「2023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건축부문 요율 100~200억원 사이의 공사비를 기준으로 직선보간법을 이용하여 요율을 산출

국립호국원 확충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9~2031년

(단위: 백만원)

			2029	2030	2031	합계
국립호국원 확충 비용	공사비		-	7,117	7,117	14,234
	부대경비	설계비 (공사비의 4.15%)	591	-	-	591
		감리비 (공사비의 9.64%)	-	686	686	1,372
		시설부대비 (공사비의 0.24%)	-	17	17	34
	합계		591	7,820	7,820	16,231

- 주 1. 국립호국원의 공사는 2030년에 착공하여 2031년에 완공하는 것으로 가정하며, 공사비는 각 연도 별 50%씩 배분함
2. 설계비는 2029년에만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감리비는 전면 책임감리비 요율(보통)을 적용함
3. 국립호국원의 확충 비용에는 토지매입비가 제외되어 있어, 이를 포함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증가할 수 있음

3

위탁병원 진료비 감면대상 확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주요내용

- 위탁병원 진료비 감면대상에 75세 이상 보국수훈자 추가

2. 비용추계 결과

- 위탁병원 진료비 감면대상에 75세 이상인 보국수훈자를 포함하는 경우 연평균 24억원의 추가재정소요 예상

개정안에 따른 비용추계 결과

(단위: 백만원)

구분	2024	2025	2026	2027	2028	합계	연평균
75세 이상 보국수훈자 위탁병원 진료비 감면	1,701	1,998	2,348	2,761	3,250	12,058	2,412

3. 재정수반요인

- 위탁병원 진료비 감면대상 추가
 - 위탁병원 진료비 감면대상에 75세 이상인 보국수훈자를 추가

4. 비용추계의 전제

- 개정안에 따라 75세 이상인 보국수훈자에 대하여 위탁병원 진료비를 감면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현재 위탁병원에서 지원되고 있는 60% 감면대상자의 진료 실적을 바탕으로 추정

- 무공수훈자⁷⁰⁾는 75세 이상인 경우 현재 위탁병원에서 진료비의 60%를 감면받고 있고, 보국수훈자는 무공수훈자와 유사할 것으로 예상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를 적용
-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개정안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으로 함

5. 비용추계 상세 내역

가. 추계의 대상 및 방법

- 추가재정소요의 추계대상은 위탁병원 진료비 감면대상에 75세 이상인 보국수훈자를 포함하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
 - 산출방법은 75세 이상 보국수훈자 수에 1인당 연간진료횟수 및 1회당 감면진료단가를 입원, 외래, 약제로 구분하여 추계

비용추계 산식

$$\text{추가재정소요}_t = \sum_{i=1}^3 (75\text{세이상보국수훈자}_i^{1)}) \times 1\text{인당연간진료횟수}_i^{2)}) \times 1\text{회당진료단가}_i^{3)})$$

이때, t 는 추계기간(2024~2028년),
 $i=1$ 은 입원, $i=2$ 는 외래 $i=3$ 은 약제

- 1) 75세 이상 보국수훈자 $_t$ = 3,016명(2021년)을 기준으로 연평균상승률(14.7%) 적용
- 2) 1인당 연간진료횟수 $_t$ = 위탁병원 75세 이상 감면진료대상 연간 진료횟수
(최근 5년간 연평균) 적용
- 3) 1회당 진료단가 $_t$ = 위탁병원 75세 이상 감면진료대상 연간 진료단가에 최근 5년간 연평균증가율 적용

7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7. 무공수훈자(武功受勳者): 무공훈장(武功勳章)을 받은 사람

나. 위탁병원 진료비 감면대상 추가

- 국가보훈처에서는 ‘위탁병원진료’ 사업을 통하여 보훈병원⁷¹⁾이 없는 지역이나 보훈병원과 원거리 지역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등의 진료를 위해 위탁병원⁷²⁾을 지정하여 의료지원 실시
 - ‘위탁병원진료’ 사업은 국비진료와 감면진료로 구분
 - (국비진료) 애국지사, 국가유공상이자 등에 대하여 연령 제한 없이 전액 국비진료 실시
 - (감면진료) 75세 이상인 자에 한정하여 참전유공자는 90%를 감면하고 있고, 무공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보상금 수령 선순위유족 등에 대해서는 60%를 감면
 -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2022년 10월 1일 이후부터는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에게도 관련 시행령 개정⁷³⁾에 따라 약제비를 지급할 예정(2021년까지는 감면대상자에게 약제비를 지원하지 않았음)
 - 1인당 한도액은 참전유공자와 재일학도의용군인은 252,000원, 무공수훈자는 160,000원으로 고시 제정 준비 중(2022.8.11. 현재)
- 개정안에 따라 75세 이상 보국수훈자에 대하여 위탁병원 진료비를 감면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향후 5년간 121억원으로 추정
 - (대상자) 최근 5년간(2017~2021년) 보국수훈자는 아래 표와 같이 증가추세이며, 75세 이상인 보국수훈자는 연평균증가율(14.7%)을 적용하여 추정
 - 보국수훈자에는 군인으로서 보국훈장을 받고 전역한 사람, 군인 외의 사람으로서 간첩체포, 무기개발 등으로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 등이 있음

71) 전국 6개소(서울, 부산, 광주, 대구, 대전, 인천)

72) 전국 515개소(2022.8.1. 기준)

7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2641호, 2022.5.9. 일부개정, 2022.10.1. 시행) 및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2644호, 2022.5.9. 일부개정, 2022.10.1. 시행)에 따르면, 국가보훈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1인당 연간 지급금액의 한도에서 약제비용을 지급하도록 규정

보국수훈자 현황: 2017~2021년

(단위: 명)

	2017	2018	2019	2020	2021	연평균증가율
합 계	27,931	29,320	30,727	32,150	33,441	4.6%
75세 미만	26,188	27,363	28,522	29,566	30,425	3.8%
75세 이상	1,743	1,957	2,205	2,584	3,016	14.7%

주: 보국수훈자 중 국비 대상자인 상이자로 등록된 자는 이미 위탁병원에서 국비 진료를 받고 있으므로 인원 산정에서 제외

자료: 국가보훈처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진료횟수) 보국수훈자는 현재 60% 감면대상인 무공수훈자와 유사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아래 표의 최근 5년간(2017~2021년) 위탁병원 60% 감면진료 실적을 바탕으로, 개정안에 따른 위탁병원의 연간 진료횟수를 추정
 - 연간 진료횟수는 연인원 수를 실인원 수로 나누어 산출되며, 최근 5년간 진료횟수의 뚜렷한 증감추세가 나타나지 않아서, 본 추계에서는 연평균 연간 진료횟수인 입원 3.9회, 외래 5.4회를 적용
- (지급단가) 위탁병원 감면진료 단가는 입원, 외래, 약제로 구분하여 아래와 같이 추정
 - 입원, 외래는 2021년 연간 진료단가 24,887원, 16,988원에 연평균증가율 6.5%, 1.3%를 각각 적용하여 추정
 - 2022년 10월부터 지원될 예정인 약제비는 1인당 한도액인 16만원(고시 제정 중)을 추계 기간 동안 동일하게 적용

위탁병원 감면진료(60%) 현황: 2017~2021년

		2017	2018	2019	2020	2021	연평균 증가율
실인원 (명, a)		50,013	50,218	45,420	44,674	50,190	0.1%
연인원 (명, b)	입원	182,298	153,617	233,486	193,105	173,802	-1.2%
	외래	267,633	206,335	318,101	259,093	245,658	-2.1%
1인당 연간 진료횟수 (회, c=b/a)	입원	3.7	3.1	5.1	4.3	3.5	3.9 ¹⁾
	외래	5.4	4.1	7.0	5.8	4.9	5.4 ¹⁾
1회당 진료단가 (원, d)	입원	19,326	20,629	21,196	23,211	24,887	6.5%
	외래	16,160	19,468	18,412	20,611	16,988	1.3%
총진료비 (백만원, a×c×d)	입원	3,523	3,169	4,949	4,482	4,325	5.3%
	외래	4,325	4,017	5,857	5,340	4,173	-0.9%

주: 1) 3.9, 5.4는 연평균 진료횟수임

- (추가재정소요) 75세 이상 보국수훈자에 대하여 위탁병원 연간 진료횟수 및 감면진료단가를 곱하여 추가재정소요를 산출하면 향후 5년간 121억원으로 예상

75세 이상 보국수훈자의 위탁병원 진료비 감면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4~2028년

구분		2024	2025	2026	2027	2028	합계
75세이상 보국수훈자 (명, a)		4,550	5,219	5,985	6,865	7,873	-
1인당 연간 진료횟수 (회, b)	입원	3.9	3.9	3.9	3.9	3.9	-
	외래	5.4	5.4	5.4	5.4	5.4	-
1회당 진료단가 (원, c)	입원	30,085	32,048	34,140	36,368	38,741	-
	외래	17,637	17,858	18,083	18,310	18,540	-
	약제	160,000	160,000	160,000	160,000	160,000	-
소요비용 (백만원, a×b×c)		1,701	1,998	2,348	2,761	3,250	12,058

4

재발방지평생교육기관 설치 등: 「마약류 등의 중독증 제거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평생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

1. 주요내용

- 재발방지평생교육기관 등의 설치·지정 등

2. 비용추계 결과

- 재발방지평생교육기관 등의 설치·지정 및 재발방지교육사에 대한 인건비 보조의 경우 연평균 12억 4,400만원의 추가재정소요 예상

제정안에 따른 비용추계 결과

(단위: 백만원)

구분	2024	2025	2026	2027	2028	합계	평균
인건비	537	552	568	585	603	2,845	569
운영비	396	402	408	414	420	2,040	408
임차료	131	131	131	131	131	657	131
설치비	676	-	-	-	-	676	135
합계	1,740	1,086	1,107	1,130	1,155	6,218	1,244

3. 재정수반요인

- 재발방지평생교육기관 등의 설치·지정
 - 마약류등의 재중독 및 재발방지 교육, 이와 관련한 전문적인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전문인력의 양성 등을 위하여 재발방지 평생교육기관을 설치·지정 또는 운영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 재발방지교육사 양성을 위한 교육 위탁

- 법무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지방자치단체 등 마약중독증의 재발, 재범, 재중독 방지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은 재발방지교육사 전문요원 양성을 위하여 재발방지평생교육기관에 이들에 대한 교육을 위탁할 수 있음

■ 재발방지교육사에 대한 인건비 보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발방지평생교육기관에 배치된 재발방지교육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건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음

4. 비용추계의 전제

■ 제정안에 따른 재발방지평생교육기관은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중독재활센터를 신규로 설치·지정하는 것으로 가정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의2⁷⁴⁾에 따라 마약류 예방교육, 중독자 재활교육,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전문강사 교육 등을 수행하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설립되어 있음
- 기존에 설치된 서울 본부 및 영남권 중독재활센터 이외에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에 추가로 중독재활센터를 설치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중독재활센터 설치·지정에 필요한 재정소요는 2020년 영남권 중독재활센터 설치 비용 및 2022년 운영에 소요된 비용을 참고하여 추정

■ 재발방지교육사 전문요원 양성을 위한 위탁교육비는 추계에서 제외

- 현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재활교육 강사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 중

7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의2(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설립) ① 마약류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를 둔다.

1. 마약류의 폐해에 대한 대국민 홍보·계몽 및 교육 사업
2.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사회복지 사업
3.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불법 마약류 및 약물 오용·남용 퇴치와 관련된 사업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재활교육 강사 양성과정 교육프로그램 운영 현황: 2021년

구분	교육프로그램 이수시간	이수인원
전문강사 양성과정	36시간	515명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 제정안을 시행하는 경우 위탁 교육인원이 늘어날 수 있으나, 현시점에서 이를 예측할 수 없으므로 전문요원 양성을 위한 위탁교육비는 추계에서 제외
- 소비자물가상승률 및 명목임금상승률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 적용
-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제정안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의 기간을 추계

5. 비용추계 상세 내역

가. 추계의 대상 및 방법

- 추계 대상은 재발방지평생교육기관 설치·지정에 따라 소요되는 인건비, 운영비, 임차료 및 설치비임

비용추계 산식

$$\text{추가재정소요}_t = \text{인건비}_t^A + \text{운영비}_t^B + \text{임차료}_t^C + \text{설치비}_t^D$$

$$A) \text{인건비}_t = \text{증원인원 수}^{1)} \times \text{1인당 인건비}_t^{2)}$$

이때, t 는 추계기간(2024~2028년)

$$1) \text{증원인원 수: 15명(영남권 중독재활센터 인원 5명 참고)}$$

$$2) \text{1인당 인건비}_t = \text{1인당 인건비}_{t-1} \times (1 + \alpha_t)$$

이때, t 는 추계기간(2024~2028년),

1인당 인건비₂₀₂₂는 3,360만원(식품의약품안전처 2022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자료

참고), α 는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명목임금상승률

$$B) \text{운영비}_t = \text{중독재활센터 운영비용}_t^{1)} \times \text{개소수}^{2)}$$

이때, t 는 추계기간(2024~2028년)

$$1) \text{운영비용}_t = \text{운영비용}_{t-1} \times (1 + \alpha_t)$$

이때, t 는 추계기간, 운영비용₂₀₂₂은 1억 2,800만원(식품의약품안전처 2022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자료 참고, 시설관리 2,300만원 + 재활프로그램 운영비 1억 500만원),

α 는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

$$2) \text{개소수: 3개(제정안에 따른 재발방지평생교육기관으로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에 각각 중독재활센터를 설치)}$$

$$C) \text{임차료}_t = \text{중독재활센터 임차료}_{it}^{1)2)}$$

이때, t 는 추계기간(2024~2028년), i 는 각 중독재활센터(1=수도권, 2=충청권, 3=호남권)

$$1) \text{임차료는 오피스 평균 임대료(한국부동산원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를 참고하여 추정} \\ \times 2022\text{년 1분기 기준 영남권(부산) } 7.2\text{천원/}\text{m}^2, \text{ 수도권(경기) } 12.3\text{천원/}\text{m}^2, \text{ 충청권(대전) } \\ 4.7\text{천원/}\text{m}^2, \text{ 호남권(광주) } 5.5\text{천원/}\text{m}^2 \text{ 적용}$$

$$2) \text{최근 5년간 전국 오피스 평균 임대료 상승률은 없으므로 임차료 인상률은 없는 것으로 가정}$$

$$D) \text{설치비}_t = \text{중독재활센터 설치비용}_t^{1)} \times \text{개소수}^{2)}$$

이때, t 는 추계기간(2024년), 설치비는 센터 신설에 따른 공사비 및 물품구입비 등

$$1) \text{영남권 중독재활센터 설치비용(2020년)에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을} \\ \text{적용하여 신규 중독재활센터 설치비용}_{2024}\text{을 추정}$$

$$2) \text{개소수: 3개(제정안에 따른 재발방지평생교육기관으로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에 각각} \\ \text{중독재활센터를 설치)}$$

나. 재발방지평생교육기관 등의 설치·지정 및 재발방지교육사에 대한 인건비 보조

1) 인건비

- 제정안에 따른 재발방지평생교육기관 설치를 위한 추가재정소요는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에 각각 중독재활센터를 설치·지정에 따른 비용으로 가정하고 각 센터에 배치되는 인원 및 인건비는 영남권 중독재활센터 인건비 예산을 참고하여 추정
 - 영남권 중독재활센터 2022년 인건비 예산액: 168백만원
 - 168백만원 = 279.2만원 × 12개월 × 5명
 - 영남권 중독재활센터와 동일한 규모로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에 각각 중독재활센터를 설치하는 것으로 가정하는 경우 인건비 추정액은 다음의 표와 같음
 -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명목임금상승률을 적용하여 금액 산정

수도권·충청권·호남권 중독재활센터 인건비: 2024~2028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4	2025	2026	2027	2028	합계
인건비	537	552	568	585	603	2,845

2) 운영비

- 각 중독재활센터의 운영비는 영남권 중독재활센터의 운영비 예산을 참고하여 추정
 - 영남권 중독재활센터 2022년 운영비 예산액(1억 2,800만원)에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한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산정한 각 중독재활센터 운영비 소요는 아래의 표와 같음
 - 1억 2,800만원 = 시설관리 2,300만원 + 재활프로그램 운영비 1억 500만원

수도권·충청권·호남권 중독재활센터 운영비: 2024~2028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4	2025	2026	2027	2028	합계
운영비	396	402	408	414	420	2,040

3) 임차료

- 각 중독재활센터의 임차료는 영남권 중독재활센터의 임차료 예산을 참고하되 한국부동산원의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에 따른 2022년 1분기 오피스 평균 임대료를 이용하여 추정

- 영남권 중독재활센터 2022년 임차료 예산액: 4,200만원
 - 4,200만원 = 350만원 × 12개월
 - 2022년 1분기 기준 오피스 평균 임대료: 영남권(부산) 7.2천원/㎡, 수도권(경기) 12.3천원/㎡, 충청권(대전) 4.7천원/㎡, 호남권(광주) 5.5천원/㎡ 적용
 - 최근 5년간 전국 오피스 평균 임대료는 변동이 없으므로 임차료 인상률은 없는 것으로 가정

수도권·충청권·호남권 중독재활센터 임차료: 2024~2028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4	2025	2026	2027	2028	합계
수도권	72	72	72	72	72	359
충청권	27	27	27	27	27	137
호남권	32	32	32	32	32	161
합계	131	131	131	131	131	657

4) 설치비

- 각 중독재활센터 내부공사 및 물품구입 등에 따른 설치비는 2020년 영남권 중독재활센터 설치 당시의 비용을 참고

- 영남권 중독재활센터 2020년 설치비 집행액(2억 500만원)에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
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산정

수도권·충청권·호남권 중독재활센터 설치비: 2024~2028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4	2025	2026	2027	2028	합계
설치비	676	-	-	-	-	676

VI

안전·행정 분야

1

미성년 유족연금 수급권 소멸연령 상향: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 주요내용

- 미성년 유족연금 수급자의 수급권 소멸연령 상향 조정

2. 비용추계 결과

- 미성년 유족연금 수급자의 수급권 소멸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경우 연평균 1억 9,700만원의 추가재정소요 예상

개정안에 따른 비용추계 결과

(단위: 백만원)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3	합계	연평균
미성년 유족연금 수급권 소멸연령 상향	34	101	137	169	197	225	222	254	294	340	1,973	197

3. 재정수반요인

- 미성년 유족연금 수급자의 수급권 소멸연령 상향 조정
 - 퇴직유족연금의 수급 자격이 있는 자녀의 연령을 현행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여 수급기간을 연장하도록 규정

4. 비용추계의 전제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퇴직유족연금 수급자 중 2021년 10월 현재 기준 14~18세 미성년자가 19세부터 24세(25세에 수급권 소멸)까지 추가적으로 받게 되는 연금액으로 한정
- 추계기간 동안 퇴직유족연금의 미성년자 수급자는 매년 4명(14세)씩 신규로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
 - 공무원연금공단에 따르면, 최근 3년(2018~2020년) 동안 신규 미성년 수급자 수는 연평균 4명(평균 연령 14세)
 - 다만, 개정안 시행 후 유족연금 수급가능한 자녀의 연령이 24세로 확대되어 19세부터 24세의 신규 수급자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이를 현 시점에서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추계에서 제외하기로 함
- 추계기간 동안 연금액은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따라 인상되며,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를 적용
- 법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개정안 부칙과 2021년 1월 기준 미성년 수급자의 연령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2년부터 2031년까지 10년으로 함

5. 비용추계 상세 내역

가. 추계의 대상 및 방법

- 개정안의 비용추계 대상은 퇴직유족연금 수급자 중 14~18세 미성년자인 경우에 대하여 19세부터 24세(25세에 수급권 소멸)까지 연금액을 지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비용추계 산식

$$\text{추가재정소요}_t = \sum_i (\text{인원}_{i,t}^1) \times \text{퇴직유족연금액}_{i,t}^2)$$

이때, t 는 추계연도(2022~2031년),

i 는 수급자 종류 (1=18세, 2=17세, 3=16세, 4=15세, 5=14세, 6=신규)

1) 인원은 2021년 10월 현재 18세는 4명, 17세 5명, 16세 3명, 15세 3명, 14세 3명이고, 신규수급자는 2022년부터 매년 4명씩 발생

2) 퇴직유족연금액은 수급자 종류별로 평균연액을 적용하며, 2021년 기준 18세 851만원, 17세 1,286만원, 16세 1,149만원, 15세 939만원, 14세 806만원
신규 수급자의 경우, 최근 3년(2018~2020년) 평균 1,406만원에 연도별 명목임금상승률을 곱하여 매년도 첫 연금액을 산출
추계기간 동안 기수급자 및 신규 수급자의 연금액은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따라 인상되며, 이때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국회예산정책처의 전망치를 적용

나. 미성년 유족연금 수급자의 수급권 소멸연령 상향 조정

■ 2021년 10월 기준 14~18세 미성년 수급자의 연령 변화는 다음의 표와 같으며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는 연도를 음영으로 표시함

퇴직유족연금 미성년 수급자의 연령 변화: 2022~2031년

(단위: 세)

구분	인원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기수급자	18세	4명	19	20	21	22	23	24			
	17세	5명	18	19	20	21	22	23	24		
	16세	3명	17	16	19	20	21	22	23	24	
	15세	3명	16	17	18	19	20	21	22	23	24
	14세	3명	15	16	17	18	19	20	21	22	23
신규 수급자	4명		14	15	16	17	18	19	20	21	22
				14	15	16	17	18	19	20	21
					14	15	16	17	18	19	20
						14	15	16	17	18	19
							14	15	16	17	18

주: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는 연도를 음영으로 표시함

자료: 공무원연금공단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추계기간 동안 퇴직유족연금액은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에 따라 인상되며 퇴직유족연금액은 수급자 종류별로 평균연액을 적용
 - 기수급자의 경우 2021년 기준 18세 851만원, 17세 1,286만원, 16세 1,149만원, 15세 939만원, 14세 806만원
- 신규 수급자의 첫 연금액은 2020년 기준 연금액에 연도별 명목임금상승률⁷⁵⁾을 적용하여 산출한 후, 그 다음 연도부터는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인상

연간 퇴직유족연금액 추계: 2022~2031년

(단위: 원)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기수급자	18세	8,594,025	8,697,154	8,801,520	8,915,939	9,040,762
	17세	12,991,864	13,147,767	13,305,540	13,478,512	13,667,211
	16세	11,604,027	11,743,276	11,884,195	12,038,690	12,207,231
	15세	9,487,742	9,601,595	9,716,814	9,843,133	9,980,937
	14세	8,139,550	8,237,224	8,336,071	8,444,440	8,562,662
신규수급자		14,642,688	14,818,400	14,996,221	15,191,172	15,403,848
		-	15,023,400	15,203,681	15,401,329	15,616,947
		-	-	15,444,048	15,644,821	15,863,848
		-	-	-	15,891,936	16,114,423
		-	-	-	-	16,368,684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기수급자	18세	-	-	-	-	-
	17세	13,858,552	-	-	-	-
	16세	12,378,132	12,551,426	-	-	-
	15세	10,120,670	10,262,359	10,406,032	-	-
	14세	8,682,539	8,804,095	8,927,352	9,052,335	-
신규수급자		15,619,502	15,838,175	16,059,910	16,284,748	16,512,735
		15,835,585	16,057,283	16,282,085	16,510,034	16,741,174
		16,085,942	16,311,145	16,539,501	16,771,054	17,005,849
		16,340,025	16,568,785	16,800,748	17,035,959	17,274,462
		16,597,846	16,830,215	17,065,838	17,304,760	17,547,027

주: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는 연도를 음영으로 표시함

75) 첫 연금액은 해당 공무원의 기준소득월액에 따라 결정되므로 연도별 공무원 보수인상과 승급효과를 고려하여 명목임금상승률을 적용

2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정원 확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1. 주요내용

-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정원 확대

2. 비용추계 결과

- 지방의회의원 정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두도록 하는 경우 연평균 1,249억원의 추가재정소요 예상

개정안에 따른 비용추계 결과

(단위: 백만원)

구분	2024	2025	2026	2027	2028	합계	연평균
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정원 확대	72,589	141,123	136,895	136,895	136,895	624,397	124,879

3. 재정수반요인

-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정원 확대
 - 지방의회에 두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정원을 지방의회의원 정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둘 수 있도록 확대
 - 현행법은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함

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정원 확대 관련 현행법 및 개정안 비교

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현행법	개정안
제41조(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①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제41조(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①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 정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4. 비용추계의 전제

-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시·도회의의 경우 6급 일반임기제공무원, 시·군·구 회의의 경우 7급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하고,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4분의 3 범위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지방의회의원 정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차적으로 증원하는 것으로 가정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의회사무기구(위원회를 포함함)에 두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시·도의 경우 6급 이하, 시·군·구의 경우 7급 이하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하도록 하며,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만으로 임명할 수 있음⁷⁶⁾

76) 「지방자치법」

제41조(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①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며, 직급·직무 및 임용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의회사무기구의 설치기준 등) ⑤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의회사무기구(위원회를 포함한다)에 두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한다.

1. 시·도의 경우: 6급 이하

2. 시·군·구의 경우: 7급 이하

⑥ 제5항에 따라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이하 “일반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만으로 임명할 수 있다.

- 현행법 부칙 제6조에서 지방의회에 두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4분의 1 범위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연차적으로 도입하도록 함
- 추계기간 동안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연봉액은 변화가 없는 것으로 가정
 - 임기제공무원의 연봉액은 기본연봉액과 성과연봉액으로 구성되며, 계약기간 동안 기준연봉액에는 변화가 없고 매년 성과연봉액에 변동이 발생하나 현재로서는 지방의회별 각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성과연봉 등급을 예측할 수 없으므로 연봉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가정
- 각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늘어남에 따라 업무 공간의 확충이 필요하나 기존의 지방의회 청사 공간을 활용하는 것으로 가정
-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개정안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으로 함

5. 비용추계 상세 내역

가. 추계의 대상 및 방법

- 추가재정소요의 추계대상은 정책지원 전문인력 정원 확대에 따른 증원 인원에 대한 인건비, 기본경비, 자산취득비임

비용추계 산식

$$\text{추가재정소요}_t = \text{정책지원 전문인력 인건비}_t^{1)} \times \{(\text{6급 증원 인원}_t^{2)} \times \text{1인당 인건비}_t) + (\text{7급 증원 인원}_t^{3)} \times \text{1인당 인건비}_t)\} + \text{기본경비}_t^{4)} + \text{자산취득비}_t^{5)}$$

이때, t 는 추계기간(2024~2028년)

1) 인건비: 공무원 보수 등 + 기관부담금

2) 6급 증원 인원: 사·도의회 의원 정수는 총 872명이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최대 21명의 정책연구위원을 둘 수 있으므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수(40명)를 제외하면 개정안에 따라 증원 가능한 사·도의회 6급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수는 총 416명임

3) 7급 증원 인원: 시·군구의회 의원 정수는 총 2,987명으로, 개정안에 따라 증원 가능한

- 사군·구의회 7급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수는 의원정수의 2분의 1인 총 1,493명임
- 4) 기본경비는 서울특별시의회 사례를 참조하여 1인당 450만원으로 추계하며, 추계기간 동안 변동이 없는 것으로 가정
- 5) 자산취득비는 「법인 비용추계에 이용되는 단가 및 기준정보에 관한 연구(2020.6.)에서 산정한 정부부처 자산취득비(4,197천원, 2020년 기준)에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

나. 정책지원 전문인력 증원에 따른 인건비

- 현행법은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이하 “정책지원관”이라 함)⁷⁷⁾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개정안은 지방의회의원 정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의회에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에 따라 증원되는 정책지원관의 수는 1,909명(시·도의회 정책지원관 416명, 시·군·구의회 정책지원관 1,493명)
- 시·도의회 의원 정수는 총 872명(지역구 779명, 비례대표 93명)이나,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조에 따라 최대 21명의 정책연구위원을 둘 수 있으므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지역구 32명, 비례대표 8명)를 제외하면 개정안에 따라 증원 가능한 시·도의회 정책지원관의 수는 총 416명
 - 시·군·구의회 의원 정수는 총 2,987명(지역구 2,601명, 비례대표 386명)으로 개정안에 따라 증원 가능한 사군·구의회 정책지원관의 수는 총 1,493명

77)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제3항에서 정책지원전문인력의 명칭은 정책지원관으로 하도록 규정함

증원 가능한 정책지원관의 수

(단위: 명)

구 분	지역구 의원	비례대표 의원	의원정수	현행법상 임용 가능한 정책지원관의 수	개정안에 따라 증원 가능한 정책지원관의 수
시·도의회 ¹⁾	747	85	832	416	416
시·군·구의회	2,602	386	2,987	1,493	1,494
합 계	3,349	471	3,819	1,909	1,910

주: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외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시·도의회 정책지원관 증원 인원에 대한 인건비는 일반임기제 6급 지방직공무원 보수에 증원 가능한 인원(총 416명)을 곱하고, 시·군·구의회 정책지원관 인건비는 일반임기제 7급 지방직공무원 보수에 증원 가능한 인원(총 1,493명)을 곱하여 추정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과 「지방공무원의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일반임기제 6급 지방직공무원의 2022년 연간 보수는 58,159천원이고 7급 지방직공무원의 2022년 연간 보수는 50,665천원임
 - 일반임기제 6급 지방직공무원 및 7급 지방직공무원은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 대상자로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별표 13)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에 따른 각각의 연봉하한액의 120%를 적용⁷⁸⁾
 - 수당은 가족수당(배우자와 자녀 1명 기준) 적용하고 실비변상은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연가보상비 반영

78)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5조(신규임용시 연봉책정) ③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의 일반임기제공무원 및 별표 11 제3호에 해당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되는 사람의 연봉은 별표 13에서 정한 연봉한계액 하한액의 120퍼센트(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별표 11 제3호에 해당하는 별정직공무원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의2의 전문임기제공무원의 경우 130퍼센트)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이 책정할 수 있으며, 인력확보에 지장이 없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에 미달하는 금액으로도 연봉을 책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연봉은 해당 직무의 종류·곤란성 또는 책임도가 유사한 국가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연봉수준을 고려하여 적절한 금액으로 정해야 한다.

일반임기제 6급 및 7급 지방공무원 보수: 2022년 기준

(단위: 천원)

구분	봉급	수당	실비변상	합 계
일반임기제 6급 지방공무원	58,159	1,680	6,069	65,908
일반임기제 7급 지방공무원	50,665	1,678	4,990	57,336

자료: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등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2022년 연봉액을 기초로 추계기간 동안 연간 보수와 공무원연금 등 기관부담금을 포함한 정책지원관 6급 1명 및 7급 1명의 인건비를 각각 추계하면 다음과 같음
 - 추계의 전제에서 가정한 바와 같이 추계기간 동안 정책지원관의 연봉액은 변화가 없는 것으로 가정
 - 인건비에 연동되는 공무원연금, 건강보험 등 기관부담금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연도별 기관부담률을 적용

정책지원관(6급 및 7급 각 1명) 채용에 따른 인건비: 2024~2028년

(단위: 천원)

구 분		2024	2025	2026	2027	2028
6급	보수 등	65,908	65,908	65,908	65,908	65,908
	기관부담금	8,700	8,800	8,871	8,871	8,871
	소 계	74,608	74,708	74,780	74,780	74,780
7급	보수 등	57,336	57,336	57,336	57,336	57,336
	기관부담금	7,568	7,654	7,717	7,717	7,717
	소 계	64,904	64,990	65,053	65,053	65,053

-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4분의 3까지,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지방의회의원 정수까지 정책지원관을 증원하는 것으로 가정하면, 2024년과 2025년 각각 955명(시·도의회 정책지원관 208명, 시·군·구의회 정책지원관 747명) 증원

- 따라서 개정안에 따라 증가되는 정책지원관 인건비는 연도별 6급 및 7급 정책지원관 수에 1인당 인건비를 각각 곱하여 다음의 표와 같이 추정함

정책지원관 정수 확대에 따른 인건비 추계: 2024~2028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	2025	2026	2027	2028
6급	1인당 인건비(A, 천원)	74,608	74,708	74,780	74,780	74,780
	정책지원관 증원 인원(B, 명)	208	416	416	416	416
	소 계(A×B, 백만원)	15,519	31,078	31,109	31,109	31,109
7급	1인당 인건비(A, 천원)	64,904	64,990	65,053	65,053	65,053
	정책지원관 증원 인원(B, 명)	747	1,494	1,494	1,494	1,494
	소 계(A×B, 백만원)	48,483	97,095	97,190	97,190	97,190

다. 기본경비 및 자산취득비

- 정책지원관 정수 확대에 따른 기본경비는 1인당 기본경비(서울특별시의회 사례 참조, 450만원)에 정책지원관 증원 인원을 곱하여 추정하고, 자산취득비는 정부부처 자산취득비(4,197천원, 2020년 기준)에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한 후 정책지원관 증원 인원을 곱하여 추정
 - 서울특별시의회 사례를 참조하면, 서울특별시의회 정원은 353명이며 2022년도 기본경비는 15억 8,887만원으로 1인당 기본경비는 약 450만원
 - 기본경비는 추계기간 동안 변동이 없는 것으로 가정하고 자산취득비는 「법안 비용추계에 이용되는 단가 및 기준정보에 관한 연구(2020.6.)에서 산정한 정부부처 자산취득비(4,197천원, 2020년 기준)에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
 -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4분의 3까지,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지방의회의원 정수까지 증원하는 것으로 가정하면 자산취득비는 2024년과 2025년에만 발생
 - 따라서 정책지원관 정수 확대에 따라 증원되는 정책지원관에 대한 기본경비 및 자산취득비는 다음의 표와 같이 추정

정책지원관 정수 확대에 따른 기본경비 및 자산취득비 추계: 2024~2028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	2025	2026	2027	2028
기본 경비	1인당 기본경비(A, 천원)	4,501	4,501	4,501	4,501	4,501
	정책지원관 수(B, 명)	955	1,910	1,910	1,910	1,910
	소 계($A \times B$, 백만원)	4,299	8,597	8,597	8,597	8,597
자산 취득비	1인당 자산취득비(C, 천원)	4,490	4,557	4,625	4,695	4,765
	정책지원관신규 채용 수(D, 명)	955	955	0	0	0
	소 계($C \times D$, 백만원)	4,288	4,352	0	0	0

3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의무 강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주요내용

- 인구 20만명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의무 설치

2. 비용추계 결과

- 인구 20만명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 연평균 23억원의 추가재정소요 예상

개정안에 따른 비용추계 결과

(단위: 백만원)

구분	2024	2025	2026	2027	2028	합계	연평균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2,189	2,241	2,288	2,334	2,381	11,433	2,287

3. 재정수반요인

-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의무 강화
 - 인구 20만명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4. 비용추계의 전제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를 적용
-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개정안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으로 함

5. 비용추계 상세 내역

가. 추계의 대상 및 방법

- 추가재정소요의 추계대상은 인구 20만명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의무적 설치에 따른 운영예산
 - 현재 기설치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소요예산을 참조하여 산출

비용추계 산식

$$\begin{aligned}\text{추가재정소요}_t &= (\text{추가설치 대상 지방자치단체 시·도 수}_t \times \text{연간운영예산}_t) \\ &\quad + (\text{추가설치 대상 지방자치단체 시·군·구 수}_t \times \text{연간운영예산}_t) \\ \text{이때, } t &\text{는 추계기간(2024~2028년)}\end{aligned}$$

나.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의무 강화

- 개정안에 따라 인구 20만명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향후 5년간 114억원으로 예상
 - 현행은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선택적으로 둘 수 있으며, 2022년 8월 현재 시·도에 7개, 시·군·구에 61개의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각각 설치·운영
- 추계방법은 인구 20만명 이상으로 개정안에 따른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두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운영에 따른 연간 소요예산을 곱하여 추정
 -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의무 설치 대상이 되는 광역(8개 시·도) 및 기초(48개 시·군·구)에 각각 지원단가를 곱하여 추정한 결과는 향후 5년간 114억원으로 추정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추가 설치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4~2028년

(단위: 개, 백만원)

		2024	2025	2026	2027	2028	합계
시·도	설치대상 (a)	8	8	8	8	8	-
	지원단가 (b)	30	30	31	32	32	-
시·군·구	설치대상 (c)	48	48	48	48	48	-
	지원단가 (d)	41	42	43	43	44	-
소요비용 (a×b + c×d)		2,189	2,241	2,288	2,334	2,381	11,433

- 인구 20만명 이상인 지방자치단체 115곳(2022년 9월 기준) 중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은 아래 표와 같이 56개(시·도 8개, 시·군·구 48개)

인구 20만명 이상인 시민고충처리위원회 미설치 지방자치단체 56개 현황

(단위: 명)

구분	지방자치단체	총인구수(22.9월 기준)
시·도	부산광역시	3,323,826
	경상남도	3,286,470
	인천광역시	2,960,097
	경상북도	2,605,066
	충청북도	1,595,624
	대전광역시	1,446,602
	세종특별자치시	381,925
	제주특별자치도	678,426
시·군·구	경기도 고양시	1,074,705
	경상남도 창원시	1,023,777
	충청북도 청주시	849,100
	서울특별시 송파구	660,211
	충청남도 천안시	657,210
	전라북도 전주시	652,876
	서울특별시 강서구	570,368
	경상남도 김해시	535,913
	인천광역시 남동구	508,213
	서울특별시 노원구	505,503
	경상북도 포항시	497,900
	인천광역시 부평구	489,286
	경기도 김포시	483,845

구분	지방자치단체	총인구수(22.9월 기준)
	대전광역시 서구	470,852
	경기도 의정부시	463,160
	대구광역시 수성구	412,775
	경상북도 구미시	408,179
	서울특별시 서초구	405,076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388,393
	서울특별시 중랑구	386,39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376,216
	대전광역시 유성구	353,449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351,125
	경상남도 진주시	344,459
	부산광역시 사하구	303,143
	인천광역시 계양구	290,559
	광주광역시 서구	288,043
	강원도 춘천시	286,371
	부산광역시 북구	279,964
	부산광역시 동래구	274,136
	경상북도 경산시	267,891
	경기도 군포시	267,032
	대구광역시 달성군	262,999
	전라북도 군산시	262,937
	부산광역시 남구	257,934
	경상북도 경주시	250,108
	경기도 양주시	239,287
	경상남도 거제시	237,293
	경기도 오산시	229,797
	대전광역시 중구	228,198
	부산광역시 금정구	222,783
	대전광역시 동구	220,511
	서울특별시 용산구	219,275
	전라남도 목포시	216,909
	울산광역시 중구	209,120
	충청북도 충주시	208,487
	부산광역시 연제구	204,869
	부산광역시 사상구	203,957

자료: 국민권익위원회(2022.10)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개정안에 따라 추가로 설치되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소요예산은 시·도와 시·군·구로 구분하여 산출
 - (시·도) 기존 7개 시·도에 설치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을 위한 2022년 예산 평균⁷⁹⁾은 2,787만원으로 여기에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
 - (시·군·구) 기존 61개 시·군·구에 설치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2022년 예산 평균은 3,833만원으로, 여기에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

79)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임용하여 운영하는 서울특별시(4억 9,600만원)와 울산광역시(5억 1,600만원)는 제외하여 평균을 산출

II

제2장 수입법안

I 소득과세 분야

1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상향조정 및 세율 인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 주요내용

■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상향조정 및 세율 인하

- 과세표준 1.5억원 이하 구간의 상향조정(1,200 / 4,600 / 8,800만원 → 1,500 / 5,000만원 / 9,500만원) 및 세율 인하(6 / 15 / 24% → 5 / 13 / 23%)

2. 비용추계 결과

- 과세표준 1.5억원 이하 구간을 상향조정(1,200 / 4,600 / 8,800만원 → 1,500 / 5,000만원 / 9,500만원)하고, 세율을 인하(6 / 15 / 24% → 5 / 13 / 23%)함에 따라, 소득세는 2023년 4조 7,294억원, 2027년 10조 211억원 등 2023년에서 2027년까지 5년간 총 44조 3,107억원(연평균 8조 8,621억원)의 재정 수입 감소 예상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소득세

(단위: 억원)

구분	2023	2024	2025	2026	2027	누적	연평균
과표구간 상향조정 및 세율인하	-47,294	-105,510	-93,405	-96,687	-100,211	-443,107	-88,621

3. 재정수반요인

- 소득세 과세표준 1.5억원 이하 구간을 상향조정하고 세율을 인하함에 따라, 소득세수의 감소가 예상됨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 개정안의 내용

현행		개정안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0~1,200만원	6%	0~1,500만원	5%
1,200~4,600만원	15%	1,500~5,000만원	13%
4,600~8,800만원	24%	5,000~9,500만원	23%
8,800만원~1.5억원	35%	좌동	
1.5억원~3억원	38%		
3억원~5억원	40%		
5억원~10억원	42%		
10억원 초과	45%		

4. 비용추계의 전제

- 개정안이 2022년 중 통과되어, 2023년 귀속 소득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전제하고, 세수효과는 징수기준에 따라 집계
 - 근로소득세의 2023년 세수효과는 간이세액표 개정('23.2월 예정) 이후 원천징수분이 납부되는 시기를 고려하여 4월부터 세수가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
 - 종합소득세의 경우 2023년 귀속소득에 대한 세수가 차년도 확정신고시에만 반영되는 것으로 전제
 - 양도소득세의 2023년 세수효과는 예정신고 기한을 감안하여 3월부터 세수가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

- 2020년 귀속 소득 기준 근로소득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의 국세통계 신고 현황 자료(과세표준 구간별 100여개 구간 자료)를 이용하여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를 추계
 - 동 자료는 국세청의 내부 집계자료(aggregate data)이며, 현재 이용 가능한 최신연도 통계자료임
 - 종합소득세와 근로소득세의 경우, 각각의 세수효과를 추계하여 합산하되, 근로소득 연말 정산 신고자 중 추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인원은 제외하여 추계
 - 양도소득세의 경우,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현황 합계를 연간 신고현황으로 전제하고, 2019~2020년 귀속연도 평균 자료를 사용
- 향후 5년간의 세수효과는 과세표준 구간별 납세인원의 변동에 따라 확대되는 것으로 가정
 - 종합소득세와 근로소득세의 과세표준 구간별 인원 변동은 향후 소득증가에 따른 과세구간 상향이동(bracket creep effect)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각 과표구간별 2019-2020년 증가율을 활용
 - 양도소득세는 연도별 편차가 큰 세목임에 따라, 2019-2020년 평균이 향후 5년간 유지된다고 가정

5. 비용추계 상세 내역

가.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 세수효과 추정 방법
 - 과세표준 구간별 1인당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개정안에 따라 산출된 1인당 세수효과에 각 구간별 인원수를 곱하여 총 세수효과를 추계
 - 개정안에 영향을 받는 종합소득세 신고자를 대상으로, 현행 및 개정안에 따른 1인당 산출세액을 과세표준 구간별로 추계
 - 단, 2021년 소득세율 변경의 효과를 반영하기 위해 2020년 귀속 1인당 과표에 2021년 기준 소득세율을 반영하여 현행 산출세액을 추계

- 1인당 산출세액에서 1인당 세액공제·감면액을 차감하여 1인당 결정세액을 추정해 1인당 세수효과 추계

개정안에 따른 종합소득세 결정세액 변화분, 2020년 귀속 기준

(단위: 명, 백만원)

과세표준 구간별 ¹⁾	인원	1인당 과표	현행 1인당 산출세액	개정안 1인당 산출세액	현행 1인당 결정세액	개정안 1인당 결정세액	총세액 변화분
	A	B	C	D	E	F	G =(F-E)×A
합계	6,761,743	28.7	3.2	3.0	2.1	1.9	-2,402,656
0~1,200만원	3,742,075	4.6	0.3	0.3	0.1	0.1	-117,120
1,200~4,600만원	2,102,584	23.2	2.4	2.1	1.6	1.4	-640,889
4,600~8,800만원	510,472	62.9	9.9	9.2	8.0	7.5	-665,339
8,800만원~1.5억원	216,480	112.8	24.6	23.2	20.7	19.4	-512,173
1.5~3억원	121,684	204.8	58.4	57.0	49.5	48.2	-297,762
3~5억원	36,915	380.0	126.6	125.2	109.1	107.8	-91,234
5~10억원	20,903	676.8	248.9	247.5	215.3	214.1	-51,761
10억원 초과	10,630	2,653.9	1,128.8	1,127.4	967.6	966.3	-26,378

주: 1) 위 표는 각 과표구간의 평균액이며, 실제 추계시 더욱 세분화된 구간(100여개) 활용

나. 근로소득세

■ 근로소득세 세수효과 추정방법

- 과세표준 구간별 1인당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개정안에 따라 산출된 1인당 세수효과에 각 구간별 인원수를 곱하여 총 세수효과를 추계
- 개정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소득세 신고자를 대상으로 현행 및 개정안에 따른 과세표준 구간별 1인당 산출세액을 추계한 후, 1인당 산출세액 변화에 따른 근로소득세액공제의 변화 등을 반영하여 1인당 세액공제·감면액을 추계한 후 이를 차감하여, 1인당 세수효과 추계
- 추가로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자 중 종합소득신고를 하는 자(이하 '중복자')의 경우, 이 중복자들을 제외하고 세수효과를 추계

- 근로소득자 중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사업소득, 2천만원 이상의 금융소득 등)이 있어,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후 종합소득신고를 하는 경우

개정안에 따른 근로소득세 결정세액 변화분, 2020년 귀속 기준

(단위: 명, 백만원)

과세표준 구간별 ¹⁾	인원 ²⁾	1인당 과표	현행 1인당 산출세액	개정안 1인당 산출세액	현행 1인당 결정세액	개정안 1인당 결정세액	총세액 변화분
	A	B	C	D	E	F	G =(F-E)×A
합계	9,492,914	23.6	2.5	2.3	1.7	1.5	-5,350,152
0~1,200만원	1,612,639	6.2	0.4	0.4	0.1	0.1	-90,506
1,200~4,600만원	6,054,703	23.2	2.4	2.2	1.0	0.8	-2,198,299
4,600~8,800만원	1,439,563	61.1	9.4	8.5	7.1	6.2	-2,050,557
8,800만원~1.5억원	299,735	109.4	23.4	21.2	20.4	18.2	-777,850
1.5~3억원	70,133	198.3	56.0	53.7	52.2	50.0	-189,359
3~5억원	11,353	375.2	124.7	122.5	119.8	117.5	-30,653
5~10억원	3,996	864.8	327.8	325.6	320.5	318.3	-10,789
10억원 초과	792	5,601.8	2,455.4	2,453.2	2,407.8	2,405.6	-2,138

주: 1) 위 표는 각 과표구간의 평균액이며, 실제 추계시 더욱 세분화된 구간(100여개) 활용

2)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자 중 종합소득신고를 하는 자(중복자)를 제외한 인원

다.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 세수효과 추정방법

- 소득세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의 1건당 평균을 추정한 후, 이를 기준으로 개정안에 따라 산출된 1건당 세수효과에 각 구간별 신고 건수를 곱해 총 세수효과를 추계
- 별도세율로 과세됨에 따라, 소득세 기본세율 및 과표구간 조정에 영향을 받지 않는 분리과세 대상 과세표준(주식 양도소득, 고율과세대상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⁸⁰⁾)은 제외하고, 동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개정안에 따른 산출세액 추계

80) 1년 미만 보유 양도차익, 2년 미만 보유 양도차익, 미등기 양도

- 별도세율로 분리과세 되는 비중이 전 과표구간에 균등하게 분포하고, 건당 과세표준이 일정하다고 가정함에 따라, 별도세율로 과세되는 주식(19.31%⁸¹⁾)과 고율과세 대상 자산(1.97%⁸²⁾)의 합계(21.28%)만큼 신고건수 및 과세표준이 감소
- 개정안에 따른 총세수효과(총결정세액변화분)는 총산출세액변화분에서 산출세액 중 주요 세액공제·감면대상액의 비중을 차감하여 추정
 - 총 산출세액 중 주요 세액감면항목(8년이상 자경농민, 공익사업용토지에 대한 감면)의 비중은 2016~2020년 평균, 8.5%

개정안에 따른 양도소득세 결정세액 변화분, 2020년 귀속 기준

(단위: 건, 백만원)

과세표준 구간별 ¹⁾	신고 건수 ²⁾	1건당 과세표준	현행 1건당 산출세액	개정안 1건당 산출세액	총 산출세액 변화분	세액공제· 감면비중	총 결정세액 변화분
	A	B	C	D	$E=(D-C) \times A$	F	$G=E \times (1-F)$
합계	655,306	125.3	19.8	18.4	-589,103	8.5%	-539,181
0~1,200만원	221,938	0.1	0.3	0.3	-10,429	8.5%	-9,545
1,200~4,600만원	205,557	0.2	2.8	2.5	-81,691	8.5%	-74,769
4,600~8,800만원	94,924	0.8	10.1	9.5	-142,107	8.5%	-130,064
8,800만원~1.5억원	55,848	1.7	25.1	23.7	-146,869	8.5%	-134,423
1.5~3억원	42,435	2.6	59.9	58.5	-114,573	8.5%	-104,864
3~5억원	16,511	7.0	127.1	125.7	-44,578	8.5%	-40,801
5~10억원	10,797	12.7	253.8	252.4	-29,152	8.5%	-26,681
10억원 초과	7,297	19.0	1,384.2	1,382.8	-19,703	8.5%	-18,033

주: 1) 위 표는 각 과표구간의 평균액이며, 실제 추계시 더욱 세분화된 구간(100여개) 활용

2)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신고건수 합계에서 분리과세분을 제외한 신고건수

81) 총양도소득 대비 주식양도소득 비중, 2016~2020년 평균

82) 총양도차익 대비 고율과세대상 양도차익 비중, 2016~2020년 평균

2

기본공제 확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 주요내용

- 기본공제대상 연령기준 및 소득기준 완화, 1인당 기본공제금액 상향

2. 비용추계 결과

- 기본공제 대상자 1인당 기본공제금액을 확대하고, 기본공제대상 소득기준 및 직계비속 등의 연령기준을 완화함에 따라 소득세는 2023년 3조 8,359억원, 2027년 3조 9,585억원 등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총 18조 7,270억원(연평균 3조 7,454억원)의 재정수입 감소 예상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소득세

(단위: 억원)

구분	2023	2024	2025	2026	2027	누적	연평균
기본공제 확대	-38,359	-34,910	-36,437	-37,979	-39,585	-187,270	-37,454

3. 재정수반요인

- 기본공제 확대
 - 기본공제 대상자의 1인당 기본공제금액을 확대하고, 기본공제대상 소득기준 및 직계비속의 연령기준을 완화함에 따라 소득세수의 감소가 예상됨
 - 기본공제 대상자의 1인당 기본공제금액을 현행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하고, 거주자의 직계비속과 형제자매의 연령기준을 20세 이하에서 24세 이하로 완화하며, 소득요건을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원)이하에서 2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700만원)으로 완화

4. 비용추계의 전제

- 2022년 중 개정안이 통과되어 2022년 귀속소득 분부터 개정안이 적용되는 것으로 전제하고, 세수효과는 징수기준에 따라 집계
 - 개정안의 부칙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이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 신고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추계
 - 2022년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수감소효과는 2023년부터 발생(징수기준)
- 국세통계연보 및 재정패널조사자료를 이용하여 기본공제 확대에 따른 세수효과 추계
 - 국세통계연보는 현행 기준 총급여규모별 기본공제 신청자 수 및 기본공제금액 자료만을 제공하므로, 소득기준 및 연령기준 완화 등에 따른 세수효과는 재정패널조사 원자료(2020년)를 활용한 모의실험분석을 통해 추계
 - 모의실험분석을 통해 추계함에 따라 실제 소득세 신고자의 소득규모별 기본공제대상자 수 변화에 따라 추계결과는 달라질 수 있음
- 향후 5년간 세수효과는 최근 5년간 기본공제금액 증가율을 따를 것으로 가정
- 기본공제 확대에 따른 행태변화는 반영하지 않음

5. 비용추계 상세 내역

- 재정패널조사 원자료를 활용한 모의실험분석을 통해 현행 및 개정안 기준의 1인당 공제금액을 추계한 후, 공제금액 변화분에 한계세율 및 기본공제 신청자수를 곱하여 세수효과 추계
 - 재정패널조사는 2020년 조사자료가 가장 최근 공표된 자료이며, 2020년 조사자료는 직전 연도(2019년)를 기준으로 가구의 일반적인 사항, 경제활동상태, 소득, 가계지출현황, 복지현황 등을 조사하는 패널자료임
 - 먼저 모의실험분석을 통해 총급여규모별 현행 및 개정안의 1인당 기본공제금액을 추계하여 개정안에 따른 기본공제금액 변화율(A) 산출

- 재정패널조사의 2019년 기준 가구의 소득 및 가구원 구성을 바탕으로 총급여규모별로
현행 및 개정안에 따른 기본공제금액 추계
- 기본공제는 모두 가구주가 받는 것으로 가정
- 국세통계연보의 총급여규모별 1인당 기본공제금액(현행 실적치, B)에 개정안에 따른 기본
공제금액 변화율(A)을 곱해 개정안에 따른 공제금액 증가분을 산출(C)한 후, 한계세율과
기본공제 신청자수를 곱한 값을 합산하여 총 세수효과 추계
 - 기본공제의 소득기준 완화 시 추가공제 대상자 수도 현행보다 증가할 수 있으므로,
추가공제에 대해서도 공제금액 증가분을 산출하여 세수효과 추계

기본공제 확대에 따른 세수효과 추계: 근로소득세, 2020년 기준

(단위: 명, 백만원)

총급여액 규모	2020년 귀속 국세통계 기본공제 신청자 수 ¹⁾	1인당 기본공제금액			개정안에 따른 1인당 소득공제금액 변화분	현행 1인당 과세표준	한계세율 (%)	세수효과 (억원)
		현행 ²⁾	개정안 ³⁾	변화율(%) ⁴⁾				
	A	B	C=B×(1+D%)	D	E=C-B	F	G	H=-(E×G)×A
합계	10,575,815	-	-	-	-	-	-	-20,716
1천만 이하	-	-	-	-	-	5	6	-
1.5천만 이하	149,279	1.5	2.1	38.3	0.57	5	6	-51
2천만 이하	667,657	1.6	2.2	38.9	0.61	7	6	-246
3천만 이하	2,450,878	1.7	2.4	39.1	0.66	11	6	-977
4천만 이하	1,760,699	2.0	2.8	38.4	0.78	17	15	-2,061
4.5천만 이하	767,339	2.5	3.5	37.8	0.95	21	15	-1,089
5천만 이하	685,199	2.9	4.0	39.5	1.15	24	15	-1,177
6천만 이하	1,108,669	3.4	4.8	40.2	1.38	30	15	-2,290
8천만 이하	1,458,814	4.2	5.8	40.1	1.67	41	15	-3,648
1억 이하	805,900	4.5	6.4	43.5	1.94	58	24	-3,753
2억 이하	654,691	4.7	6.9	46.5	2.21	95	35	-5,056
3억 이하	44,512	4.4	5.8	33.3	1.45	201	38	-245
5억 이하	16,247	4.1	5.5	33.3	1.37	330	40	-89
10억 이하	4,954	4.0	5.3	33.3	1.32	608	42	-27
10억 초과	976	3.6	4.8	33.3	1.21	1,834	45	-5

주: 1)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이 있는 자 중 종합소득세 신고자(중복자) 제외한 인원 추정치

2) 2021년 국세통계연보(2020년 귀속)의 총급여규모별 1인당 기본공제금액

3) 현행 총급여규모별 1인당 기본공제금액에 모의실험분석을 통해 산출한 개정안에 따른 기본공제금액액 변화율(D)을 곱하여 추계

4) 재정패널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총급여규모별 현행 및 개정안에 따른 1인당 기본공제금액을 추계하여 개정안에 따른 변화율 산출

자료: 국세청, 「2021 국세통계연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패널조사 제13차」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추가공제 확대에 따른 세수효과 추계: 근로소득세, 2020년 기준

(단위: 명, 백만원)

총급여액 규모	추가공제 신청자 수		1인당 추가공제금액		현행 1인당 과세표준	한계세율 (%)	세수효과 (억원)
	현행 ¹⁾ (국세통계연보)	개정안	현행 ²⁾	개정안 ³⁾			
	A	B	C	D	E	F	$G=(C \times F \times A)-(D \times F \times B)$
합계	2,902,087	3,189,933	-	-	-	-	-937
1천만 이하	0	-	-	-	5	6	-
1.5천만 이하	8,045	8,249	0.7	0.7	5	6	0
2천만 이하	115,066	116,406	0.8	0.8	7	6	-1
3천만 이하	570,408	595,760	0.8	0.8	11	6	-20
4천만 이하	354,343	362,995	1.0	1.0	17	15	-21
4.5천만 이하	122,837	130,998	1.5	1.5	21	15	-18
5천만 이하	123,087	140,301	1.7	1.8	24	15	-71
6천만 이하	275,452	275,886	1.9	1.9	30	15	-1
8천만 이하	560,257	710,230	2.1	2.1	41	15	-472
1억 이하	395,983	472,500	2.3	2.2	58	24	-333
2억 이하	347,073	347,073	2.3	2.3	95	35	0
3억 이하	20,034	20,034	2.2	2.2	201	38	0
5억 이하	7,015	7,015	2.1	2.1	330	40	0
10억 이하	2,120	2,120	2.0	2.0	608	42	0
10억 초과	367	367	1.9	1.9	1,834	45	0

주: 1)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이 있는 자 중 종합소득세 신고자(중복자) 제외한 인원 추정치

2) 2021년 국세통계연보(2020년 귀속)의 총급여규모별 1인당 추가공제금액

3) 현행 총급여규모별 1인당 추가공제금액에 모의실험을 통해 추정한 개정안에 따른 추가공제금액 변화율을 곱하여 산출
자료: 국세청, 「2021 국세통계연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패널조사 제13차」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기본공제 확대에 따른 세수효과 추계: 종합소득세, 2020년 기준

(단위: 명, 백만원)

종합소득 규모	2020년 귀속		1인당 기본공제금액				개정안에 따른 1인당 소득공제금액 변화분	현행 1인당 과세표준	한계세율 (%)	세수효과 (억원)
	국세통계 기본공제 신청자 수 ¹⁾	A	B	C=B×(1+D%)	D	변화율 ⁴⁾				
합계		6,761,743	-	-	-	-	-	-	G	H=- (E×G)×A
1천만 이하		2,492,373	1.9	2.6	38.7		0.73	3	6	-1,092
2천만 이하		1,549,626	2.5	3.4	37.3		0.92	10	6	-857
3.5천만 이하		1,131,262	2.8	4.0	39.4		1.12	19	15	-1,903
4천만 이하		207,119	3.1	4.4	43.7		1.35	29	15	-418
5천만 이하		294,046	3.2	4.6	42.3		1.36	36	15	-598
6천만 이하		206,033	3.4	4.8	42.8		1.44	45	15	-444
8천만 이하		266,039	3.5	5.2	45.8		1.62	58	24	-1,035
1억 이하		163,301	3.6	5.1	39.4		1.43	77	24	-561
2억 이하		267,103	3.6	5.2	43.3		1.58	123	35	-1,475
3억 이하		64,428	3.6	4.8	33.4		1.20	229	38	-293
5억 이하		40,109	3.5	4.7	33.3		1.17	364	40	-188
10억 이하		8,324	3.4	4.6	33.3		1.15	656	42	-107
10억 초과		11,047	3.1	4.2	33.3		1.04	2,591	45	-52

주: 1)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이 있는 자

2) 2021년 국세통계연보(2020년 귀속)의 종합소득규모별 1인당 기본공제대상금액

3) 종합소득규모별 1인당 기본공제대상금액에 모의실험분석을 통해 산출한 개정안에 따른 기본공제금액 변화율(D)을 곱하여 추계

4) 재정패널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모의실험분석을 통해 산출한 기본공제금액 변화율이며, 종합소득금액 10억원을 초과하는 구간의 경우 표본 수가 적거나 없어 모의실험 수행이 어렵기때문에, 해당구간은 10억 이하 구간의 기본공제금액 증가율(33.3%)과 동일할 것으로 가정
자료: 국세청, 「2021 국세통계연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패널조사 제13차」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향후 5년간 세수효과는 최근 5년 평균 기본공제금액 증가율(근로소득세 4.1%, 종합소득세 4.6%)을 따를 것으로 가정

개정안에 따른 세목별 재정수입 변화

(단위: 억원)

구분	2023	2024	2025	2026	2027	누적	연평균
근로소득세	-24,412	-25,407	-26,444	-27,522	-28,644	-132,430	-26,486
종합소득세	-10,319	-10,791	-11,285	-11,802	-12,342	-56,539	-11,308
합계	-34,731	-36,199	-37,729	-39,324	-40,987	-188,969	-37,794

주: 소득 발생연도 기준

- 소득세의 징수시점을 반영하여 세수효과를 합산할 경우 소득세는 2023~2027년 동안 총 18.7조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

개정안에 따른 세목별 재정수입 변화

(단위: 억원)

구분	2023	2024	2025	2026	2027	누적	연평균
근로소득세	-23,455	-24,412	-25,407	-26,444	-27,522	-127,240	-25,448
종합소득세	-14,904	-10,498	-11,030	-11,535	-12,063	-60,029	-12,006
합계	-38,359	-34,910	-36,437	-37,979	-39,585	-187,270	-37,454

주: 소득세 징수기준

의료비 세액공제율 인상 및 대상 확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 주요내용

- 근로자에 대한 임신·출산 등 의료비 세액공제의 공제율 인상 및 공제대상 확대

2. 비용추계 결과

- 근로자에 대한 임신·출산 등 관련 의료비 세액공제의 공제율 및 공제대상을 확대함에 따라, 소득세는 2023년 1,319억원, 2027년 1,771억원 등 2023년에서 2027년까지 5년간 총 7,606억원(연평균 1,521억원)의 재정수입 감소 예상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소득세

(단위: 억원)

구분	2023	2024	2025	2026	2027	누적	연평균
의료비 세액공제율 인상 및 공제대상 확대	-1,319	-1,377	-1,505	-1,634	-1,771	-7,606	-1,521

3. 재정수반요인

- 근로자에 대한 임신·출산 등 의료비 세액공제의 공제율 인상 및 공제대상 확대
 -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의 세액공제율 인상(15% → 50%), 난임시술비의 세액공제율 인상(30% → 50%), 산후조리원 비용에 대한 공제대상 확대 및 공제율 인상(총급여 7천만원 이하 15%, 200만원 한도 → 총급여 1억원 이하 50%, 한도 삭제)하고자 함에 따라 소득세수의 감소가 예상
 - 위 세 항목의 합계액의 의료비 한도는 연 2,000만원으로 함

의료비 세액공제를 인상 및 대상 확대 개정안

	현행	개정안
	세액공제율	세액공제율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	15%	50%
난임시술비	30%	50%
산후조리원 비용	15%, 200만원 한도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	50%, 한도 삭제 (총급여 1억원 이하 근로자만)

4. 비용추계의 전제

- 개정안이 2022년 중 통과되어, 2023년 귀속소득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전제하고, 세수효과는 징수기준에 따라 집계
 - 2023년 귀속소득에 대한 세수가 당해연도에 전액 징수되는 것으로 전제
- 동 세법개정안 대상자에 대한 의료비 지출액은 의료비 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전제
 -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한 의료비 지출액에 대해 신청 가능, 임신·출산 및 난임시술을 한 해에는 이를 초과한다고 가정

5. 비용추계 상세 내역

가. 의료비 공제 신청 현황

- 근로자의 의료비 공제 신청현황
 - 2020년 기준 근로자 중 의료비 공제 신청 인원 및 공제대상 금액은 각각 251.1만명, 5.7조원, 의료비 공제세액 금액은 이의 15%인 0.9조원
 - 1인당 의료비 공제대상 금액은 약 230만원, 1인당 공제세액은 약 30만원

의료비 세액공제 신청현황: 2020년 귀속소득 기준

(단위:명, 백만원, %)

	의료비 공제대상 인원 (A)	의료비 공제대상 금액 (B)	의료비 공제세액 금액 (C)	의료비 실효공제율 (D=C/B,%)	1인당 의료비 공제대상 (E=B/A)	1인당 의료비 공제세액 (F=C/A)
합계	2,511,393	5,745,519	857,516	14.9	2.3	0.3

자료: 국세청, 「2021 국세통계연보」, 2021

나.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 및 난임시술비 현황

- 의료비 공제신청 대상이 되는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 난임시술비는 총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에 해당, 총 의료비 본인부담금 중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는 0.7%, 난임 관련 비용은 0.4%에 해당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 난임 시술비 현황: 2019~2021년

(단위: 억원, %)

연도	구분	총진료비	임신·출산 의료비	난임 시술 의료비	B/A	C/A
		(A)	(B)	(C)	(D)	(E)
2019	본인부담금	212,229	1,438	837	0.7	0.4
	공단부담금	648,881	10,524	1,792	1.6	0.3
	소계	861,110	12,113	2,628	1.4	0.3
2020	본인부담금	214,223	1,461	958	0.7	0.4
	공단부담금	652,916	10,364	2,039	1.6	0.3
	소계	867,139	12,135	2,997	1.4	0.3
2021	본인부담금	n.a.	1,372	1,075	n.a.	n.a.
	공단부담금	n.a.	10,117	2,296	n.a.	n.a.
	소계	n.a.	11,856	3,371	n.a.	n.a.

주: 1) 임신 출산 진료비는 임신 진단 후 출산까지 지출된 의료비로서, 2019~2021년 실진료일 기준 연도별 총진료비(급여비), 본인부담금, 공단부담금의 의과와 약제비 합계임. 2019~2022.6 분만한 대상자의 분만전 280일부터 분만일까지의 진료비를 실진료일 기준으로 발체(2022.6월 청구분까지 반영)함에 따라 유산 등의 분만결과가 포함되지 않은 대상자는 제외됨

2) 난임진료의 경우 F021 특정기호 기준으로 발체, 난임진료에 포함된 약제비(주사처방)의 경우 F021코드에 포함되나, 현재 난임진료시 약제비는 비급여로 발체 불가능함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임신·출산 의료비, 난임시술 의료비 세액공제율 인상의 세수효과

- 국세통계연보상 2020년 귀속 소득 기준 근로소득세 신고현황 자료 중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금액에 전체 의료비 중 임신·출산 및 난임시술 의료비의 비중을 적용 한 후 각각의 세액공제율 인상분을 반영해 추계
 - (임신·출산 의료비 세수효과) 전체 의료비 공제대상 금액에 총진료비 대비 임신·출산 의료비 비중(0.7%)을 곱해 추정한 공제대상 금액에 세액공제율 인상폭 35%p (50%-15%)을 곱해서 추정
 - (난임시술 의료비 세수효과) 전체 의료비 공제대상 금액에 총진료비 대비 난임시술 의료비 비중(0.4%)을 곱해 추정한 공제대상 금액에 세액공제율 인상폭 20%p (50%-30%)을 곱해서 추정
- 향후 5년간 임신·출산 및 난임시술 의료비는 최근 3년간 본인부담금 임신·출산 및 난임시술 진료비 증가율(3.7%)을 따른다고 가정, 그 결과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 역시 동 증가율을 따름

임신·출산 및 난임시술 의료비 세액공제율 인상의 세수감소 효과: 2020년 귀속

(단위: 억원, %)

의료비 공제대상 금액 (A)	총 진료비 대비 비중		의료비 공제대상금액		의료비 공제세액 ¹⁾		합계
	임신·출산 의료비 비중 (B)	난임 시술비 비중 (C)	임신·출산 의료비 (D=A×B)	난임 시술비 (E=A×C)	임신·출산 의료비 (F=D×35%p)	난임시술비 (G=E×20%p)	
57,455.2	0.70	0.40	402.2	229.8	140.8	46.0	186.7

주: 1) 1인당 결정세액과 비교한 결과 세액공제액을 초과한 1인당 결정세액을 납부하고 있어, 동 개정안의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음

다. 산후조리원 비용 공제대상 확대 및 공제율 인상의 세수효과 추계

■ 산후조리원 평균 비용 현황

- 산후조리원 평균 비용은 보건복지부의 「2021 산후조리실태조사」에 따르면, 2021년은 243.1만원임

산후조리원 평균 비용

(단위: 만원, %)

	2018	2021	연평균 증가율
전체	220.8	243.1	3.3

자료: 보건복지부 「2021 산후조리실태조사」, 2021.11

■ 산후조리원 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신청현황

- 산후조리원 비용 의료비 세액공제 신청 인원은 국세통계연보의 출산입양자 공제신청 근로자수(15.9만명)에 산모의 산후조리원 이용 비율(81.2%) 및 총 인원대비 총급여 1억원 이하 근로자 비중을 곱하여 추계
- 이 중 총급여 7천만원 이하, 총급여 7천만원 초과 1억원 미만 인원에 대한 정보는 국세통계연보상 총급여 규모별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신고인원 비중을 활용하여 추계

산후조리원 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신청인원 추정: 2020년 귀속

출산입양자 공제신청 근로자 수 ¹⁾ (A)	산후조리원 이용률 (B)	산후조리원 비용 세액공제 신청인원수 추정(C=A×B)	산후조리원 비용 세액공제 신청인원수 중 총급여 1억원 이하 추정 ²⁾
158,819명	81.2%	129,019명	122,963명

주: 1) 국세통계연보의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신고 인원 중 출산입양자 공제신청 근로자 수의 비중, 출산 입양자 공제는 해당연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자녀가 있으면, 첫째는 30만원, 둘째는 50만원, 셋째 이상은 7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는 제도

2) 총급여 1억원 이하 인원수 추계방법은 다음 표 참조

자료: 국세청, 「2021 국세통계연보」, 2021, 보건복지부 「2021 산후조리실태조사」, 2021.11

총급여 규모별 산후조리원 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신청인원 추정: 2020년 귀속

총급여 규모별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신고인원		산후조리원 비용 세액공제 신청인원수 추정	
	명(A)	%(B)	명 ¹⁾ (C)	%(D)
합계	19,495,359	100.0	129,019	100.0
총급여 1억원 이하	18,580,239	95.3	122,963	95.3
총급여 7천만원 이하	16,850,491	86.4	111,516	86.4
총급여 7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729,748	8.9	11,447	8.9
총급여 1억원 초과	915,120	4.7	6,056	4.7

주: 1) 산후조리원 비용 세액공제 신청인원수 추정치 전체에 (B)를 곱하여 추정, (B)는 국세통계연보의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신고 인원의 총급여 규모별 신청 인원수 비중을 활용

자료: 국세청, 「2021 국세통계연보」, 2021

■ 산후조리원 비용에 대한 공제대상 확대 및 공제율 인상의 세수효과 전망

- 1인당 평균 산후조리원 비용에 세액공제율 변화분 및 해당 공제 신청인원수 추정치를 곱하여 추계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구간에서는 세액공제 한도금액인 200만원까지는 35%p (=50%-15%)의 세액공제율 인상분을 곱하고, 금액 한도 삭제에 따라 2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5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
 - 총급여 7천만원 초과 총급여 1억원 이하 구간에서는 1인당 평균 산후조리원 비용 (243.1만원)에 5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함

산후조리원 비용 공제대상 확대 및 공제율 인상의 세수 감소효과: 2020년 귀속

총급여 규모별	산후조리원 비용 세액공제 신청인원수 추정 (A)	산후조리원 1인당 평균 이용금액 (B)	적용 세액공제율 (C)	세액공제액 추계 ²⁾ (D=A×B×C)
	명	만원	%	억원
합계	122,963	-	-	1,160
총급여 7천만원 이하	111,516	243.1	35%/50% ¹⁾	1,021
총급여 7천만원 ~ 1억원	11,447	243.1	50%	139

주: 1) 산후조리원 평균비용 200만원 이하분은 기존에 1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고 있었으나, 이번엔 50%로 세액공제율이 확대됨에 따라 차이분 35%p(50-15)만큼의 세액공제율을 추가로 적용받고, 산후조리원 평균비용 200만원 초과분은 기존의 200만원 한도금액 삭제에 따라 43.1만원에 대해서는 5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

2) 1인당 결정세액과 비교한 결과 세액공제액을 초과한 1인당 결정세액을 납부하고 있어, 동 개정안의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음

■ 산후조리원 비용 공제대상 확대 세수효과의 향후 5년 전망 추계

- 향후 5년간 1인당 산후조리원 평균 비용 증가율은 최근 3년간 연평균 증가율(3.3%)을 따른다고 가정, 향후 5년간 공제신청인원 증가율은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2020~2070)의 출생아수 중위추계 증가율을 활용
-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출생아수는 ① 출산율-중위, ② 기대수명-중위 ③ 국제순이동-중위 기준을 전제로 추정한 수치를 활용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의 출생아수 전망: 중위기준

(단위: 천명)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출생아수	275	261	246	233	234	248	261	274
전년대비 증감률	-	-5.1	-5.7	-5.3	0.4	6.0	5.2	5.0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21.12

4

비과세 기준 상향: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 주요내용

- 어로어업 및 양식어업에 대한 비과세소득 기준금액 상향

2. 비용추계 결과

- 어업소득에 대해 수입금액 10억원까지 비과세함에 따라 소득세는 2024년 181억원, 2025년 192억원 등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총 1,024억원(연평균 205억원)의 재정수입 감소 예상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소득세

(단위: 억원)

	2024	2025	2026	2027	2028	누적	연평균
어업소득 비과세 확대	-181	-192	-204	-217	-232	-1,024	-205

3. 재정수반요인

- 어업소득에 대한 비과세소득 기준금액 상향조정
 - 「소득세법」 제12조는 비과세소득을 규정하고 있으며, 개정안은 동법 제12조제2호사목의 어로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어로어업 및 양식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변경하고, 어업소득의 비과세소득 기준금액을 수입금액 10억원까지 상향함에 따라 소득세수의 감소가 예상됨
 - 현 시행령은 비과세 한도를 양식어업, 어로어업 각각 소득금액 3천만원, 5천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개정안은 어업소득에 대한 비과세소득 기준금액을 수입금액 10억원으로 상향하고자 함

4. 비용추계의 전제

- 2022년 중 개정안이 통과되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가정
- 개정안에 따른 세수감소효과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어업영위자의 어업형태(어로 어업, 양식어업)별 총수입금액, 소득금액 등에 관한 자료가 필요하지만, 자료의 부재로 가정을 통해 추정
 - 2020년 귀속 어업영위자의 소득금액 규모별 사업소득 신고현황(국세청 제출자료) 자료를 바탕으로 양식어업 및 어로어업 소득을 추정
 - 어업영위자의 소득이 어로어업 소득과 양식어업 소득만 있는 것으로 가정
 - 다만, 신고자를 ① 어로어업 소득만 있는 자, ② 양식어업 소득만 있는자, ③ 어로어업, 양식어업 소득이 모두 있는 자로 구분할 수 없어, 일정비율로 어로어업 소득과 양식어업 소득이 모두 있는 것으로 가정하여 세수효과 추계
- 비과세 제도 변화에 따른 행태변화는 고려하지 않음
- 실제 어업소득 신고자의 어업형태별 소득발생 여부 및 어업형태별 총수입금액·소득금액, 행태변화 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음

5. 비용추계 상세 내역

가. 추계대상 및 방법

- (추계대상) 양식어업 및 어로어업의 비과세소득 기준금액 상향조정에 따른 소득세 감면액
- (추계방법) 2020년 귀속 어업 영위자의 소득금액 규모별 사업소득 신고현황 자료⁸³⁾를 이용하여 양식어업 및 어업소득 추정 후, 실효세율을 반영하여 현행 및 개정안에 따른 소득세 감면액 추계

83) 국세청 제출자료

- 최근 5년간(2016~2020년) 연평균 양식어업 소득 증가율 8.2%, 어로어업 소득 증가율 -5.1%에 따라 각각 소득세 감면액이 증감한다고 가정
 - 「어가경제조사」(통계청)의 어로어가 및 양식어가 어업소득금액 사용

나. 상세내역

- 어업영위자의 소득은 어로어업·양식어업 소득만 있는 것으로 가정
- 2020년 귀속 어업영위자의 소득금액 규모별 총수입금액(신고현황자료)에 어업 총수입금액 중 양식어업과 어로어업이 차지하는 비중⁸⁴⁾을 적용하여 양식어업 총수입금액을 추정

어업영위자의 사업소득 신고 현황: 2020년 귀속

(단위: 명, 백만원)

어업소득규모	건수(A)	총수입금액 (B)	총소득금액 (C)	1인당 총수입금액 (D)	1인당 총소득금액 (E)	총수입금액 대비 총소득금액 (F=E/D)
합계	11,279	3,149,274	280,490	279	25	8.9%
0~1천만원	6,593	374,525	21,306	57	3	5.7%
1~2천만원	1,465	266,651	20,849	182	14	7.8%
2~4천만원	1,295	452,399	37,117	349	29	8.2%
4~6천만원	631	378,439	30,888	600	49	8.2%
6~8천만원	387	320,457	26,888	828	69	8.4%
8천만원~1억원	245	235,858	22,084	963	90	9.4%
1~2억원	509	714,952	68,645	1,405	135	9.6%
2~3억원	93	191,164	21,891	2,056	235	11.5%
3~5억원	45	136,699	17,326	3,038	385	12.7%
5억원 초과	16	78,131	13,496	4,883	844	17.3%

주: 1인당 1건의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가정

자료: 국세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84) 어로어가의 어업총수입 중 어로수입과 양식수입 각각의 비중을 사용하며, 어로수입은 40.3%이고 양식수입은 59.0%를 적용(통계청, 「어가경제조사」, 2020)

- 소득규모별 양식어업 총수입금액(추정치)에 신고현황자료의 어업 총수입금액 대비 총소득 금액 비중을 곱하여 소득규모별 양식어업의 총소득금액 추정
- 양식어업과 어로어업의 총수입금액 및 총소득금액(추정치)을 바탕으로 현행 및 개정안에 따른 소득세 감면액을 추정하여 세수효과 산출
 - 비과세대상 1인당 총소득금액에 국세통계연보의 종합소득규모별 실효세율(=결정세액/종합소득금액)을 반영하여 현행 및 개정안에 따른 소득세 감면액 추정

■ (양식어업 소득 비과세에 따른 소득세 감면액 산출) 양식어업 소득에 대한 비과세소득 한도를 총수입금액 10억원으로 상향조정함에 따라 2020년 기준 111억원의 소득세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

양식어업 소득 비과세에 따른 소득세 감면액 산출: 2020년 기준

(단위: 백만원, %)

어업소득 규모	1인당 양식어업 총수입금액 ¹⁾	1인당 양식어업 총소득금액	비과세소득		실효세율 ³⁾	세수효과
			현행	개정안 ²⁾		
	$G=D \times 59\%$	$H=G \times F$	$I=\min(30, H)$	J	K	$L=(J-I) \times K \times A$
합계	-	-	-	-	-	11,104
0~1천만원	34	2	2	2	1.4%	0
1~2천만원	107	8	8	8	2.5%	0
2~4천만원	206	17	17	17	5.5%	0
4~6천만원	354	29	29	29	7.8%	0
6~8천만원	489	41	30	41	10.2%	433
8천만원~1억원	568	53	30	53	12.3%	699
1~2억원	829	80	30	80	17.3%	4,376
2~3억원	1,213	139	30	173	23.4%	3,116
3~5억원	1,792	227	30	173	27.2%	1,750
5억원 초과	2,881	498	30	173	31.9%	730

주: 1) 2020년 어로어가의 어업총수입 중 양식수입의 비중 59% 적용

2) 1인당 총수입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해당 구간의 총소득금액 전액 비과세, 1인당 총수입금액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비과세 한도 10억원에 신고현황 자료(5억원 초과구간)의 총수입금액 대비 총소득금액 비중을 곱해 비과세 대상 총소득금액 추정(10억원×17.3%=1.73억원)하여 사용

3) 2020년 귀속 기준 소득규모별 종합소득금액 대비 결정세액 비율

- (어로어업 소득 비과세에 따른 소득세 감면액 산출) 어로어업 소득에 대한 비과세소득 한도를 총수입금액 10억원으로 상향조정함에 따라 2020년 기준 35억원의 소득세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

어로어업 소득 비과세에 따른 소득세 감면액 산출: 2020년 기준

(단위: 백만원, %)

어업소득 규모	1인당 어로어업 총수입금액 ¹⁾	1인당 어로어업 총소득금액	비과세소득		실효세율 ³⁾	세수효과
			현행	개정안 ²⁾		
	$G=D \times 40.3\%$	$H=G \times F$	$I=\min(50, H)$	J	K	$L=(J-I) \times K \times A$
합계	-	-	-	-	-	3,494
0~1천만원	23	1	1	1	1.4%	0
1~2천만원	73	6	6	6	2.5%	0
2~4천만원	141	12	12	12	5.5%	0
4~6천만원	242	20	20	20	7.8%	0
6~8천만원	334	28	28	28	10.2%	0
8천만원~1억원	388	36	36	36	12.3%	0
1~2억원	566	54	50	54	17.3%	384
2~3억원	828	95	50	95	23.4%	977
3~5억원	1,224	155	50	173	27.2%	1,505
5억원 초과	1,968	340	50	173	31.9%	628

주: 1) 2020년 어로어가의 어업총수입 중 어로수입의 비중 40.3% 적용

2) 1인당 총수입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해당 구간의 총소득금액 전액 비과세, 1인당 총수입금액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비과세 한도 10억원에 신고현황 자료(5억원 초과구간)의 총수입금액 대비 총소득금액 비중을 곱해 비과세 대상 총소득금액 추정(10억원×17.3%=1.73억원)하여 사용

3) 2020년 귀속 기준 소득규모별 종합소득금액 대비 결정세액 비율

II

법인과세 분야

1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삭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 주요내용

- 일반법인에 대한 이월결손금 공제한도(각 사업연도소득의 60%) 삭제

2. 비용추계 결과

- 현행 각 사업연도 소득의 60%로 규정된 일반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를 삭제함에 따라, 법인세는 2023년 342억원, 2027년 3,925원 등 5년간 총 1조 6,042억원(연평균 3,208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법인세

(단위: 억원)

구분	2023	2024	2025	2026	2027	누적	연평균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삭제	-342	-3,925	-3,925	-3,925	-3,925	-16,042	-3,208

3. 재정수반요인

-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삭제
 - 개정안은 이월결손금 공제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안에 따른 경우 일반법인은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까지 이월결손금 공제 가능
 - 공제한도가 삭제되면 '각 사업연도 소득' 범위 내에서 공제되므로, 한도가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까지 공제한도 상향되는 효과와 동일

4. 비용추계의 전제

- 개정안이 2022년부터 귀속소득부터 적용된다고 가정하며, 세수효과는 징수기준에 따라 집계
 - 2023년 귀속소득에 대한 세수효과는 법인세 징수기준에 따라 2024년에 발생함
 - 단, 중간예납에 의해 일부 세수효과가 2023년에 발생
- 국세청이 수시공개한 2021년 법인세 신고자료를 바탕으로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 삭제에 따른 세수효과를 추계
 - 일반법인(중견기업·대기업)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가 삭제될 경우, 이월결손금 공제액 증가(=과세표준 감소)에 따라 법인세 감소가 예상됨
 - 2021년 법인세 신고기준(귀속연도 2020년) 일반법인의 1법인당 이월결손금 공제액을 기준으로 공제한도 삭제 효과를 비례적으로 고려하되, 대상기업 중 22.6%만 한도 삭제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가정
 - 한도삭제에 따른 1법인당 공제액 증가: 12.7억원 = $19.0 \times (100 - 60) / 60$
 - 현행 한도에 미달하는 기업은 이월결손금 한도 삭제에 따른 세수효과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므로, 현행 한도(60%)에 걸리는 기업 비율(22.6%) 적용

※ 이월결손금 한도를 적용받는 기업의 비율(22.6%) 산출 방법

- 한국상장회사협의회, 「TS2000」에서 코스파·코스닥 일반기업의 2009~2020년 법인세차감전 당기순이익을 추출(2019년 이전 이월결손금 공제기한은 10년)
- t 시점 발생한 결손금은 이월되며, t+1 시점 이후 당기순이익이 발생하면 결손금 공제(한도: 2015년 이전 100%, 2016~2017년 80%, 2018년 이후 60%)
- 2020년 당기순이익과 미처분 이월결손금을 비교하여, 흑자법인 중 결손금 공제를 적용받으며 공제한도(60%)를 적용받은 기업 수 비중(22.6%) 산출

- 개정안에 따라 증가하는 이월결손금 공제액 규모가 향후 유지될 것으로 가정하고, 법인세 실효세율을 적용하여 세수효과 추계
 - 이월결손금 공제액 증가분만큼 과세표준이 감소하므로, 공제액 증가액에 일반기업의 2021년 신고기준 법인세 실효세율($\frac{\text{총부담세액}}{\text{과세표준}}$, 20.6%)을 곱해 세수효과 계산

- 일반법인의 실효세율이 향후에도 20.6%를 유지할 것으로 가정

■ 최종적인 납부시기를 고려하여 연도별 세수효과 배분

- 법인세 납부는 사업연도 다음 해에 이루어지지만, 중간예납을 통해 세수효과 중 8.7%가 당해연도에 발생한다고 전제

5. 비용추계 상세 내역

■ (제도개요) 일반법인에 대한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는 2016년 80%로 도입된 후 2018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60%까지 축소

- 일반법인에 대한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변천
 - 2015년 이전: 한도 없음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까지 공제 가능)
 - 2016~2017년: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까지 공제 가능
 - 2018년 이후(현행): 각 사업연도 소득의 60%까지 공제 가능
- 중소기업 및 회생기업의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100%까지 이월결손금 공제 허용
- (이월결손금 공제 현황) 국세통계연보상 법인세 이월결손금 공제 현황은 다음과 같음
- 2021년 신고기준 일반법인의 1법인당 이월결손금 공제액은 19.0억원

이월결손금 공제 현황: 2019~2021년

	2019			2020			2021		
	법인수 (천개)	금액 (조원)	1법인당 (억원)	법인수 (천개)	금액 (조원)	1법인당 (억원)	법인수 (천개)	금액 (조원)	1법인당 (억원)
일반법인	9.0	9.7	10.7	7.7	8.9	11.5	6.7	12.7	19.0
중소기업	109.3	12.3	1.1	122.2	13.5	1.1	135.7	16.2	1.2
계	118.3	22.0	1.9	130.0	22.4	1.7	142.4	28.9	7.6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및 국세통계 수시공개, 각 연도.

- (공제한도 삭제 효과) 2021년 신고기준 일반법인의 1법인당 이월결손금 공제액을 바탕으로 공제한도 삭제 효과를 비례적으로 고려하되, 공제기업 중 22.6%만 한도 변화에 따라 이월결손금 공제액 증가

- 한도삭제에 따른 1법인당 공제액 증가: 12.7억원 = $19.0 \times (100 - 60) / 60$
- 현행 한도에 걸리는 기업 비율(22.6%)은 코스피·코스닥 기업의 경영공시자료를 바탕으로 추정
- 2021년 신고기준 일반법인의 법인세 실효세율(20.6%)이 향후 동일하게 유지될 것으로 가정

공제한도 삭제에 따른 이월결손금 공제액 증가: 2021년(신고기준)

(단위: 억원, 개)

	공제한도 삭제 1법인당 효과 (A)	공제법인 수		공제 증가액 (D=A×C)
		전체 (B)	적용기업 (C=B×22.6%)	
공제한도 삭제 효과	12.7	6,651	1,501	19,054

- (세수효과) 공제한도 삭제에 따라 증가하는 이월결손금 공제액이 향후 동일할 것으로 가정하고, 일반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 감소액 산출

이월결손금 공제액 증가 및 법인세 감소액: 신고기준, 2024~2028년

(단위: 억원)

	2024	2025	2026	2027	2028
이월결손금 공제액 증가 × 실효세율 (20.6%)	19,054	19,054	19,054	19,054	19,054
= 법인세 감소액	3,925	3,925	3,925	3,925	3,925

- (법인세 납부시점 배분) 법인세가 실제 국고에 귀속되는 시기를 고려하여 세수효과 기간을 반영
 - 12월 말 결산법인의 경우, 당해 하반기 중간예납과 다음해 상반기 확정신고를 통하여 법인세를 납부하므로 이를 반영
 - 중간예납세액 비중(35.9%)과 자기계산 신고비율(24.3%)을 감안하면, 세수변화 가운데 8.7%(=35.9×24.3%)가 첫해연도 세수에 영향
 - 총부담세액에서 중간예납액이 차지하는 비중: 2019~2021년 평균 35.9%
 - 중간예납 납부금액 중 '자기계산' 신고 비율: 2019~2021년 평균 24.3%

법인세 납부시점 배분

사업연도 \ 납부시점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3년	중간예납					
2024년		중간예납				
2025년			중간예납			
2026년				중간예납		
2027년					중간예납	

2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조정: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 주요내용

- 일반 내국법인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상향 조정

2. 비용추계 결과

- 일반 내국법인에 대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관련 지분율 구간을 조정하고 익금불산입률을 상향함에 따라 법인세는 2024년 6,385억원, 2028년 6,385억원 등 2024년에서 2028년까지 5년간 총 3조 1,926억원(연평균 6,385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법인세

(단위: 억원)

	2024	2025	2026	2027	2028	누적	연평균
일반 내국법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조정	-6,385	-6,385	-6,385	-6,385	-6,385	-31,926	-6,385

3. 재정수반요인

- 내국법인이 출자한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분배금(이하 '수입배당금액')에 대한 익금불산입 관련 지분율 구간을 조정하고 익금불산입률 상향 조정

개정안에 따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변화

구 분		현행		개정안	
		지분율	익금불산입률	지분율	익금불산입률
일반 법인	상장 법인	100%	100%	80% 이상	100%
		30% 이상 100% 미만	50%	50% 이상 80% 미만	80%
		30% 미만	30%	50% 미만	50%
	비상장 법인	100%	100%	80% 이상	100%
		50% 이상 100% 미만	50%	50% 이상 80% 미만	80%
		50% 미만	30%	50% 미만	50%

4. 비용추계의 전제

- 개정안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전제하며, 세수효과는 징수기준으로 작성
 - 2023년 배당받는 분에 대한 세수효과는 법인세 확정신고 시점을 고려하여 2024년부터 발생
- 국세청이 제출한 2021년 신고기준 ‘수입배당금 명세서’를 바탕으로 익금불산입률 변화에 따른 법인세 과세표준 증감을 계산한 후, 법인세 실효세율을 적용하여 세수효과 추계
 - 개정안에 따른 경우 상장법인 지분율 50~100% 미만 및 30% 미만 구간에서, 비상장법인은 100% 미만 구간에서 적용되는 익금불산입률 상승
 - 익금불산입률 상승에 따라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이 증가하면 과세표준은 감소하므로, 과세표준 감소분에 법인세 실효세율을 곱하여 법인세 감소액을 추정
 - 법인세 감소액 = △과세표준(=익금불산입 증가분) × 실효세율*
 - * 2021년 신고 기준 법인세 실효세율(총부담세액/과세표준): 18.1%

익금불산입률이 증가하는 지분율 구간

		지분율	익금불산입률 변화
일반법인	상장법인	100%	100%
		80% 이상 100% 미만	50% → <u>100%</u>
		50% 이상 80% 미만	50% → <u>80%</u>
		30% 이상 50% 미만	50%
		30% 미만	30% → <u>50%</u>
	비상장법인	100%	100%
		80% 이상 100% 미만	50% → <u>100%</u>
		50% 이상 80% 미만	50% → <u>80%</u>
		50% 미만	30% → <u>50%</u>

5. 비용추계 상세 내역

- (제도 개요)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수입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 제도는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 1999년 지주회사부터 도입되어 2000년 일반회사까지 적용을 확대
 - (1999~2000년) 지주회사·일반법인에 대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도입
 - (2007~2009년) 지주회사 익금불산입률을 단계적으로 상향
동업기업에서 받은 수입배당금 이중과세 조정 제외
 - (2019년) 지주회사에 대한 익금불산입률을 세분화(2단계 → 3단계)
- (수입배당금 명세서) 국세청이 제출한 2021년 수입배당금 명세서에 따르면 일반법인(지주회사 이외 내국법인)이 자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금액은 총 17.7조원 규모

일반법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명세서상 신고액: 2021년

(단위: 억원)

	상장 자회사	비상장 자회사	계
배당액	53,477	123,245	176,722

자료: 국세청 제출자료

- (추계방법) 2021년 신고자료를 바탕으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상승에 따른 익금불산입액 증가액을 계산한 후, 법인세 실효세율을 적용하여 개정안에 따른 법인세수 감소액을 추계

- $\text{익금불산입액 증가액} = \Sigma (\text{지분율 구간별 배당금액} \times [d_1 - d_0])$
 - d_0 : 현행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 d_1 : 개정안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 2021년 신고자료를 토대로 계산한 익금불산입액 증가 규모가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
- $\text{법인세 감소액} = \Delta \text{과세표준(익금불산입액 증가액)} \times \text{실효세율}(18.1\%)$

익금불산입률 조정에 따른 과세표준 및 법인세 감소액

(단위: 억원)

	과세표준 감소액 (A)	법인세 감소액 (A × 18.1%)
상장 자회사	9,085	1,776
비상장 자회사	25,440	4,609
계	35,245	6,385

주: 2021년 법인세 신고자료 및 명세서 기준

자료: 국세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3

통합투자세액공제 공제율 상향: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 주요내용

-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통합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율을 상향

2. 비용추계 결과

-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중소·중견기업 세액공제율을 상향함에 따라 법인세는 2024년 722억원, 2025년 754억원 등 2024년에서 2025년까지 2년간 총 1,476억원(연평균 738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법인세

(단위: 억원)

구분	2024	2025	누적	연평균
국가전략기술 통합투자세액 공제율 상향	-722	-754	-1,476	-738

3. 재정수반요인

-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율을 상향함에 따라 법인세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

개정안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율 변화

(단위: %)

〈현행〉					〈개정안〉				
	당기분			증가분		당기분			증가분
	대	중견	중소			대	중견	중소	
일 반	1	3	10	3	⇒	일 반	1	3	3
신성장·원천	3	5	12			신성장·원천	3	5	
국가전략기술	6	8	16	4		국가전략기술	6	10	4

4. 비용추계의 전제

- 부칙에 따라 개정안이 2023년 시행되어 2023년 투자분부터 적용된다고 전제하며 세수효과는 징수시점을 고려하여 집계
 - 2023년 투자액은 2024년 법인세 확정신고를 통해 공제액이 발생하므로, 개정안의 세수효과는 2024년부터 발생
 - 한편 현행 국가전략기술 시설에 대한 특례공제율은 2024년 말까지 적용되므로, 관련 세수효과는 2025년까지 발생
-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에 따른 세수효과는 국가전략기술 투자액 추정치를 바탕으로 추계
 - 산업은행의 「2021년 설비투자계획조사」를 바탕으로 업종별 투자액에 자산형태·투자동기·세부업종 비율 등을 적용하여 2022년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투자액 규모를 추정
 - 향후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한 명목설비투자 증가율에 따라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액이 증가할 것으로 가정
 - 명목설비투자 증가율(전년대비)⁸⁵⁾: ('22) 0.6%, ('23) 0.2%, ('24) 5.0%
 - 기업규모별로 공제율 상향에 따른 세액공제액 증가 수준을 계산하되, 최종적으로 세부담이 존재하는 기업 비율(61.7%)을 반영

85) 국회예산정책처, 「2022년 및 중기 경제전망」, 2022.10.

$$\Delta \text{세액공제액} = \text{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액} \times (r_1 - r_0) \times 61.7\% *$$

r_0 : 현행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r_1 : 개정안에 따른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 세액공제액이 증가하더라도 납부할 세 부담이 있는 기업일 경우에만 추가공제가 가능하므로 세 부담 존재기업의 비중을 추가로 적용함

※ 2021년 법인세 신고 기준, 총 신고법인 대비 세 부담 존재기업 비율: 61.7%

- 본 추계의 결과는 향후 시설투자액 및 개별기업의 최저한세 적용 여부 등에 따라 변동할 가능성이 있음

- 최저한세 적용으로 개별기업의 공제금액이 제약될 경우, 세수효과가 가능성이 존재함

5. 비용추계 상세 내역

- (국가전략기술 투자액) 산업은행 자료를 바탕으로 2022년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액 전망치를 추산하고,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한 거시경제지표⁸⁶⁾를 적용하여 향후 투자액을 전망
-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액) 「2021년 설비투자계획조사」상 반도체·전자·의약품업의 설비투자액을 기준으로 신제품·R&D 비율 등을 적용하여 추정

기업규모별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액: 2022년(추정치)

(단위: 억원)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합계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액	23,606	8,390	261,553	293,549

자료: 산업은행의 「설비투자계획조사」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추정

- 향후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한 명목설비투자 증감률에 따라 투자액이 증감할 것으로 가정
 - NABO 명목설비투자 증가율: ('22) 0.6%, ('23) 0.2%, ('24) 5.0%

86) 국회예산정책처, 「2022년 및 중기 경제전망」, 2022.10.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액 전망: 2023~2024년

(단위: 억원)

	2023	2024
중소기업	23,653	24,836
중견기업	8,407	8,827
대기업	262,076	275,179
합계	294,136	308,842

■ (추계방법) 앞서 전망한 투자액을 기준으로 현행과 개정안의 공제율 차이와 세부담 존재기업 비율을 적용하여 세액공제 증가액 산출

- 징수기준을 적용하면 시설투자 다음연도에 세수효과 발생
 - 현행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특례세율이 2024년 말까지 적용되는 것을 고려하면, 개정안의 세수효과는 2025년까지 발생
- 2021년 총 법인세 신고법인 대비 세부담 존재기업 비율: 61.7%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관련 공제율 상향에 따른 세액공제 증가액: 2024~2025년

(단위: 억원)

	2024	2025
중소기업	613	640
중견기업	109	114
합계	722	754

주: 최저한세 적용 등은 반영하지 않은 금액으로 발생가능한 세수효과의 최대치로 볼 수 있음

III

재산과세 분야

1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기준 변경: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 주요내용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기준을 변경

- (현행) 재산세 납세의무자 → (개정안) 재산세 납세의무자 중 보유주택의 합산공시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을 초과한 자

* (개인) 1세대 1주택자/다주택자/공동명의 1주택자: 11억원/11억원/5.5억원
(법인) 3억원

2.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종합 부동산세는 2023년 7,087억원, 2027년 7,087억원 등 2023년에서 2027년까지 5년간 총 3조 5,434억원(연평균 7,087억원)의 재정수입 감소 예상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종합부동산세

(단위: 억원)

구분	2023	2024	2025	2026	2027	누적	연평균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기준 변경	-7,087	-7,087	-7,087	-7,087	-7,087	-35,434	-7,087

3. 재정수반요인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수의 감소가 예상
 - 개정안에 따라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 합이 6~11억원인 개인 다주택자와 3억원 이하인 법인이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나,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 합이 11억원을 초과하는 개인 다주택자와 3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의 과세표준은 현행과 동일하게 적용

4. 비용추계의 전제

- 개정안이 2022년 중 통과되어 세수효과는 2023년부터 발생한다고 가정
-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 추계는 국세청의 2021년 기준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를 바탕으로 함
- 2022년까지는 지역별 공시가격 상승률을 반영하며, 2023년 이후에는 공시가격 변동이 없다고 가정
 - 2022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지역별 가중평균값을 적용
 - 주택의 경우 지역별 표준단독주택·개별단독주택·공동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을 가중평균(가중치: 호수)하여 적용
 - 공시가격은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를 제고 정책 및 시세변동 등 시장요인에 따라 변동되나, 세수효과 추계 시 2023년 이후에는 이에 따른 공시가격 변동은 없다고 가정
- 지역 및 과세표준 구간 내 주택 수 및 분포는 국세청의 20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 및 국토교통부의 공시가격 전수자료를 바탕으로 2022년에는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변하며, 2023년 이후에는 변동이 없다고 가정
 - 2022년의 주택분 납세인원은 보유주택수에 관계없이 증가하나, 납세자 유형(개인, 법인) 중 개인에 한해 증가한다고 가정
 - 법인에 대해서는 2021년 이후 과세기준액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2022년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인원 증가는 없다고 가정
 - 지역·과세표준 구간 내에서의 주택은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다고 가정하여 지역별·과세표준별 부동산의 평균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2022년 공시가격 상승률 및 개정사항 반영

- 2023년 이후 지역별·과세표준별 주택 수와 분포는 2022년 기준 추정 납세인원을 바탕으로 변동이 없다고 가정
 - 2023년 이후에도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신규진입 인원 또는 과세대상 매도에 따른 제외 인원이 있을 수 있으나 세수효과 추계 시 반영하지 않음
- 2021년 기준 종합부동산세 납세자 유형 및 적용 세율체계, 주택소재지의 조정대상지역 여부⁸⁷⁾가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
 - 납세자 유형: 개인/법인
 - 적용세율체계: 저율과세(1~2주택)/고율과세(3주택 이상)⁸⁸⁾

5. 비용추계 상세 내역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기준을 변경함에 따라 다주택자 및 법인 중 일부가 납세의무자에서 제외되어 발생하는 세수감소 효과를 추계
 - 개정안에 따라 보유 주택 합산 공시가격이 6~11억원인 다주택자와 3억원 이하인 법인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서 제외됨
 - 다만, 과세표준 산정 시 공시가격에서 차감하는 기본공제금액은 조정하지 않으므로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 합이 11억원을 초과하는 개인 다주택자와 3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의 과세표준은 현행과 동일하게 적용
- 국세청의 2021년 기준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를 바탕으로 2022년 이후 다주택자 및 법인의 평균 공시가격 및 과세표준, 종합부동산세액을 추정하고, 납세의무자 기준 변경에 따른 세수효과 추계
 - 2021년 기준 지역별·과세표준별 평균 공시가격을 역산한 후, 공시가격 상승률을 반영하여 이후의 공시가격 추정⁸⁹⁾⁹⁰⁾
 - 다주택자 평균 공시가격 추정치₂₀₂₁ = 과세표준 ÷ 공정시장가액비율(95%) + 6억원

87) 조정대상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청약경쟁률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지정·해제(「주택법 시행규칙」 제25조의3)하며, 2022년 일부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었으나, 자료상 제외된 지역을 구분하기 어려워 기존의 조정대상지역 여부가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추계

88) 단,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자는 고율과세로 구분

89) 공정시장가액비율: ('20) 90%, ('21) 95%, ('22 이후) 100%

90) 2021년부터 법인에게에는 과세기준액(1세대1주택자 11억원, 다주택자 6억원)이 적용되지 않음

- 법인 평균 공시가격 추정치₂₀₂₁ = 과세표준 ÷ 공정시장가액비율(95%)
- 평균 공시가격₂₀₂₂ = 공시가격 추정치₂₀₂₁ × (1+공시가격 상승률₂₀₂₂)

지역별 주택 공시가격 상승률: 2022년

(단위: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13.7	16.6	9.5	26.8	11.5	14.2	9.6	-3.3	21.2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국
11.7	13.7	10.7	7.8	5.8	8.0	9.5	11.4	14.7

주: 지역별 표준단독주택, 개별단독주택,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의 가중평균값(가중치: 호수)

자료: 국토교통부 발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추정한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2022~2027년의 지역별·과세표준별 평균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과세표준별 세율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액 추정

종합부동산세액 추정 방법

$$\text{종합부동산세액} = (\text{공시가격} \times \text{합산액} - \text{기본공제금액}^*) \times \text{공정시장가액비율(60\%)} \times \text{세율}$$

- 기납부재산세액 공제 -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고령자·장기보유자)
- 세부담 상한 초과액

* 기본공제금액: (개인) 1세대 1주택자 11억원, 다주택자 6억원 (법인) 미적용

- 개정안에 따라 보유주택의 합산공시가격이 11억원 이하인 다주택자와 3억원 이하인 법인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지 않으므로, 이를 현행 과세표준으로 환산하여 납세의무자에서 제외되는 인원의 종합부동산세액만큼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
 - 기본공제금액(다주택자 6억원, 법인 미적용) 및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반영하여 계산하면, 현행 과세표준 3억원 이하 개인 다주택자와 1.8억원 이하 법인⁹¹⁾은 과세대상에서 제외

91) 다주택자 과세표준 = (11억원(공시가격) - 6억원(기본공제금액)) × 60%(공정시장가액비율) = 3억원
 법인 과세표준 = 3억원(공시가격) × 60%(공정시장가액비율) = 1.8억원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 다주택자 및 법인 기준, 2023년

과표구간	다주택자			법인		
	종합부동산세액		세수효과 (C=B-A)	종합부동산세액		세수효과 (F=E-D)
	현행(A)	개정안(B)		현행(D)	개정안(E)	
3억원 이하	6,306	0	-6,306	1,549 ¹⁾	768 ¹⁾	-781 ¹⁾

주: 1) 개정안에 따라 과세표준 3억원 이하 구간 중 1.8억원 이하인 법인은 과세대상에서 제외

증여재산공제 한도액 인상: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 주요내용

- 직계존속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의 증여재산공제 한도액 인상
 - (현행) 일반 5천만원, 미성년자 2천만원 → (개정안) 일반 1억원, 미성년자 5천만원

2. 비용추계 결과

- 직계존속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의 증여재산공제 한도액을 현행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에서 1억원(미성년자 5천만원)으로 인상하고자 함에 따라 증여세는 2023년 7,704억원, 2027년 9,654억원 등 2023년에서 2027년까지 5년간 총 4조 3,253억원(연평균 8,651억원)의 재정수입 감소 예상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증여세

(단위: 억원)

구분	2023	2024	2025	2026	2027	누적	연평균
직계존속 등의 증여재산공제 한도액 인상	-7,704	-8,150	-8,622	-9,123	-9,654	-43,253	-8,651

3. 재정수반요인

- 직계존속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의 증여재산공제 한도액 인상
 - 직계존속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 한도액을 현행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에서 1억원(미성년자 5천만원)으로 인상하고자 함에 따라 증여세수의 감소가 예상됨

4. 비용추계의 전제

- 개정안이 2022년 중에 통과되어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가정하여 세수효과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추계
- 현행 증여세 결정현황에 대한 통계자료의 경우 직계존속과 비속을 구분·관리하고 있지 않지만⁹²⁾, 가족 간의 증여 관계를 고려하여 국세청 직계존비속공제 실적자료를 직계존속공제 실적치로 가정
 - 가족 간의 증여는 일반적으로 직계존속(부모, 조부모)이 대부분이고 직계비속(자녀, 손자녀)의 증여는 미미한 점을 감안하여 국세청 직계존비속공제 수증자 실적자료를 직계존속공제 실적치로 가정
- 개정안의 증여재산공제 한도액 인상에 따른 공제액 증가분은 현행 1인당 증여재산 과세가액을 감안하여 한도액 증가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가액을 증여재산공제 증가분으로 가정
 - 최근 3년간 현행 1인당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증여재산의 과세가액을 살펴보면, 수증자의 경우 3년 평균 3.6억원, 미성년자의 경우 1.6억원으로 나타남

1인당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받은 현행 증여세 과세가액: 2018~2020년

(단위 : 명, 억원)

구분	직계존비속공제를 받은 수증자			직계존비속공제를 받은 미성년자		
	인원 (A)	증여세 과세가액(B)	1인당 증여세 과세가액(B/A)	인원 (A)	증여세 과세가액(B)	1인당 증여세 과세가액(B/A)
2018	94,569	346,390	3.7	7,519	12,786	1.7
2019	97,709	372,477	3.8	7,030	12,269	1.7
2020	104,962	347,690	3.3	7,754	11,282	1.5
평균	99,080	355,519	3.6	7,434	12,112	1.6

자료 : 국세청 답변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92) 국세청 제출자료

○ 한도액 증가비율

- 직계존속공제 수증자 5천만원 → 1억원 : 2배 증가
- 직계존속공제 미성년자 2천만원 → 5천만원 : 2.5배 증가

- 증여재산공제 한도액 인상에 따른 세수감소분은 증여재산 공제 증가분에 최근 3년간 평균 실효세율(12.9%)을 적용한 후 증여세 증가율에 비례하여 증가한다고 가정

증여세 유효세율: 2018~2020년

(단위: 억원)

구분	과세표준(A)	결정세액(B)	실효세율(B/A)
2018	406,478	53,176	13.1%
2019	443,348	55,620	12.5%
2020	427,034	56,326	13.2%
평균 실효세율			12.9%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5. 비용추계 상세 내역

- (증여재산 공제실적) 최근 3년간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 공제액의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수증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 공제액은 2018년 4조 3,040억원에서 2020년 4조 8,358억원으로 증가추세에 있으며, 연평균 증가율은 6%로 나타남
 -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 공제액은 2018년 1,434억원에서 2020년 1,488억원으로 감면실적의 증감추세는 일정하지 않으며 연평균액은 1,423억원으로 나타남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 공제액: 2018~2020년

(단위: 억원)

구 분	2018	2019	2020	연평균 증가율	연평균액
수증자의 증여재산 공제액	43,040	44,943	48,358	6%	-
미성년자의 증여재산 공제액	1,434	1,346	1,488	-	1,423

자료: 국세청 답변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추계방법) 개정안의 증여재산 공제 한도액 인상에 따른 세수감소분은 공제 한도액 인상분에 증여공제 증가비율에 따라 공제 증가분을 산정한 후 최근 3년간 평균 실효세율을 적용하여 세수 감소액을 산정
 - 증여재산 공제 한도액 인상에 따른 수증자의 증여공제 증가분은 2023년 57,592억원, 2027년 72,703억원으로 총 324,639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계됨
 - 수증자의 공제액은 증가추세를 반영하여 연평균 증가율 6%가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적용
 - 증여재산 공제 한도액 인상에 따른 미성년자의 증여공제 증가분은 2023년 2,135억원, 2027년 2,135억원으로 총 10,673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계됨
 - 미성년자 증여공제액의 경우 증감추세가 일정하지 않아 연평균액 1,423억원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적용

증여재산 공제액 한도액 인상에 따른 증가분: 2023~2027년

(단위: 억원)

구분	수증자의 증여재산 공제액			미성년자의 증여재산 공제액		
	현행 (A)	한도액 인상 (B=A×2)	증가액 (B-A)	현행 (A)	한도액 인상 (B=A×2.5)	증가액 (B-A)
2023	57,592	115,184	57,592	1,423	3,558	2,135
2024	61,046	122,093	61,046	1,423	3,558	2,135
2025	64,708	129,416	64,708	1,423	3,558	2,135
2026	68,589	137,179	68,589	1,423	3,558	2,135
2027	72,703	145,407	72,703	1,423	3,558	2,135
합 계			324,639	합 계		10,673

- 증여재산공제 증가분에 최근 3년간 평균 실효세율을 적용하면 수증자의 경우 2023년 7,429억원(미성년자 275억원), 2027년 9,379억원(미성년자 275억원) 등 총 4조 1,878억원(미성년자 1,377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

증여재산 공제액 한도액 인상에 따른 세수감소 효과: 2023~2027년

(단위: 억원)

구분	수증자의 증여재산공제액 인상		미성년자의 증여재산공제액 인상	
	공제 증가액(A)	세수감소액 (A×12.9%)	공제 증가액(A)	세수감소액 (A×12.9%)
2023	57,592	7,429	2,135	275
2024	61,046	7,875	2,135	275
2025	64,708	8,347	2,135	275
2026	68,589	8,848	2,135	275
2027	72,703	9,379	2,135	275
합 계		41,878	합 계	1,377

3

토지세 신설 및 토지배당제 도입: 「토지세 및 토지배당에 관한 법률안」

1. 주요내용

- 토지 소유자에 대해 토지세를 부과하고, 토지세액 전액을 토지배당 특별회계 수입으로 전입

2. 재정수반 요인

- 토지 소유자에 대해 토지세를 부과하고, 토지세액 전액을 토지배당 특별회계 수입으로 전입하여 토지배당수급권자에게 배분함에 따라 재정수입과 지출의 증가가 예상
 - 제정안은 지적공부상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과세기준을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토지세를 부과함에 따라 재정수입의 증가가 예상
 - 또한, 제정안은 토지세액 전액을 토지배당특별회계의 수입으로 전입하여 토지배당수급권자에게 배분함에 따라 재정수입의 증가 수준과 동일하게 재정지출의 증가가 예상

3. 미첨부 근거규정

-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4. 미첨부 사유

- 제정안에 따라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를 소유한 자에게 토지의 합산공시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토지세를 부과하고, 토지세액 전액을 토지배당특별회계의 수입으로 전입하여 토지배당수급권자에게 배분함에 따라 재정수입 및 재정지출의 증가가 예상

- 제정안은 지적공부상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보유한 토지의 합산공시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토지세를 부과함에 따라 재정수입의 증가가 예상
 - 현행 토지 소유에 대하여 전국 또는 지역별로 개인이 보유한 토지의 합산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와 지방세인 재산세를 과세
 - ※ 단, 종합부동산세는 토지소유자의 합산공시지가가 일정 수준(종합합산 토지 5억 원, 별도합산토지 8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과세
- 제정안은 토지세 수입 전액을 토지배당특별회계의 수입으로 전입하여 토지배당수급권자(대한민국 국민, 결혼이민자, 영주자격을 지닌 외국인 등)에게 배분함에 따라 재정지출의 증가가 예상
 - 현행 부동산 보유세 중 종합부동산세는 전액 부동산교부금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배분되고 있으며, 재산세는 특별시 자치구를 제외하고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반재원으로 활용
 - ※ 특별시 자치구의 재산세는 특별시분 50%, 자치구분 50%로 구분하여 배분

■ 개정안에 따른 토지세 증가분을 추계하기 위해서는 향후 토지의 개별 소유자별 공시지가 규모와 재산세 등의 납부규모 수준 등을 추정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

연간 세수효과 산식

$$\text{연간 세수효과} = \sum_i (\text{과세표준}_i \times \text{세율}_i - \text{재산세 세액공제}_i)$$

- ※ 과세표준: 토지 소유자 i 의 합산 공시지가,
 단, 재산세 비과세 토지는 과세표준 산정에서 제외
 세율: 납세의무자 유형별(개인, 법인)로 상이한 초과누진세율 구조

(단위: %)

과세표준	개인	법인
10억원 이하	0.8	0.5
10~100억원	1.2	0.8
100억원 초과	1.5	1.3

세액공제: 과세대상 토지의 재산세(토지분, 주택분)로 부과된 세액 중 토지분 재산세액은 전액, 주택분 재산세액은 건축물분 시가표준액을 제외하고 공제

- 그런데, 향후 개별 납세의무자의 합산공시지가 규모와 토지분 및 주택분 재산세 규모를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으므로 세수효과 추계가 불가능
 - 개정안의 납세의무자 및 비과세 규정 등은 재산세와 동일하나, 재산세는 건별 과세로 재산세 실적을 납세의무자별로 구분할 수 없음
 - 토지에 대한 소유자별 합산 공시지가를 바탕으로 한 통계인 국토교통부의 「토지소유현황」 자료로는 재산세 비과세 실적과 세액공제 추계에 필요한 재산세 규모를 추정할 수 없음
 - 참고로, 「2020년 토지소유현황」 기준 과세표준 구간별 토지소유자 및 합산공시지가는 다음과 같음

개인 및 법인의 토지소유현황: 2020년 기준

합산공시지가	개인		법인 등 ¹⁾	
	토지소유자(만명)	공시지가(조원)	토지소유자(만개)	공시지가(조원)
10억원 이하	1,757	2,318	42	77
10~100억원	47	928	8	233
100억원 초과	1	217	1	1,177
합계	1,805	3,463	52	1,487

주: 1) 법인과 비법인(종중, 종교단체, 기타단체)을 포함

자료: 국토교통부 제출자료

-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토지세 및 토지배당의 도입에 따른 수입과 지출액의 변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IV

소비과세 분야

1

생맥주에 대한 주세 경감세율 연장: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 주요내용

- 별도의 추출장치를 사용하는 8리터 이상의 용기에 담아 판매되는 맥주에 대한 주세 경감세율(기본세율의 80%)의 적용기한 연장

2. 비용추계 결과

- 별도의 추출장치를 사용하는 8리터 이상의 용기에 담아 판매되는 맥주에 대한 주세 경감세율의 적용기한을 2023년 말까지 연장함에 따라 2022년 234억원, 2023년 236억원 등 2022년에서 2023년까지 2년간 총 470억원(연평균 235억원)의 주세 등 재정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주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단위: 억원)

		2022	2023	누적	평균
맥주에 대한 주세 경감세율 적용기한 연장	주세	-163	-165	-329	-164
	교육세 ¹⁾	-49	-50	-99	-49
	부가가치세 ²⁾	-21	-21	-43	-21
	합계	-234	-236	-470	-235

주: 1) 교육세는 주세의 부가세(surtax)로, 세수효과는 주세 세수효과의 30%

2) 부가가치세 세수효과는 주세 및 교육세 세수효과의 10%

3. 재정수반요인

■ 주세 경감세율 적용 연장

- 별도의 추출장치를 사용하는 8리터 이상의 용기에 담아 판매되는 맥주에 대한 주세 경감세율(기본세율의 80%)의 적용기한을 현행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함에 따라 주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세수의 감소가 예상됨

4. 비용추계의 전제

■ 2021년 중 개정안이 통과되어 개정안의 부칙규정에 따라 2022년부터 개정안이 적용되는 것으로 전제

■ 본 비용추계는 다음의 가정을 통해 추계

- 별도의 추출장치를 사용하는 8리터 이상의 용기에 담아 판매되는 맥주에 대한 주세 경감세율 제도는 2020년 신설되었으므로, 2020년 주세 신고 자료를 활용하여 주세 과세대상인 출고(수입)량을 추계
 - (수입맥주) 2020년 전체 맥주 수입량(261천kl) 중 경감세율 적용 맥주의 수입량(14천kl)이 유지되는 것으로 전제
 - (국산맥주) 2020년 주세 신고자료가 부재한 상황⁹³⁾이므로, 수입맥주의 '전체 출고량 대비 경감세율 적용 출고량의 비율'이 동일하다고 전제
 - 자료의 한계를 감안하여, 향후 맥주 출고(수입)량은 최근의 신고 실적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가정
- 현행 제도상 2021년 3월 1일 이후 맥주에 대한 주세율은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를 반영
 - 「주세법」⁹⁴⁾ 상 세율은 직전연도 말일 기준 세율에 통계청장이 발표하는 직전연도 소비자물가상승률 반영하여 산출
 - 동 추계에서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최근 실적 및 전망^{*}을 반영
 - ※ 소비자물가상승률(NABO, 2020.12.): '20년 0.5% '21년 1.0%^e, '22년 1.2%^e

93) 국세청에 따르면 주세를 신고한 국산맥주의 출고량의 집계는 완료되지 않은 상황

94) 「주세법」 제8조제2항

- 개정안에 따른 주세 세수변동액을 바탕으로 교육세 및 부가가치세 세수효과를 추정
 - 교육세는 주세액의 30%⁹⁵⁾로 산출
 - 부가가치세는 주세 및 교육세 세수변동액의 10%로 산출
- 주세 및 교육세 등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맥주 세전 출고가는 동일한 수준일 것으로 가정

5. 비용추계 상세 내역

가. 최근 주세 신고 현황

- 2020년 별도의 추출장치를 사용하는 8리터 이상의 용기에 담아 판매되는 맥주에 대한 주세 경감세율 제도가 신설된 후, 경감세율 적용대상 맥주 중 국산 맥주 규모는 아직 집계되지 않았고 수입맥주는 14천kl 규모로 집계됨
- 2020년 수입맥주 261천kl 중 경감세율(664,200원/kl)을 적용한 맥주의 출고량 14kl에 대한 주세액은 95억원 수준으로 추정
 - 현행 해당 맥주에 대한 경감세율은 기본세율(830,300원/kl)의 80%인 664,200원/kl

주세 과세대상인 맥주의 출고(수입)량 현황: 2020년

(단위: 천kl)

연도	국산맥주		수입맥주	
		경감세율 대상 ¹⁾		경감세율 대상 ¹⁾
2020	- ²⁾	- ²⁾	261	14

주: 1) 별도의 추출장치를 사용하는 8리터 이상의 용기에 담아 판매되는 맥주를 가리킴

2) 2020년 주세를 신고한 국산맥주의 출고량의 집계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

자료: 국세청 및 관세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95) 교육세는 주세의 부가세(surtax)로, 맥주에 대한 교육세율이 종전과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교육세법」이 개정될 것으로 가정(「교육세법」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제1항제4호)

나. 세수효과 추계

1) 주세

■ 경감세율 적용 대상인 맥주의 출고(수입)량은 최근의 주세 신고 현황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추정

- (수입맥주) 2020년 경감세율이 적용된 맥주 수입량 14천kl가 추계 기간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가정
- (국산맥주) 2019년 전체 국산맥주 출고량에 2020년 수입맥주 중 경감세율 적용 맥주 출고량 비중을 곱하여 83천kl 수준으로 산출하되, 동 출고량이 추계 기간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가정

$$\begin{aligned} \text{국내맥주 출고량(추정)} &= 2019년 \text{ 전체 맥주 출고량}(1,505\text{천kl}) \\ &\quad \times 2020년 \text{ 수입맥주 중 경감세율 맥주 출고량 비중} \\ &\quad (5.5\% = 14\text{천kl} / 261\text{천kl}) \end{aligned}$$

■ 맥주에 대한 경감세율 적용 기한 연장 시 주세 세수효과는 2022년 163억원, 2023년 165억원으로 2022~2023년 총 329억원(연평균 164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

- 주세 세수효과 = $\sum_{t=2022}^{2023} \text{경 감 세 율 대 상 맥 주 출 고 (수 입) 량}_t \times (\text{경 감 세 율} - \text{기 본 세 율})$
 - 기본세율은 직전연도 세율에 소비자물가상승률 실적 및 전망(NABO, 2020.12.)을 반영해 산출하고, 경감세율은 기본세율의 80%로 산출

맥주에 대한 주세 세율 추정: 2020~2023년

(단위: 원/kl)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기본세율(a) ¹⁾	830,300	834,452	842,796	852,910
경감세율(b) ²⁾	664,200	667,500	674,200	682,300
차이(b-a)	-166,100	-166,952	-168,596	-170,610

주: 1) 기본세율 = 직전연도 세율 × 소비자물가상승률 실적(전망)

2) 경감세율 = 기본세율 × 80%(단, 백만원 미만 절사)

- 추계 기간 경감세율 대상 맥주의 출고량이 국내 83천kl, 수입 14천kl로 동일하게 유지된다는 전제 하에, 경감세율과 기본세율 간 차이를 반영하여 세수효과를 추계

맥주에 대한 경감세율 적용 연장 시 주세 세수효과: 2022~2023년

(단위: 억원)

구분	2022년	2023년	누적	평균
국내맥주	-139	-141	-280	-140
수입맥주	-24	-24	-49	-24
합계	-163	-165	-329	-164

2) 교육세

- 맥주에 대한 경감세율 적용 기한 연장 시 교육세 세수효과는 2022년 49억원, 2023년 50억원으로 2022~2023년 총 99억원(연평균 49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

$$\text{○ 교육세 세수효과} = \sum_{t=2022}^{2023} \text{주세 세수효과}_t \times 30\%$$

맥주에 대한 경감세율 적용 연장 시 교육세 세수효과: 2022~2023년

(단위: 억원)

구분	2022년	2023년	누적	평균
교육세수	-49	-50	-99	-49

3) 부가가치세

- 맥주에 대한 경감세율 적용 기한 연장 시 부가가치세 세수효과는 2022년 21억원, 2023년 21억원으로 2022~2023년 총 43억원(연평균 21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

$$\text{○ 부가가치세 세수효과} = \sum_{t=2022}^{2023} (\text{주세 세수효과} + \text{교육세 세수효과})_t \times 10\%$$

맥주에 대한 경감세율 적용 연장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수효과: 2022~2023년

(단위: 억원)

구분	2022년	2023년	누적	평균
부가가치세수	-21	-21	-43	-21

육아용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 주요내용

- 영유아용 기저귀, 분유, 이유식, 영유아용 도서 및 의복·신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육아용품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2. 비용추계 결과

- 육아용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시 세수는 2023년 692억원 등 2023~2027년 간 총 3,366억원(연평균 673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부가가치세

(단위: 억원)

구분	2023	2024	2025	2026	2027	누적	연평균
육아용품 부가가치세 면제	-692	-673	-661	-662	-678	-3,366	-673

3. 재정수반요인

- 영유아용 기저귀 등 육아용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 영유아용 기저귀, 분유, 이유식, 영유아용 도서 및 의복·신발 등 육아용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에 따라 세수 감소가 예상됨

4. 비용추계의 전제

- 면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금액이나, 해당 자료가 집계되지 않으므로 최근 매출액 또는 매입액 자료를 활용하여 추계

- 국내산과 수입산으로 구분되며 자료 조사 대상 및 집계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각기 구분하여 추계

- 국내산은 2020년까지 매출액, 수입산은 2021년까지 수입액 집계

- 개정안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영유아용 기저귀, 분유, 이유식, 영유아용 도서 및 의복·신발 등 육아용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육아용품으로 통계가 집계되는 기저귀, 분유, 유아용 의복, 내의 및 도서에 한하여 추계

- (추계대상) 기저귀, 분유, 유아용 의복·내의, 유아·아동 도서 관련, 국내 매출액은 통계청 「광업제조업조사」, 「경제총조사」,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출판산업실태조사」 등의 자료를 활용하고 수입액(수입산 매입액)은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 자료를 활용

- (추계제외) 이유식, 아동용 구두, 유아·어린이용 목제가구 등은 국내산(「광업제조업조사」 및 「경제총조사」)에서만 육아용이 구분되므로 수출·수입액 파악이 곤란하며, 어린이용 화장품, 어린이용 세발자전거 등은 수입산(수출입무역통계)에서만 육아용이 구분되므로 국내산 매출액 파악이 곤란

- 매출액, 관련 부가가치율 및 부가가치세율을 활용하여 감면액 추정

- (국내산) 국내 출하액과 수출액을 바탕으로 매출액을 산정하고 부가가치율 및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여 감면액 추정⁹⁶⁾

- 수출액은 각 품목의 최근 5년(2017~2021년) 연평균 증감률이 추계기간 동안 지속되는 것으로 가정

- (수입산) 매출액 자료가 집계되지는 않으나, 수입금액이 국내 제품 공급 시 매입액과 같으므로 이를 활용하여 국내 매출액을 역산하고 감면액 추정⁹⁷⁾

- 매입세액은 수입통관 과정에서 실제 부과된 부가가치세액으로 추계기간 동안 수입액의 증감률을 따르는 것으로 전제

- 부가가치율은 관련 품목이 속한 산업의 최근 3년(2019~2021년) 평균 수준이 향후에도 지속되는 것으로 전제

-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상 해당 품목 산업의 부가가치율 적용

96) 매출액=출하액-수출액. 감면액=매출세액-매입세액=매출액×부가가치율×부가가치세율(10%)

97) 매출액=매입액(수입액)÷(1-국내 공급 단계의 부가가치율). 매출액 추정 후, 이를 활용한 감면액 산출은 국내산의 경우와 동일

- 매출액 등과 관련하여 갱신된 최신 자료가 반영될 경우 추계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감안할 필요

■ 추계기간 동안의 국내산 매출액과 수입산 매입액은 관련 영·유아 및 아동⁹⁸⁾ 인구 및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따라 변동하며 국내산 매출액과 수입산 매입액 비율은 최근(2020년) 추세가 지속되는 것으로 전제

- 기저귀와 분유는 영아(만0~2세) 인구, 이외 품목은 영·유아 및 아동(만0~12세) 인구 등과 관련한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20~2070년」의 추정치를 따를 것으로 가정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 활용

■ 개정안 부칙을 고려하여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전제

5. 비용추계 상세 내역

가. 국내산 육아용품

■ 2015~2021년간 국내산 육아용품의 매출액은 감소하는 추세

국내산 기저귀 및 분유의 공급가액: 2015~2021년

(단위: 억원)

구분	품목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²⁾
출하액 (A)	기저귀	7,918	9,388	9,168	7,764	6,439	5,216	5,075
	분유	3,613	3,831	3,129	3,053	3,337	2,324	2,189
	유아용 의복	5,602	7,841	7,791	7,672	9,140	7,155	7,004
	유아용 내의	309	408	595	613	565	390	249
	유아·아동도서	1,390	1,377	1,368	1,363	1,362	1,361	1,295

98) 연령 기준은 영유아보육법(제2조), 유아교육법(제2조) 및 교육법(제8조)의 관련 규정 참조

구분	품목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²⁾
수출액 ¹⁾ (B)	기저귀	1,620	128	956	360	295	392	593
	분유	1,274	1,410	879	1,091	1,118	1,072	1,205
	유아용 의복	34	65	42	35	35	41	47
	유아용 내의	294	221	171	161	138	94	74
	유아·아동도서	23	28	25	25	29	33	28
국내산 매출액 (C=A-B)	기저귀	6,298	9,260	8,212	7,404	6,144	4,824	4,482
	분유	2,340	2,421	2,250	1,962	2,219	1,252	984
	유아용 의복	5,568	7,776	7,749	7,637	9,105	7,114	6,957
	유아용 내의	15	187	424	452	426	296	175
	유아·아동도서	1,367	1,349	1,342	1,338	1,333	1,328	1,268

주: 1) 관세청의 수출액 자료(미국달러 기준)에 해당 연도의 원/미국달러 평균환율을 적용하여 환산
 2) 2021년도 수출액은 실적치이며, 출하액 및 국내산 매출액은 수출 실적치 및 국내산 매출액 대비 수입액 비율 등을 바탕으로 계산한 추정치
 자료: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 통계청 「광업제조업조사」 및 「경제총조사」,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출판산업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추계기간 동안 국내산 유아용품 매출액의 경우, 기저귀와 분유는 증가하는 반면, 유아용 의복 및 내의, 유아·아동 도서 등은 감소할 것으로 추정

국내산 기저귀 및 분유의 매출액 추정: 2023~2027년

(단위: 억원)

품목	2023	2024	2025	2026	2027
기저귀	4,298	4,180	4,144	4,257	4,518
분유	1,115	1,085	1,075	1,105	1,173
유아용 의복	7,015	6,826	6,624	6,427	6,279
유아용 내의	292	284	276	268	261
유아·아동도서	1,309	1,274	1,237	1,200	1,172

- 2019~2021년간 부가가치율은 출판업에서 가장 높고(40.4%) 의복제조업(20.4%)에서 가장 낮은 수준

국내산 기저귀 및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율: 2019~2021년

(단위: %)

품목	관련 산업	2019	2020	2021	평균
기저귀, 유아용 의복 및 내의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24.18	25.89	23.11	24.39
분유	낙농제품 및 식용빙과류	23.90	23.20	22.17	23.09
유아용 의복 및 내의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20.34	19.75	21.22	20.44
유아·아동도서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40.33	40.29	40.58	40.40

자료: 한국은행의 연도별 「기업경영분석」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향후 부가가치세 면제를 영구 적용할 경우 국내산에 대한 감면액은 2023년 기저귀 105억원, 분유 26억원, 유아용 의복 및 내의 149억원, 유아·아동 도서 53억원 등 총 333억원 수준으로 추정

국내산 기저귀 및 분유의 부가가치세 감면액 추정: 2023~2027년

(단위: 억원)

품목	2023	2024	2025	2026	2027
기저귀	105	102	101	104	110
분유	26	25	25	26	27
유아용 의복	143	139	135	131	128
유아용 내의	6	6	6	5	5
유아·아동 도서	53	51	50	48	47
합계	333	324	317	315	318

나. 수입산 육아용품

- 국내에 공급되는 수입산 주요 육아용품의 매입액(수입액+관세액)은 증가추세

주요 육아용품 수입 현황: 2015~2021년

(단위: 억원)

구분	품목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수입액 ¹⁾ (D)	기저귀	722	387	1,026	1,271	1,450	1,142	1,145
	분유	692	807	806	852	955	981	1,122
	유아용 의복	188	188	198	196	148	109	160
	유아용 내의	347	546	563	522	401	348	460
	유아·아동도서	261	289	278	288	441	453	486
관세액 (E)	기저귀	-	-	11	10	5	2	3
	분유	78	49	73	74	52	51	42
	유아용 의복	11	10	10	9	6	5	4
	유아용 내의	23	27	21	19	12	8	8
	유아·아동도서	-	-	-	-	-	-	-
매입액 (G=D+E)	기저귀	722	387	1,037	1,281	1,454	1,144	1,148
	분유	770	856	880	926	1,007	1,032	1,164
	유아용 의복	198	198	208	205	154	114	164
	유아용 내의	370	572	583	541	413	356	467
	유아·아동도서	261	289	278	288	441	453	486

주: 1) 수입액은 관세청의 수출액 자료(미국달러 기준)에 해당 연도의 원/미국달러 평균환율 적용하여 환산
 자료: 관세통계 및 관세청 제공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국내에 공급되는 수입산 육아용품의 매입액(수입액)을 바탕으로 공급가액을 역산 시, 2015~2021년간 증가한 것으로 추정

- 완제품의 수입임을 감안해, 부가가치율은 한국은행의 「기업경영분석」 상 도매 및 소매업의 부가가치율 적용

수입산 기저귀 및 분유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율: 2019~2021년

(단위: %)

관련산업	2019	2020	2021	연평균
도매 및 소매업	43.63	44.94	44.15	44.24

자료: 한국은행의 연도별 「기업경영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수입산 육아용품의 공급가액 추정: 2015~2021년

(단위: 억원)

구분	품목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매출액 ($H=G \div (1-\text{부가가치율})$)	기저귀	1,295	694	1,860	2,297	2,608	2,052	2,060
	분유	1,381	1,535	1,578	1,661	1,806	1,851	2,088
	유아용 의복	356	355	373	367	276	204	294
	유아용 내의	664	1,026	1,046	969	741	639	838
	유아·아동 도서	468	519	499	516	790	812	872

- 수입산의 면세 대상 부가가치세액은 유아용 의복·내의는 감소추세이며 그 외 품목은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

수입산 육아용품의 면세 대상 부가가치세액 추정: 2015~2021년

(단위: 억원)

구분	품목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매출세액 ($J=H \times 10\%$)	기저귀	129	69	186	230	261	205	206
	분유	138	154	158	166	181	185	209
	유아용 의복	36	36	37	37	28	20	29
	유아용 내의	66	103	105	97	74	64	84
	유아·아동 도서	47	52	50	52	79	81	87
매입세액 ¹⁾ (F)	기저귀	72	39	105	129	147	116	115
	분유	0.4	0.1	1.2	0.8	0.3	2.3	0.3
	유아용 의복	20	20	21	20	15	11	16
	유아용 내의	38	57	59	54	42	36	47
	유아·아동 도서	0.2	0.2	0.4	0.1	0.2	0.6	0.3
부가가치세액 ($K=J-F$)	기저귀	56	30	79	98	111	87	91
	분유	136	152	155	163	178	181	206
	유아용 의복	16	16	17	16	12	9	13
	유아용 내의	29	45	46	43	33	28	37
	유아·아동 도서	47	52	50	51	79	81	87

주: 1) 매입세액은 통관수입 과정에서 실제 부과된 부가가치세액

- 향후 부가가치세 면제를 영구 적용 시 수입산 육아용품에 대한 감면액은 2023년 기저귀 81억원, 분유 162억원, 유아용 의복 및 내의 36억원, 유아·아동 도서 80억원 등 총 359억원 수준으로 추정

수입산 육아용품의 부가가치세 감면액 추정: 2023~2027년

(단위: 억원)

품목	2023	2024	2025	2026	2027
기저귀	81	79	78	80	85
분유	162	158	157	161	171
유아용 의복	9	9	8	8	8
유아용 내의	27	27	26	25	25
유아·아동 도서	80	78	75	73	71
합계	359	349	344	347	360

소형 화물자동차 연료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환급: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 주요내용

- 소형 화물자동차 연료에 대해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개별소비세를 환급
 - (환급액) 경유는 교통·에너지·환경세 250원/ℓ, LPG부탄은 개별소비세 전액
 - (1대당 환급액 한도) 연간 60만원
 - (적용기한) 2025년 12월 31일

2. 비용추계 결과

- 소형 화물자동차 연료에 대해 2025년 말까지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개별소비세 환급을 적용함에 따라 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는 2023년 1,074억원, 2025년 1,167억원 등 2023년에서 2025년까지 3년간 총 3,360억원(연평균 1,120억원)의 재정수입 감소 예상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단위: 억원)

	2023	2024	2025	누적	연평균
소형 화물자동차 연료에 대한 환급	-1,074	-1,119	-1,167	-3,360	-1,120
- 교통·에너지·환경세	-1,006	-1,053	-1,103	-3,162	-1,054
- 개별소비세	-68	-66	-64	-197	-66

3. 재정수반요인

- 소형 화물자동차 연료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 적용

- 1톤 이하인 소형 화물자동차 연료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개별소비세를 환급함에 따라 교통·에너지·환경세수 및 개별소비세수의 감소가 예상됨

4. 비용추계의 전제

■ 2022년 중 개정안이 통과되어 2023년부터 개정안이 적용되는 것으로 전제

- 개정안의 부칙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부터 개정안을 적용하는 것으로 추계

■ 본 비용추계는 다음의 가정을 통해 추계

- 연도별 세수효과는 '소형 화물자동차 대수 × 1대당 환급액'의 방식으로 추계
 - 1대당 환급액은 '1대당 평균 연료 사용량 × 연료 단위당 환급액'으로 추정하되, 연간 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60만원으로 산출
- 소형 화물자동차는 개정안에 따라 1톤 이하(배기량 1천cc 미만 경형 화물자동차 포함)을 대상으로 하되, 차량 수 및 평균 연료 사용량은 현재 집계되고 있는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 차량 자료(국토교통부 제공)를 활용
 - 개정안은 복수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경우 1대에 대해서만 환급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나, 자료의 한계로 이를 별도로 구분하지는 못함
 - 그 외 개정안의 제외 대상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⁹⁹⁾를 받은 사업에 사용되는 차량과 석유가격구조개편에 따른 지원사업¹⁰⁰⁾의 수혜 대상자인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가 소유하는 차량 역시 별도 구분이 어려움
 - 향후 차량 대수 및 평균 연료 사용량은 최근 3년 간 증감 추세가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 동 제도는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유류를 구입하는 경우 신용카드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액을 신청하거나 납부세액에서 공제받는 방식
 - 유류 반출 시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개별소비세에 대하여 부과되는 교육세·자동차세·부가가치세 등의 변화는 없는 것으로 전제

99)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100)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0호의2

-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개별소비세 환급은 현재 화물자동차에 대해 적용되고 있는 유가보조금 제도와 중복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전제
 - 유가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자동차세를 재원으로 사업용 화물차주에 지급하는 재정지원 제도¹⁰¹⁾¹⁰²⁾

5. 비용추계 상세 내역

가. 최근 소형 화물자동차 연료 사용 현황

- 최근 3년 간 소형 화물자동차 중 경유 연료를 사용하는 차량 수는 연평균 4.7% 증가하고, LPG부탄을 사용하는 차량 수는 3.4% 감소하는 추세
 - 경유 차량은 2019년 14만 대에서 2021년 15만 대로 연평균 4.7% 증가
 - LPG부탄 차량은 2019년 1.3만 대에서 2021년 1.2만 대로 연평균 3.4% 감소

소형 화물자동차 대수: 2019~2021년

(단위: 대, %)

사용 연료별	2019	2020	2021	연평균 증감률
경유 차량	139,441	145,693	152,902	4.7
LPG부탄 차량	13,039	12,730	12,163	-3.4

주: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인 소형 화물자동차(1톤 이하 차량 등) 기준

자료: 국토교통부 제출자료

101)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3조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시·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 제44조 및 제44조의2에서 같다)는 운송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및 제40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이하 이 조, 제44조 및 제44조의2에서 “운송사업자등”이라 한다)에게 유류(油類)에 부과되는 다음 각 호의 세액 등의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교육세법」 제5조제1항,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2조제1항제2호, 「지방세법」 제136조제1항에 따라 경유에 각각 부과되는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자동차세

2.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바목, 「교육세법」 제5조제1항,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석유가스 중 부탄에 각각 부과되는 개별소비세·교육세·부과금

102) 지급단가는 경유(교통·에너지·환경세율 375원/ℓ 기준) 345.54원/ℓ, LPG부탄(개별소비세율 275원/kg 기준) 197.97원/kg

- 최근 3년 간 소형 화물자동차 1대당 평균 연료 사용량의 연평균 증감률은 경유 0.5%, LPG부탄 0.3% 수준

- 경유 사용량은 2019년 3,733ℓ에서 2021년 3,771ℓ로 연평균 0.5% 증가
- LPG부탄 사용량은 2019년 2,392ℓ에서 2021년 2,406ℓ로 연평균 0.3% 증가

소형 화물자동차 1대당 평균 연료 사용량: 2019~2021년

(단위: ℓ, kg, %)

연료	2019	2020	2021	연평균 증감률
경유(ℓ)	3,733	3,733	3,771	0.5
LPG부탄(kg) ¹⁾	2,392	2,340	2,406	0.3

주: 1) LPG부탄은 리터 단위의 자료를 kg 단위로 환산함(1리터=0.5848kg)

1.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인 소형 화물자동차 기준

자료: 국토교통부 제출자료

나. 세수효과 추계

- 개정안에 따른 향후 차량 1대당 환급액은 평균 연료 사용량에 환급액 단가를 곱하여 추정하되, 환급액 한도인 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60만원으로 산출
 - 1대당 평균 연료 사용량은 최근 3년 간 연평균 증감률 추세(경유 0.5%, LPG부탄 0.3%)가 향후에도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 개정안에 따른 환급액 단가는 경유의 경우 교통·에너지·환경세 250원/ℓ, LPG부탄의 경우 개별소비세 전액임

소형 화물자동차 1대당 연간 환급액 추정: 2023~2025년

(단위: ℓ, kg, 만원, %)

유류	구 분	2023	2024	2025	연평균 증감률
경유	평균 연료 사용량(A)	3,809	3,829	3,848	0.5
	교통·에너지·환경세 환급액 산출 ($B=A \times \text{환급액 단가 } 250\text{원}/\ell$)	95	96	96	0.5
	최종 환급액 ($C=\min(B, 60\text{만원})$)	60	60	60	-
LPG 부탄	평균 연료 사용량(D)	2,420	2,427	2,434	0.3
	개별소비세 환급액 산출 ($E=D \times \text{환급액 단가 } 275\text{원}/\text{kg}$)	67	67	67	0.3
	최종 환급액 ($F=\min(E, 60\text{만원})$)	60	60	60	-

■ 소형 화물자동차 연료에 대해 환급을 적용할 경우 전체 환급액은 2023년 교통·에너지·환경세 1,006억원, 개별소비세 68억원 등으로 추정

- 연료 유형별 차량 대수는 최근 3년 간 연평균 증감률 추세(경유 차량 4.7%, LPG부탄 차량 -3.4%)가 향후에도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소형 화물자동차 연료에 대한 전체 환급액 추정: 2023~2025년

(단위: 대, 만원, 억원)

유류	구 분		2023	2024	2025	연평균 증감률
경유	차량 대수(G)		167,662	175,569	183,848	4.7
	교통·에너지·환경세 환급액	1대당(C)	60	60	60	-
		전체($G \times C$)	1,006	1,053	1,103	4.7
LPG 부탄	차량 대수(H)		11,346	10,958	10,584	-3.4
	개별소비세 환급액	1대당(F)	60	60	60	-
		전체($H \times F$)	68	66	64	-3.4

V

기타 분야

1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 및 지방소비세율 조정: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 주요내용

■ 주택 유상거래시 적용되는 취득세율을 인하하고, 지방소비세율을 인상

-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 (현행) 6~9억원 1~3%, 9억원 초과 3%
(개정안) 6~12억원 1~3%, 12억원 초과 3%
- 지방소비세율: (현행) '22년 23.7%, '23년 25.3%
(개정안) '22년 24.15%, '23년 25.75%
- 동 개정안은 부칙에 따라 2022년 3월부터 시행

2.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주택 유상거래시 적용되는 취득세율을 인하하고, 지방소비세율을 인상할 경우, 지방세는 2022년 563억원, 2026년 1,722억원 등 2022~2026년 5년간 총 6,412억원(연평균 1,282억원)의 재정수입 증가 예상
- 단, 개정안은 연계법안에 따라 부가가치세에서 지방으로 이양되는 지방소비세율 인상시 지방세 증가액만큼 국세가 감소하므로, 국가 전체적으로는 지방소비세율 인상으로 인한 재정수입의 변동이 없음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취득세 및 지방소비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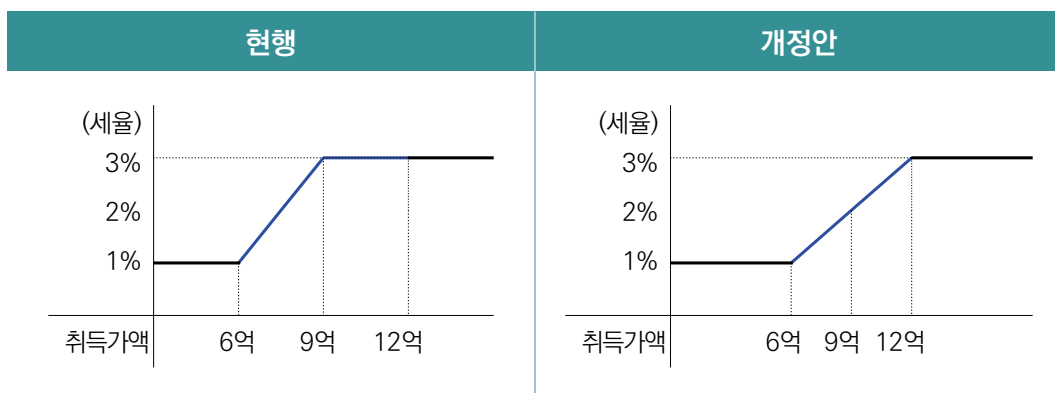
(단위: 억원)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누적	연평균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 인하	-2,803	-3,364	-3,364	-3,364	-3,364	-16,260	-3,252
지방소비세율 인상	3,366	4,575	4,738	4,907	5,086	22,672	4,534
합 계	563	1,211	1,374	1,543	1,722	6,412	1,282

3. 재정수반요인

- 취득가액 6~12억원 구간의 주택 유상거래시 적용되는 취득세율을 인하함에 따라 취득세 수입의 감소가 예상됨
 - 주택 유상거래시 적용되는 1~3% 세율이 점증적으로 적용되는 구간을 현행 취득가액 6~9억원에서 6~12억원으로 확대하고, 3%의 비례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을 현행 9억원 초과 구간에서 12억원 초과 구간으로 조정
 - 현행 취득세율은 취득가액 6~9억원 구간에서 150만원당 0.01%씩 점증하는데, 개정안의 취득세율은 취득가액 6~12억원 구간에서 300만원당 0.01%씩 점증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 비교: 현행 및 개정안



- 지방소비세율을 상향함에 따라 지방소비세 수입의 증가가 예상됨
 -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2022년 23.7%, 2023년 이후 25.3%에서 2022년 24.15%, 2023년 이후 25.75%로 각각 0.45%p 인상
 - 단, 지방세 증가액만큼 국세가 감소하므로, 국가 전체적으로는 재정수입의 변동이 없음

4. 비용추계의 전제

- 개정안은 부칙에 따라 2022년 3월 1일부터 적용되어 감면의 세수효과가 2022년부터 발생한다고 가정
 - 2022년은 3월부터 10개월간, 2023년 이후부터는 연간 세수효과를 추정
- 취득세율 하향에 따른 세수효과는 국토교통부의 주택 실거래가 원자료를 바탕으로 2021년 기준 거래주택의 가격대별 분포가 향후에도 유지될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
 - 국토교통부 자료를 바탕으로 2021년 주택 유상거래(매매)의 취득가액 및 거래건수 분포가 향후에도 유지되며, 취득가액 및 거래건수의 분포는 월별로 차이가 없다고 가정
 - 국토교통부의 2021년 기준 주택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자료의 취득가액 6~12억원 구간내 개별건수의 거래금액에 현행 및 개정안의 세율을 적용하여 연간 세수효과를 산출
 - 단, 2022년은 10개월간의 세수효과만 적용되므로, 월별 취득가액 및 거래건수 분포가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연간 세수효과에 10/12를 곱하여 비례적으로 세수효과 산출
 - 거래가 발생한 연도의 취득세 납부는 해당 연도에 전액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
 - 취득세는 취득일 후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도록 규정¹⁰³⁾
 - 취득자 유형, 주택보유수 등에 따라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음
 - 현행 주택 유상거래시 법인 또는 개인 다주택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며,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취득은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가 발생하지 않음
 - ※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조정대상지역 외 3주택자): 8%
조정대상지역 3주택 이상 보유자(조정대상지역 외 4주택 이상) 및 법인: 12%

103) 「지방세법」 제20조제1항

- 국토교통부 주택 실거래 원자료는 거래자의 주택보유수 등의 정보가 부재하여 중과세율 적용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본 추계에서는 중과세율 적용을 고려하지 않음

■ 향후 지방소비세수는 국회예산정책처의 2022~2026년 부가가치세수 전망액(2021.10.)에 비례하여 증가할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

- 향후 부가가치세수는 국회예산정책처의 부가가치세수 전망과 동일한 수준일 것으로 가정
 - 국회예산정책처의 부가가치세수 전망액은 경상 GDP, 수입·수출, 설비투자 등 부가가치세수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거시지표 전망치를 설명변수로 하여 추정
 - 단, 국회예산정책처의 부가가치세수 전망은 현행 지방소비세 이양 이후의 세수 전망임을 감안하여 지방소비세 이양 이전의 세수를 전망한 후 현행 및 개정안의 지방소비세율을 반영하여 세수효과를 추정
- 연간 지방소비세는 분기별로 동일한 비율이 이양된다고 가정
 - 단, 2022년은 3분기간의 세수효과만 적용되므로, 연간 세수효과에 3/4를 곱하여 비례적으로 세수효과 산출
 - ※ 1분기의 경우 1월 신고 및 납부실적이 1~2월에 전액 지방소비세로 이양

5. 비용추계 상세 내역

가.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효과

- 개인이 주택을 유상거래(매매)하여 취득한 경우, 취득가액에 따라 1~3%의 세율이 적용
- 현행 취득가액 6억원 이하 1%, 6~9억원 1~3%, 9억원 초과시 3%의 세율을 적용하는데, 개정안은 6~12억원 1~3%, 12억원 초과시 3%의 세율을 적용
 - 단, 개인 다주택자 및 법인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은 고려하지 않음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 취득가액 구간별

취득가액	현행(A, %)	개정안(B, %)	차이(B-A, %p)
6억원 이하	1	1	-
6~9억원	1~3	1~3	△1~0
9~12억원	3		
12억원 초과		3	-

- 국토교통부 주택 실거래가 원자료(2021년 기준)를 바탕으로 취득가액 6~12억원 구간 개별거래의 거래금액과 현행 및 개정안의 세율을 이용하여 연간 세수효과를 추계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의 주택 유형별(아파트,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 등) 거래를 합산한 후, 거래 미성립 등으로 주택거래 신고가 해제된 경우를 제외하여 산정
 - 개정안에 따라 세율의 변동이 있는 취득가액 6~9억원 구간과 9~12억원 구간에서의 거래는 각각 6.3만건, 2.0만건의 건수와 46.4조원, 21.0조원의 거래금액을 기록

취득가액 구간별 주택 거래건수 및 거래금액: 2021년 기준

(단위: 건, 억원)

취득가액 구간	6억원 이하	6~9억원	9~12억원	12억원 초과	합계
거래건수	751,860	63,101	20,260	24,262	859,483
거래금액	1,659,596	464,441	209,630	471,756	2,805,423

자료: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접근일자: 2022.1.10.)

- 취득가액 6~12억원 구간의 개별 거래에 현행 및 개정안의 세율을 적용하여 추계한 연간 세수 감소효과는 3,364억원 수준
 - 취득가액 구간별 거래건수 및 총취득가액과 세수효과는 다음과 같음
 - ※ 총취득가액은 취득가액 구간내 모든 거래의 거래금액의 합산액

취득가액 구간별 주택 거래건수 및 거래금액: 2021년 기준

취득가액	거래건수 (건)	총취득가액 (A, 억원)	세율(%)		세수효과 (A×[B'-B], 억원)
			현행(B)	개정안(B')	
6~9억원	63,101	464,441	1~3 ¹⁾	1~2 ²⁾	-2,262
9~12억원	20,260	209,630	3	2~3 ²⁾	-1,102
계	83,361	674,071	-	-	-3,364

주: 1) 현행 취득가액 6~9억원 구간의 세율은 1%에서 매 150만원당 0.01%씩 상승하는 점증구조
 2) 개정안의 취득가액 6~12억원 구간의 세율은 1%에서 매 300만원당 0.01%씩 상승하는 점증구조
 자료: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접근일자: 2022.1.10.)

- 단, 개정안의 부칙에 따라 2022년은 10개월간 적용되므로, 연간 세수효과에 $\frac{10}{12}$ 인 2,803억원의 세수효과만 발생
 $\text{※ 세수효과(10개월분)} = \Delta 3,364\text{억원} \times 10\text{개월}/12\text{개월}$

- 개정안에 따라 주택 유상거래시 적용되는 취득세율을 인하할 경우, 2022년 2,803억원, 2026년 3,364억원 등 2022~2026년 5년간 총 1조 6,260억원 (연평균 3,252억원)의 재정수입 감소 예상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 하향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2022~2026년

(단위: 억원)

	2022	2023	2024	2025	2026	누적	연평균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 하향	-2,803	-3,364	-3,364	-3,364	-3,364	-16,260	-3,252

나. 지방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세수효과

- 지방소비세액은 부가가치세액의 일정비율(지방소비세율)로 결정
 - 지방소비세율은 2021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2022년 23.7%, 2023년 25.3%로 상승할 예정으로, 개정안은 현행 2022~2023년 지방소비세율을 0.45%p 추가적으로 인상

연도별 지방소비세율: 2022~2023년

	현행(A, %)	개정안(B, %)	차이(B-A, %p)
2022년(예정)	23.7	24.15	0.45
2023년(예정)	25.3	25.75	

- 국회예산정책처의 2022~2026년 부가가치세수 전망치를 바탕으로 현행 및 개정안의 지방소비세율을 적용하여 세수효과 추계
 - 국회예산정책처의 부가가치세수 전망치는 2022년 76.1조원에서 2026년 84.4조원으로 증가

부가가치세수 전망: 2022~2026년

(단위: 조원)

	2022	2023	2024	2025	2026
부가가치세수 전망치	76.1	75.9	78.7	81.5	84.4

- 부가가치세수 전망치에 현행 지방소비세율을 이용하여 지방 이양 이전의 부가가치세수를 구한 후, 현행 및 개정안의 지방소비세율을 적용하여 세수효과 추계
 - 국회예산정책처의 부가가치세수 전망치는 현행 지방소비세율을 기준으로 지방소비세 이양 이후의 세수 전망이므로 역산을 통해 지방 이양 이전의 부가가치세수를 산출
 - ※ 지방 이양 이전의 부가가치세수는 현행 부가가치세와 지방소비세의 합계액과 동일
 - 산출된 이양 이전의 부가가치세수에 현행 및 개정안의 지방소비세율 차이(0.45%p)를 적용하여 그 차이로 세수효과 추계
 - ※ 세수효과 = 이양 이전의 부가가치세수 × 0.45%p
 - 단, 개정안의 부칙에 따라 2022년은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점을 감안해, 2022년의 경우 분기별로 동일하게 징수됨을 가정하여 연간 세수효과에 3/4만을 반영¹⁰⁴⁾
 - ※ 세수효과(3분기분) = 99.7조원 × 0.45% × 3분기/4분기

104) 매년 1분기의 경우 1월 신고 및 납부실적이 1~2월에 전액 지방소비세로 이양됨

지방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세수효과 추정: 2022~2026년

	2022	2023	2024	2025	2026
부가가치세수 전망(A, 조원)	76.1	75.9	78.7	81.5	84.4
현행 지방소비세율(B, %)	23.7	25.3	25.3	25.3	25.3
지방소비세 포함 부가가치세수 전망(C=A/[1-B], 조원)	99.7	101.7	105.3	109.0	113.0
세수효과 (D=C×0.45%p, 억원)	3,366 ¹⁾	4,575	4,738	4,907	5,086

주: 1) 개정안의 부칙에 따라 2022년 3월부터 적용되므로, 연간 세수효과에 3/4를 곱하여 추계

- 개정안에 따라 지방소비세율을 인상할 경우, 지방소비세는 2022년 3,366억원, 2026년 5,086억원 등 2022~2026년 5년간 총 2조 2,672억원(연평균 4,534억원)의 재정수입 증가 예상

지방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2022~2026년

(단위: 억원)

	2022	2023	2024	2025	2026	누적	연평균
지방소비세율 인상	3,366	4,575	4,738	4,907	5,086	22,672	4,534

2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요건 완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 주요내용

-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요건 완화, 감면율 조정 및 적용기한 연장
 - 소득기준 및 주택 취득가액 기준 요건 완화
 - 소득기준: (현행) 가구 합산소득 7천만원 이하 → (개정안) 없음
 - 취득가액 기준: (현행) 일반 3억원, 수도권 4억원 → (개정안) 12억원
 - 감면율 조정
 - (현행) 1.5억원 이하/초과 100%/50% 감면,
 - (개정안) 2억원/2~6억원/6억원 초과 100%/85%/취득세액 1,000만원 감면
 - 적용기한 연장: (현행) 2023.12.31.까지 → (개정안) 2025.12.31.까지

2. 비용추계 결과

-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요건을 완화하고 감면율을 조정하며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할 경우, 취득세는 2023년 5,156억원, 2025년 5,958억원 등 3년간 총 17,072억원(연평균 5,691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취득세

(단위: 억원)

	2023	2024	2025	누적	연평균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요건 완화 및 감면한도 상황	-5,156	-5,958	-5,958	-17,072	-5,691

3. 재정수반요인

-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요건(소득기준, 취득가액 기준)을 완화하고 감면율을 조정하며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할 경우, 취득세수의 감소가 예상됨
 - 소득기준 및 주택 취득가액 기준 요건 완화
 - 소득기준: (현행) 가구 합산소득 7천만원 이하 → (개정안) 없음
 - 취득가액 기준: (현행) 일반 3억원, 수도권 4억원 → (개정안) 12억원
 - 감면율 조정: (현행) 1.5억원 이하/초과 100%/50% 감면 → (개정안) 2억원/2~6억원/6억원 초과 100%/85%/취득세액 1,000만원 감면
 - 적용기한 연장: (현행) 2023.12.31.까지 → (개정안) 2025.12.31.까지

4. 비용추계의 전제

- 개정안은 2022년 중 통과되어 세수효과가 2023~2025년에 발생한다고 가정
 - 감면요건 완화 및 감면율 조정에 따른 세수효과는 2023~2025년,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2024~2025년에 발생하는 것으로 추계
 - 동 제도의 현행 적용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2023년 한 해는 감면요건 완화 및 감면율 조정에 따른 세수효과만 발생
 - 향후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한 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 이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취득 당해연도에 전액 발생한다고 가정
 - 취득세는 취득일 후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도록 규정
-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기준 완화로 인한 세수효과는 2020년 감면실적 및 2019년 기준 재정패널 자료의 가구총소득, 주택취득가액 분포 등을 바탕으로 2020~2022년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거래현황을 적용하여 추계
 - 향후 생애최초 주택 거래량은 「지방세통계연감」의 2020년 감면건수 및 행정안전부 중간 점검 발표 감면실적(2020.7~10)의 수도권 및 비수도권 비중을 바탕으로 한국부동산원의 주택매매거래 증감률에 따라 변화한다고 가정
 - 동 조항은 2020년 7월 10일 거래분부터 적용되었으며, 현재 「지방세통계연감」에 2020년 7월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약 6개월간의 실적자료가 존재

- 다만, 「지방세통계연감」에는 전국기준 감면실적은 있으나 수도권 및 비수도권 등 지역별로 구분된 실적은 부재하여, 행정안전부가 중간점검하여 발표한 2020년 감면실적(2020.7~10)¹⁰⁵⁾의 수도권 및 비수도권 비중[※]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
 ※ 2020년 7~10월 감면실적: (수도권) 12,870건(43.5%), 181억원(49.6%)
 (비수도권) 16,709건(56.5%), 184억원(50.4%)
- 한편, 한국부동산원의 연도별 주택매매거래량 추이는 다음과 같음

주택 매매거래량: 2019~2022년

(단위: 건, %)

구분		2019	2020	2021	2022.8	2022 ¹⁾
수도권	거래건수	398,866	642,628	479,227	154,448	231,672
	(전년대비 증감률)	-	(61.1)	(-25.4)	-	(-51.7)
비수도권	거래건수	406,406	636,677	535,944	230,943	346,415
	(전년대비 증감률)	-	(56.7)	(-15.8)	-	(-35.4)

주: 1) 2022년 거래량은 2022년 8월까지의 거래량을 바탕으로 계산한 월평균 거래량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하고 2022년 8월까지의 거래량에 2/3을 적용하여 산출

자료: 한국부동산원(R-ONE)의 월별/연도별 주택매매거래건수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2019년 재정패널 자료¹⁰⁶⁾의 가구소득 및 주택취득가액 분포 등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 추계
 - 재정패널 자료상 2018년말 기준 무주택자이면서 2019년 기준 자가에 거주하는 자가 주택을 취득한 경우를 생애최초 취득자로 가정
 - 가구 합산소득 요건 삭제에 따른 감면건수의 증가분을 재정패널 자료의 가구소득자료를 이용하여 추정
 - 주택취득가액 요건 완화 및 감면한도 상향에 따른 감면건수의 증가분 및 건당 감면액을 재정패널 자료의 최초취득주택 중 해당 가액요건을 만족하는 건수와 주택취득가액을 이용하여 추정

105)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3개월 간 3만 명 혜택”, 2020.10.28.

106) 가용한 재정패널자료 중 가장 최근 자료는 13차년도 조사이며, 이는 2020년도에 2019년 귀속분에 대해 조사한 자료

- 다만, 주택취득가액의 경우 2019년 주택취득가액을 바탕으로 한국부동산원의 연도별·지역별·주택유형별¹⁰⁷⁾ 주택 매매가격지수 증감률을 적용하여 2022년 기준으로 환산

주택 매매가격지수¹⁾: 2019~2022년

(단위: 지수, %)

구분		2019.12	2020.12	2021.12	2022.9 ²⁾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86.5	93.1	106.2	104.5
	(전년대비 증감률)	-	(7.57)	(14.10)	(-1.64)
연립다세대	매매가격지수	97.4	98.6	102.5	102.5
	(전년대비 증감률)	-	(1.16)	(3.97)	(-0.01)
단독주택	매매가격지수	96.1	98.5	101.5	103.4
	(전년대비 증감률)	-	(2.50)	(3.10)	(1.81)

주: 1) 주택매매가격지수의 기준년월은 2021년 6월(2021.6=100)

2) 2022년 9월 주택매매가격지수 증감률은 2021년 12월 대비 증감률을 의미

자료: 한국부동산원(R-ONE)의 월별/연도별 주택매매거래건수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추정한 2022년 기준 주택취득건수 및 취득가액이 2023년 이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

5. 비용추계 상세 내역

- (제도개요) 이전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가구가 일정 가격 이하의 주택을 취득할 경우, 주택가액에 따라서 부과되는 취득세 감면
 - 현행은 가구소득 7천만원 이하의 가구가 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가액에 따라서 부과되는 취득세의 50~100% 감면
 - 개정안은 감면요건의 소득기준과 주택취득가액기준을 완화하고, 감면율 조정 및 적용기한 2년 연장

107) 주택유형은 아파트, 연립다세대, 단독주택으로 구분

주요 개정내용

	현행	개정안
소득기준	· 가구 합산소득 7천만원 이하	· (삭제)
취득가액	· 3억원 이하(수도권 4억원 이하)	· 12억원 이하
감면내용	· (1억 5천만원 이하) 100% 감면 (1억 5천만원 초과) 50% 감면	· (~2억원) 100% 감면 (2~6억원) 85% 감면 ¹⁾ (6억원~) 취득세액 1,000만원 미만: 전액 취득세액 1,000만원 이상: 1,000만원
적용기한	2023.12.31.	2025.12.31.

주: 1) 개정안은 주택 취득가액 6억원 이하 구간에 대해 100% 감면을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에 따라 취득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00% 감면 규정에도 불구하고 85%의 감면율을 적용

- (감면실적) 2020년 7~12월간 발생한 생애최초 주택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실적은 862억원(68,887건) 수준
 - 동 조항은 2020년 7월 10일 거래분부터 적용되어 현재 「지방세통계연감」에 2020년 7월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약 6개월간의 실적자료가 존재
- (추계방법: 감면한도 상향) 2019년 재정패널 자료의 최초 취득주택 중 주택 취득가액별(수도권 4억원 이하, 비수도권 3억원 이하) 평균 취득가액에 주택 매매가격지수 증감률을 적용하여 건당 감면액을 추정하고, 기존 감면건수에 주택거래량 추이를 적용하여 감면한도 상향에 따른 세수효과 추계
 - 기존 감면대상의 경우 감면한도 상향에 따른 세수효과는 현행에 따라 50% 감면을 적용 받는 수도권 1.5~4억원 구간, 비수도권 1.5~3억원 구간에서 발생
 - 2019년 기준 재정패널 자료의 최초 취득주택 중 수도권 1.5~4억원 구간의 평균취득가액은 2.5억원이며, 수도권 1.5~3억원 구간의 평균 취득가액은 2.1억원
 - 주택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추정한 건당 취득세액은 수도권의 경우 250만원, 비수도권의 경우 213만원 수준
 - 현행은 주택취득가액이 1.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액의 50%를 감면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에 따른 건당 세수효과는 수도권의 경우 109만원, 비수도권의 경우 96만원 수준

- 2023년 감면건수는 수도권 4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21,611건, 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42,346건으로 추정
 - 2023년 이후 감면건수는 2020년 감면건수의 1년단위 환산분에 주택거래량 추이를 반영한 2022년 추정치가 유지된다고 가정

감면 건수 추정

(단위: 건)

	현행		주택거래량 추이 반영 ¹⁾	
	2020년 실적 (7월~12월)	1년단위 환산	2021	2022
수도권 (4억원 이하)	29,973	59,946	44,704	21,611
비수도권 (3억원 이하)	38,914	77,828	65,514	42,346

주: 1) 2020년 감면건수를 1년 단위로 환산한 값에 한국부동산원의 주택매매거래량 증감률[수도권 ('21년) -25.4%, ('22년) -51.7%, 비수도권 ('21년) -15.8%, ('22년) -35.4%]을 적용하여 추정
 자료: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및 「2021 지방세통계연감」, 주택 매매거래량 추이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감면을 조정에 따른 기존 감면대상에 대한 취득세 세수효과는 수도권 -235억원, 비수도권 -409억원 수준

감면을 조정에 따른 기존 감면대상에 대한 세수효과 추정

	건당 세수효과 (A,만원)	감면건수 (B,건)	세수효과 (A×B÷10,000,억원)
수도권(4억원 이하)	-109	21,611	-235
비수도권(3억원 이하)	-96	42,346	-409
계	-	-	-644

- (추계방법: 감면요건 완화) 지역별로는 수도권 및 비수도권, 감면요건별로는
 - ① 소득요건 삭제(취득가액 요건 유지), ② 취득가액 요건 완화(소득요건 유지), ③ 소득요건 삭제 및 취득가액 요건 완화로 구분하여 세수효과 추계
- 개정안에 따른 신규 감면대상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각각의 건당 감면액과 감면건수 증가분을 추정하고, 건당 감면액과 감면 건수 증가분을 곱하여 2023년의 연간 세수효과 추계
 - 취득주택의 가액요건이 다르게 적용되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
 - 감면요건 완화에 따른 신규 감면대상은 다음과 같이 구분

감면요건 완화에 따른 신규 감면대상 유형

	취득가액 요건	
소득요건	유지(7천만원), 유지(수도권 3억원, 비수도권 4억원)	유지, 완화(12억원) (유형 ②)
	삭제, 유지 (유형 ①)	삭제, 완화(12억원) (유형 ③)

- 감면요건 완화에 따른 세수효과는 가구합산소득 7천만원 이상, 주택취득가액 수도권 4~12억원, 비수도권 3~12억원 구간에서 발생
 - 2019년 기준 재정패널 자료에서 주택 신규 취득 가구를 대상으로 현행과 개정안에 따른 신규 감면대상의 가구 수 차이를 바탕으로 감면요건 완화에 따른 감면건수 증가율 추정
 - 2019년 기준 재정패널 자료상 개정안에 따른 가구 수 총 증가분은 수도권 18건, 비수도권 18건이며 이를 유형별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음

감면요건 완화에 따른 신규 감면대상 유형별 감면건수 증가율 추정

(단위: 건, %)

		현행 (A)	개정안 (B)	증가분 (C=B-A)	증가율 (D=C/A)
유형 ①	수도권	9	12	3	33.3
	비수도권	19	24	5	26.3
유형 ②	수도권	9	16	7	77.8
	비수도권	19	27	8	42.1
유형 ③	수도권	9	27	8 ¹⁾	88.9
	비수도권	19	37	5 ¹⁾	26.3

주 1) 전체 증가분에서 유형 ①, 유형 ②에 따른 증가분을 제외한 값

주: 1. 유형 ①: 소득요건 삭제, 취득가액 요건 유지, 유형 ②: 소득요건 유지, 취득가액 요건 완화

유형 ③: 소득요건 삭제 및 취득가액 요건 완화

2. 각 수치는 재정패널 자료에서 2018년말 기준 무주택자 중 2019년 주택을 신규 취득한 가구만을 대상으로 집계한 값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재정패널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주택 거래량 추이를 반영하여 추정한 기존 감면대상 감면건수를 바탕으로 감면요건 완화에 따른 유형별 감면건수 증가율을 적용하여 신규 감면대상 감면건수 추정

감면요건 완화에 따른 유형별 감면건수 증가분 추정

(단위: 건)

지역	현행 ¹⁾	개정안에 따른 증가분 ²⁾		
		유형 ①	유형 ②	유형 ③
수도권	21,611	7,204	16,809	19,210
비수도권	42,346	11,144	17,830	11,144

주: 1) 2020년 감면건수를 1년 단위로 환산한 값에 주택 거래량 추이를 반영하여 추정한 기존 감면대상 감면건수를 의미

2) 유형 ①(소득요건 삭제, 취득가액 요건 유지) 수도권 33.3%, 비수도권 26.3%

유형 ②(소득요건 유지, 취득가액 요건 완화) 수도권 77.8%, 비수도권 42.1%

유형 ③(소득요건 삭제 및 취득가액 요건 완화) 수도권 88.9%, 비수도권 26.3%

- 유형별 신규 감면대상에 대한 건당 감면액은 재정패널 자료의 최초취득주택 중 각 유형에 해당하는 주택의 평균 취득가액을 바탕으로 해당 가액에 적용되는 취득세율 1~3%와 감면한도를 적용하여 추정

감면요건 완화에 따른 신규 감면대상 유형별 건당 감면액 추정

		평균 취득가액(억원)	건당 감면액(만원) ¹⁾
유형 ①	수도권	3.1	312
	비수도권	1.2	118
유형 ②	수도권	7.9	842
	비수도권	3.6	307
유형 ③	수도권	7.7	861
	비수도권	5.4	512

주: 1) 평균 취득가액을 바탕으로 취득세율 1~3% 및 개정안에 따른 감면 한도를 적용하여 추정

1. 유형 ①: 소득요건 삭제, 취득가액 요건 유지, 유형 ②: 소득요건 유지, 취득가액 요건 완화
유형 ③: 소득요건 삭제 및 취득가액 요건 완화

- 감면요건 완화에 따른 유형별 신규 감면대상에 대한 취득세 세수효과는 다음과 같음

감면요건 완화에 따른 신규 감면대상 유형별 세수효과 추정

		건당 세수효과 (A,만원)	감면건수 (B,건)	세수효과 (A×B÷10,000,억원)
유형 ①	수도권	-265	7,204	-191
	비수도권	-188	11,144	-210
유형 ②	수도권	-842	16,809	-1,415
	비수도권	-307	17,830	-548
유형 ③	수도권	-861	19,210	-1,653
	비수도권	-512	11,144	-570
계		-	-	-4,588

주: 1. 개정안에 따른 건당 감면액 한도는 1,000만원

2. 유형 ①: 소득요건 삭제, 취득가액 요건 유지, 유형 ②: 소득요건 유지, 취득가액 요건 완화
유형 ③: 소득요건 삭제 및 취득가액 요건 완화

- (추계방법: 적용기한 연장)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2019년 기준 재정패널 자료의 현행 감면대상을 바탕으로 주택 매매거래량 및 주택 매매가격 지수 증감률, 현행 감면율을 적용하여 추계

-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현행 감면대상에 주택 매매거래량, 매매가격지수 증감률, 현행 감면율을 적용하여 추정한 감면 수준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추계
-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기존 감면대상에 대한 취득세 세수효과는 수도권 -294억원, 비수도권 -509억원 수준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기존 감면대상에 대한 세수효과 추정

	건당 세수효과 (A,만원)	감면건수 (B,건)	세수효과 (A×B÷10,000,억원)
수도권(4억원 이하)	-136	21,611	-294
비수도권(3억원 이하)	-120	42,346	-509
계	-	-	-803

■ 개정안에 따른 총 세수효과는 유형별 세수효과를 모두 더한 수치

개정안의 유형별 세수효과

(단위: 억원)

	2023	2024	2025
감면한도 상향 및 감면요건 완화	-5,156	-5,156	-5,156
적용기한 연장	-	-803	-803
합계	-5,156	-5,958	-5,958

3

여객자동차터미널 직접 사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 신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 주요내용

- 여객자동차터미널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 신설
 - 감면율: 재산세의 50% (2025.12.31.까지 적용)

2. 비용추계 결과

-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50% 감면을 신설(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는 경우, 재산세는 2023년 272억원, 2025년 294억원 등 2023년에서 2025년까지 3년간 총 849억원(연평균 283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개정안에 따른 지방재정수입 변화: 재산세

(단위: 억원)

	2023	2024	2025	누적	연평균
여객자동차터미널 직접 사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 신설	-272	-283	-294	-849	-283

3. 재정수반요인

- 여객자동차터미널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2025년까지 50% 감면함에 따라 재산세수의 감소가 예상
 - 감면율: 재산세의 50% (2025.12.31.까지 감면 적용)

4. 비용추계의 전제

- 금년 개정안이 통과되어 2023년 재산세 부과 시점부터 적용된다고 가정하여 개정안의 세수효과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발생하는 것으로 추계
 - 2023년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2023년 6월 1일임
- 여객터미널 직접 사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전국터미널협회가 제출한 터미널별 재산세 납부 실적을 바탕으로 다음의 가정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가정
 - 토지분 재산세의 경우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른 표준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라 증가('23년 4.6%, '24년 4.1%, '25년 3.9%)할 것으로 가정
 - 2020년 정부는 표준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8년내 90%로 제고하는 계획을 발표하였으며¹⁰⁸⁾, 2022년 기준 표준지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71.4%임¹⁰⁹⁾
 - 토지 공시지가 상승에는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를 제고 정책 외에 시세변동 등 시장요인의 영향도 있으나, 세수추계시 시장요인에 따른 변동은 없을 것으로 가정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른 표준지 공시가격 상승률: 2022~2025년

(단위: %)

	2022 ¹⁾	2023	2024	2025
공시가격 현실화율	71.4	74.7	77.8	80.8
공시가격 상승률 ²⁾	10.2	4.6	4.1	3.9

주 1) 2022년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및 상승률은 2022년 기준 확정(2022.1.25.)된 표준지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함

2) 공시가격 상승률은 시세불변 가정하에 공시가격 현실화율의 증가율로 계산

자료: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건축물분 재산세의 경우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이하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의 최근 3년(2020~2022년) 연평균상승률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가정
 -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각종 지수 및 잔존가치율 등을 적용하여 산정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함
 - 세수효과 추계시 향후 건물신축가격기준액만 상승하고, 그 외 각종 지수 및 기타 비율의 경우 현재 적용되는 기준이 동일할 것으로 가정

108)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2020.11.

109) 2020년 기준 상업용 표준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67.0%

건물 기준시가(시가표준액) 산정 기본 계산식

- (1) 기준시가(시가표준액) = 평가대상 건물의 면적(㎡) × ㎡당 금액
- (2) ㎡당 금액 = 건물신축가격기준액 × 구조지수 × 용도지수 × 위치지수
× 경과 연수별 잔가율 × 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

자료: 「국세청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 고시」 제5조

- 전국터미널협회 제출자료 중 재산세 납부 실적이 확인되지 않는 터미널의 경우, 해당 터미널 소재 지역의 다른 터미널이 납부한 면적당 평균 재산세액을 기준으로 추정

-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국의 여객자동차 터미널 수는 300개임
- 전국터미널협회가 제출한 61개 터미널의 재산세 납부자료를 바탕으로 미제출 터미널 239개의 재산세를 추정
 - 국토교통부의 터미널별 면적 자료를 바탕으로, 토지분과 건축물분을 구분하여 터미널별 재산세액 추정
 - 재산세액 추정시 지역내 모든 터미널의 재산세 자료가 없는 인천, 광주의 경우 광역시의 면적당 평균 재산세액을, 세종·제주의 경우 전국의 면적당 평균 재산세액을 사용

지역별 여객자동차터미널 개수(2022년 기준) 및 자료 제출 터미널 개수

구분	여객자동차터미널		
	전체	자료 제출	자료 미제출
서울	5개	4개	1개
부산	2개	1개	1개
대구	4개	2개	2개
인천	3개	-	3개
광주	1개	-	1개
대전	2개	2개	-
울산	2개	2개	-
세종	1개	-	1개

구분	여객자동차터미널		
	전체	자료 제출	자료 미제출
경기	30개	9개	21개
강원	37개	8개	29개
충북	17개	5개	12개
충남	21개	2개	19개
전북	31개	3개	28개
전남	48개	2개	46개
경북	62개	11개	51개
경남	32개	10개	22개
제주	2개	-	2개
계	300개	61개	239개

자료: 국토교통부 및 전국터미널협회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5. 비용추계 상세 내역

- 개정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를 50% 감면하고자 함
 - 감면율: 재산세의 50% (2025.12.31.까지 감면 적용)
- 2022년 기준 여객자동차터미널은 총 300개이며, 그중 재산세 납부 실적이 확인되는 61개 터미널에서 납부한 재산세액(2021년 기준)은 187.8억원(토지분 143.7억원, 건축물분 44.1억원)임

지역별 재산세 납부금액 실적(61개 터미널)¹⁾

(단위: 억원)

구분	재산세 납부액(실적)		
	계	토지분	건축물분
서울	117.6	99.2	18.4
부산	7.0	5.7	1.3
대구	1.7	1.7	0.1
인천	-	-	-
광주	-	-	-
대전	9.5	3.9	5.5
울산	2.5	2.3	0.1
세종	-	-	-
경기	16.7	10.2	6.5
강원	3.1	2.8	0.3
충북	0.5	0.4	0.1
충남	11.8	7.9	4.0
전북	0.2	0.2	0.0
전남	0.4	0.2	0.2
경북	3.2	2.3	0.9
경남	13.7	7.0	6.7
제주	-	-	-
총계	187.8	143.7	44.1

주: 1) 재산세 납부 실적이 확인되는 터미널의 수는 전체 300개 터미널 중 61개

자료: 전국터미널협회 제출자료

- 재산세 납부 실적 자료가 없는 곳에 대해서는 지역내 다른 터미널의 면적당 평균 재산세액을 기준으로 재산세액을 추정하였으며, 과세대상별 재산세액 추정 방법은 다음과 같음

- 전국터미널협회가 제출한 61개 터미널의 재산세 납부자료를 바탕으로 미제출 터미널 239개의 재산세 추정
 - 국토교통부의 터미널별 면적 자료를 바탕으로, 토지분과 건축물분을 구분하여 터미널별 각 면적에 지역별 면적당 평균 재산세액을 곱하여 재산세액 추정

- 재산세액 추정시 지역내 모든 터미널의 재산세 자료가 없는 인천, 광주의 경우 광역시의 면적당 평균 재산세액을, 세종·제주의 경우 전국의 면적당 평균 재산세액을 사용

과세대상별 재산세액 추정 방법

- (1) 토지분 재산세액 = 지역별 면적(㎡)당 평균 토지분 재산세액 × 해당 터미널 연면적(㎡)
 (2) 건축물분 재산세액 = 지역별 대합실 면적(㎡)당 평균 건축물분 재산세액
 × 해당 터미널 대합실 면적(㎡)

- 2021년 기준 재산세 납부세액 추정치는 475.5억원(토지분 412.7억원, 건축물분 62.8억원)

지역별 재산세 납부금액 추정(전체 300개 터미널)

(단위: 억원)

구분	재산세 납부액(추정)		
	계	토지분	건축물분
서울	119.6	100.6	18.9
부산	16.0	13.0	3.0
대구	14.0	13.7	0.2
인천	114.4	112.1	2.3
광주	37.7	35.0	2.7
대전	9.5	3.9	5.5
울산	2.5	2.3	0.1
세종	0.1	0.1	0.0
경기	67.7	56.9	10.8
강원	25.3	24.0	1.3
충북	6.7	6.0	0.7
충남	16.0	11.5	4.5
전북	5.3	4.8	0.5
전남	3.5	2.0	1.5
경북	9.5	7.5	2.0
경남	26.5	18.0	8.6
제주	1.3	1.2	0.2
총계	475.5	412.7	62.8

자료: 전국터미널협회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향후 토지분 재산세는 2021년 기준 전체 터미널에 대한 재산세액 추정치에 표준지 공시가격 현실화율 계획에 따른 상승률('23년 4.6%, '24년 4.1%, '25년 3.9%)을 반영하여 추정

여객자동차터미널 직접 사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전망: 토지분, 2022~2025년

구분	2022 ¹⁾	2023	2024	2025
공시가격 상승률(%)	10.2	4.6	4.1	3.9
토지분 재산세 전망(억원)	454.6	475.6	495.3	514.4

주: 2022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2022년 확정(2022.1.25.)된 표준지 공시가격의 전년대비 상승률

- 건축물분 재산세는 2021년 기준 전체 터미널에 대한 재산세액 추정치에 면적(㎡)당 건물신축가격기준액 상승률을 반영하여 추정
 - 2022년 건축물분 재산세의 경우 2021년 기준 납부 금액에 면적(㎡)당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의 전년대비 상승률(5.4%)을 곱하여 추정
 - 2022년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이 고시·시행되고 있으므로¹¹⁰⁾, 2022년 납부 금액 전망시 전년대비 상승률 사용
 - 2023~2025년 건축물분 재산세는 2022년 전망치에 면적(㎡)당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의 최근 3년(2020~2022년) 연평균상승률(3.4%)을 곱하여 추정

면적(㎡)당 건물신축가격기준액 및 연평균상승률: 2020~2022년

(단위: 천원, %)

구분	2020	2021	2022	'20~'22년 연평균상승률
면적(㎡)당 건물신축가격기준액	730	740	780	3.4

자료: 「국세청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 고시」 제6조

110) 국세청고시 제2021-59호(2021.12.31.)

여객자동차터미널 직접 사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전망: 건축물분, 2022~2025년

(단위: 억원)

구분	2022	2023	2024	2025
건축물분 재산세 전망	66.2	68.5	70.8	73.1

■ 재산세 전망에 개정안의 감면율(50%)을 적용하여 감면액 추정

여객자동차터미널 직접 사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액 추정: 2023~2025년

(단위: 억원)

구분	2023	2024	2025
토지분(A)	68.5	70.8	73.1
건축물분(B)	475.6	495.3	514.4
재산세 전망(C=A+B)	544.1	566.1	587.6
감면액(D=C×50%)	272.0	283.1	293.8

2022 법안 비용추계 이해와 사례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참고자료

비용추계 관련 법령

국회법 (비용추계 관련 조문)

제66조(심사보고서의 제출) ① 위원회는 안건 심사를 마쳤을 때에는 심사 경과 및 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안건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고 위원회에서 수정된 경우에는 제1항의 보고서에 그 안건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관하여 국회예산정책처가 작성한 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 의결로 추계서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79조의2(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 ① 의원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관한 국회예산정책처의 추계서 또는 국회예산정책처에 대한 추계요구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대한 비용추계요구서를 제출한 경우 국회예산정책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58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사 전에 해당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서를 의장과 비용추계를 요구한 의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원이 제1항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신설 2021.7.27.>¹¹¹⁾

③ 위원회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관한 국회예산정책처의 추계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추계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④ 정부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관한 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의 작성 및 제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111) 시행 2021.10.28.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회법」 제66조 및 제79조의2의 규정에 따른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비용추계서”라 함은 발의·제안 또는 제출되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지출의 순증가액 또는 재정수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2. “재정지출”이라 함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 및 「국가재정법」 별표 2의 규정에 따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출을 말한다.
3. “재정수입”이라 함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 및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국회의원·위원회 또는 정부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거나 위원회에서 수정된 의안이 비용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0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0억원 미만인 경우
2. 비용추계의 대상이 국가안전보장·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인 경우
3.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비용추계서의 작성) ① 비용추계서에는 비용추계의 결과, 재정수반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 정부가 제출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서에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② 비용추계서의 내용·서식 등 비용추계서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의장이 규정으로 정한다.

제5조(비용추계의 방법 등) ① 비용추계는 의안의 규정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과 하위 법령에의 위임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실시한다.

② 의안의 시행으로 인한 재정지출 또는 재정수입의 증감액은 상계하지 아니하고 이를 비용추계서에 각각 표시한다.

③ 법령·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의안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한다.

④ 비용추계의 기간은 해당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재정소요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다만, 5년의 기간으로 비용의 추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추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적인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⑥ 비용추계 값의 표시 등 비용추계의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의장이 규정으로 정한다.

제6조(재원조달방안의 작성) 정부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원조달방안을 작성하되, 당해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조세수입, 세외수입, 국채발행,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 등 정부내부수입, 차입금, 예비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부칙 <제192호, 2015.7.24>

이 규칙은 국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비용추계서의 작성) ① 규칙 제4조에 따른 비용추계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비용추계의 결과, 재정수반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부대의견,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가 제안한 의안이나 위원회에서 수정된 의안에 대해서는 비용추계의 상세내역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추계서의 구체적 작성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용추계의 결과 : 의안이 시행되는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재정부담주체별, 항목별 및 연도별로 요약하여 제시한다.
2. 재정수반요인 : 의안이 시행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 순증가 또는 재정수입 순감소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을 당해 의안 또는 관련 법령 등의 해당 조문과 함께 명시한다.
3. 비용추계의 전제 : 비용추계를 위하여 필요한 가격기준, 비용추계기간, 그 밖에 비용추계에 사용한 가정이나 방법 등을 명시한다.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비용추계의 타당성을 가늠할 수 있도록 비용추계 항목별로 비용추계의 방법, 비용추계에 사용한 자료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5. 부대의견 : 의안의 시행과 관련하여 법령 또는 제도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나 비용추계서의 활용상 한계 등을 제시할 수 있다.
6. 작성자 : 비용추계서를 작성한 기관이나 개인 등 작성자의 이름과 그 연락처를 기재한다.

제4조(비용추계의 방법) ① 비용추계는 직접적인 재정부담에 한정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재정부담 및 파급효과 등을 포함할 수 있다.

② 비용추계는 예산 또는 기금상 조치를 수반하는 조문별로 실시하되, 성질상 부적합한 경우에는 비용을 수반하는 항목별로 추계할 수 있다.

③ 비용추계의 값은 하나의 특정된 값으로 표시하되, 이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일정 범위로 나타낼 수 있다.

④ 비용추계는 원칙적으로 경상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이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다르게 표시할 수 있다.

제5조(재원조달방안의 작성) ① 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하는 재원조달 방안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 재원조달방안에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민간 등의 재원분담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의안의 시행에 따른 비용을 기존 예산이나 기금의 항목 간 조정으로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세수입, 세외수입, 국채발행,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 차입, 예비비 등 구체적인 재원조달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 재원조달방안을 수립함에 있어서 관련 법령이나 제도상의 개선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⑤ 재원조달방안과 관련하여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필요성 및 협의 여부를 기재하여야 한다.

부칙 <제771호, 2015.5.22>

이 규정은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2 법안 비용추계 이해와 사례

발간일	2022년 12월
발행인	국회예산정책처장 조의섭
편 집	추계세제분석실 추계세제총괄과
발행처	국회예산정책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776)
인쇄처	유월애(TEL 02-859-2278)

내용에 관한 문의는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총괄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TEL 02-6788-3776)

ISBN 979-11-6799-110-2 93350

© 국회예산정책처, 2022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국회



(0723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www.nabo.go.kr

발 간 등 록 번 호
31-9700489-001986-10



국회에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